

정책연구 13-45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재석/심송보/김민진/황병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이대기

2013.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목 차

[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3
제1장 서 론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3. 보고서 구성	4
제2장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6
1. 우체국예금의 금융시장 내 역할 및 한계	6
2. 우체국예금과 금융회사와의 경쟁 및 보완 관계 분석	13
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22
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27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27
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34
3. 시사점	44
제4장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그리고 진실	47
1. 우체국예금에 대한 혜택	47
2. 우체국예금에 대한 규제	48
3. 우체국예금에 대한 진실	56
제5장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기관의 상호 협력방안	62
1. 우체국예금을 통한 소비자 효용 확대	62
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64
제6장 요약 및 결론	72
1. 연구 결과 요약	72
2.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73
<부록1>우체국예금 개요	75
<부록2>규제 vs. 혜택 계량화	76
<부록3>은행과 우체국예금의 회계기준 차이	82

[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86
제1장 서론	86
제2장 금융환경 변화	88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88
2. 국내 금융환경 변화	90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및 전망	93
제3장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현황	107
1. 우체국금융의 개관	107
2. 우체국예금의 조직구조 및 현황	115
제4장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관련 주요 이슈	128
1.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상 우위 여부	128
2. 우체국예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137
제5장 우체국예금 해외 사례	147
1. 영국	148
2. 독일	152
3. 프랑스	156
4. 일본	159
5. 미국	163
제6장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제도 개선 방안	166
1. 공정경쟁 여부	166
2. 우체국예금의 제도개선 방향	167
<부록1> 일본의 우체국예금 운영 현황	168
참고 문헌	169

[1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우체국예금의 기능 및 역할

- 우체국예금·보험제도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우체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예금전액보장, 법인세 및 예보료 면제 등 민간금융기관과 다른 부분을 불공정경쟁으로 제기하고 상황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우체국예금이 국민 및 경제에 기여한 성과 뿐 만 아니라 우체국예금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의 불공정경쟁 이슈와 우체국예금의 사업적 규제를 동시에 분석하는 등 균형된 시각으로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 간 경쟁 및 보완 관계를 정의하여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1) 박재석(2013) 『우체국금융의 역사』, KISDI

2. 연구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체국예금의 불공정 부분과 사업적 규제를 동시에 분석·연구하여 금융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가 한국금융시장 발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보고서 구성

- 우선 제2장에서는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제약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와의 경쟁 및 보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을 도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로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경제 정책 지원, 사회 안전망,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우체국예금의 한계로는 취급 업무와 수입원 측면에서 살펴봄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 간 경쟁 및 보완 관계분석에서는 지점 분포, 자금 조달 구조, 자금 이동 구조, 평균 잔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체국예금과 제2금융권과의 관계도 추가로 분석함
 -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는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국가재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봄
- 제3장에서는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우체국예금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에서는 우편과 금융업무를 함께 취급하거나 우편만 취급하는 국가간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연혁 및 현황을 살펴봄
 - 선진국의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일본, 프랑스, 호주의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형태를 살펴보고, 우편사업만을 취급하던 국가들(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금융사업 재개 혹은 재개 논의 진행 사례를 확인함
 -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재국영화 사례, 브라질의 금융포용 중심의 우체국 금융사례를 살펴봄
 - 이 과정을 통해 우체국금융사업의 기여도와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우체국예금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혜택과 우체국예금 입장에서의 사업적 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

- 전액보장, 세금, 보험료, 지불준비금 등에 혜택규모를 추정해 보았으며, 대출 제한, 신용카드 제한 등 규제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규모를 산출해 보았음

*** 불이익 규모 산출은 인력, 시스템구축 등 업무영역확장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개략적 비용**

○ 제5장에서는 소비자 효용 증진 측면에서의 우체국예금의 필요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에서의 우체국금융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살펴봄

○ 제6장에서는 그 동안 분석 연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제2장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1. 우체국예금의 금융시장 내 역할 및 한계

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 도농간 균형된 금융서비스 제공

- 우체국의 지점은 수익성이 높은 7대광역시, 중소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보다는 읍·면/도서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 2013년 6월 기준, 우체국은 총 2,788개소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읍·면/도서지역에 1,500개소(53.8%)가 분포되어 있음

<표 2-1> 우체국의 지역별 지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7대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도서지역	계
지점수	690	598	263	1,183	54	2,788
비율	24.8	21.5	9.4	42.3	2.0	100.0%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우체국예금의 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광역시와 기타 시군구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2월 기준, 우체국은 광역시 지역에서 47.8%의 수신 비중을,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지역에서 52.2%의 수신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2-2> 우체국의 지역별 수신* 비중

(단위: 십억원,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국	32,069	35,182	37,972	37,923	45,305	41,883	48,659	60,254	58,904
광역	15,501	18,313	20,225	20,391	23,798	20,655	24,858	29,686	28,183
비율	48.3	52.1	53.3	53.8	52.5	49.3	51.1	49.3	47.8
시군구	16,569	16,870	17,747	17,531	21,507	21,229	23,801	30,568	30,720
비율	51.7	47.9	46.7	46.2	47.5	50.7	48.9	50.7	52.2

*우편환, 대체, RP 제외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서민 대상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

-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²⁾
- 창구망 공동이용업무(5),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2),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1), 결제자금 수납 대행(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2), 전자금융 서비스(3)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은행, 카드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 229개 기관과 제휴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표 2-3> 우체국금융의 제휴서비스

분 야	주 요 업 무	주요 제휴기관
창구망 공동이용업무 (5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구공동망업무 (자동화기기 포함) ○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 SWIFT해외송금 ○ 환전서비스 ○ 우체국CMS 입금업무 	씨티은행, 외환은행(창구공동망),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환전),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 카드, 롯데카드, 현대백화점,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교보자동차보험, 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업체)
카드업무 대행 서비스 (2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T-Money카드) 	신한(LG)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한국스마트카드 (7개 업체)
증권계좌 개설대행 서비스 (1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계좌개설 대행 및 증권제휴카드 발급 등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현대증권, 하이투자, 삼성증권, 한화증권, 동부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선물,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NH농협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17개 업체)
결제자금 수납 대행 (5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자동이체업무 ○ 일괄배치서비스 ○ 가상계좌 서비스 ○ 전화/인터넷 지불결제 ○ 예금주실명조회서비스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SK생명, 한화손보, PCA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화재, 우리아비바생명, 롯데손보, 롯데카드, 육선, LG U+, SKT, NH농협손보, 롯데캐피탈, BS캐피탈, KIBNET, 인터페이 등 (163개 업체)
자동화기기 이용업무 (2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CD업무 이용 ○ 현금서비스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노틸러스효성, BGF캐시넷, 청호컴넷, 롯데피에스넷, ATM플러스 5개 카드사, 7개 은행 (19개 업체)
전자금융 서비스 (3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서비스 ○ 공인인증서비스 ○ 모바일뱅킹서비스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LG U+, SKT, KT (5개 업체)
계	18개 업무	229개 기관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표 2-4> 연도별 제휴기관 수

(단위: 개)

2) 박재석(2013) 『우체국금융의 역사』, KISD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0
제휴기관 수	50	75	99	115	129	142	147	156	172	204	229
증감률(%)	25.0	50.0	32.0	16.2	12.2	10.1	3.5	6.1	10.3	18.6	12.3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또 재해·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고객 우정서비스 편익을 제공함

나. 경제 정책 지원

□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 수행

-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선순환과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 IMF시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였으며, 주식투자비중을 높여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함
 - 글로벌 금융위기('08~'09년)시 국내기업 외화채권을 매수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 수행
 - 우체국금융의 국내기업 외화채권 매수금액은 총 21,724억 원

□ 국가재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 「정부기업예산법」법에 의해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표 2-5> 연도별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98	'99	'00	'01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전출금	980	2,008	1,516	201	1,493	430	379	351	1,000 *우특252 *예특748	681 *우특400 *예특281	690 *우특300 *예특390	1,000 *우특300 *예특700	634 *우특0 *예특634	1,302 *우특0 *예특1,302	12,665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우체국금융은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공적자금 상환금을 출연하고 있음

<표 2-6> 연도별 공적자금상환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12	'13~'27(예정)	계
예금	291	304	304	313	425	380	402	445	561	3,425	10,747	14,172
보험	127	131	138	123	126	137	142	215	205	1,344	2,301	3,645
계	418	435	442	436	551	517	544	660	766	4,769	13,048	17,817

* 출연기준: 예금평잔의 1,000분의 1, 보험 책임준비금의 1,000분의 1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우체국금융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및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품화 자금 지원, 벤처캐피탈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투자, 국내 PEF 운용사의 중소기업 N/W강화 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신성장 동력, 에너지 부문 등 신산업 관련 금융상품 투자 및 전력·철도·교육시설 등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펀드투자, 지방은행·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표 2-7> 연도별 공자기금예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예금	10,148	3,318	15,682	1,500	13,500	3,000	7,600	10,000	2,658	-
보험	18,095	19,242	16,677	13,006	9,990	3,683	-	-	-	-
합계	28,243	22,560	32,359	14,506	23,490	6,683	7,600	10,000	2,658	-

* 예탁이율('10년말): 3.38%(국고채 3년물)/5.97%(운용수익률)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다. 사회 안전망

□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실시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2013년 우체국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무의탁 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 간병 지원 등의 사업을 실행함

<표 2-8> 우체국금융의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183	3,240	4,560	4,897	5,847	5,847	27,574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한편, 우체국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2-9>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익 사업

구분		지원규모	수혜인원	지원 내용
지역밀착형 지원	불우이웃 자매결연	12.5억 원	1,248명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생필품, 생활보조비 지원, 목욕봉사 등 1:1 결연 및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제안서 공모	2.7억 원	5,825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익사업 발굴 및 우체국 봉사단과 연계한 사업 지원
	전국 사랑나눔 한마당	1.5억 원	9,898명	12월 한 달간 전국 우체국 관서별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무의탁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0.2억 원	월 2,000명	우정사회봉사단 직원을 통한 지역별 무의탁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365봉사단 활동 지원		2억 원	10,913명	집배원으로 구성된 전국 229개 봉사단의 분기별 테마봉사 활동 지원
복지시설 아동 초청 희망나눔문화캠프		1.3억 원	451명	연말연시 복지시설 아동 초청, 스키강습 등 겨울스포츠 체험 캠프 진행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37

<표 2-10> 사회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구분	지원규모	수혜인원	협력기관	지원내용
우체국 'ㅎ·ㄴ 사랑의 집'을 통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 통합 지원	2억 원	1,851명	백혈병 어린이 재단	소아암 환자 가족 쉼터 'ㅎ·ㄴ 사랑의 집' 5개소 운영 및 치료비 지원, 문화캠프 개최
쉼터보호아동 정서 및 특화지원	1.4억 원	3,932명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전국 35개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상생활비, 교육 문화 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정 행복스타트 프로젝트	2억 원	6,036명	한국 여성재단	다문화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직업훈련 등)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 지원	7.1억 원	3,745명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저소득 여성 간병인을 활용한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사업
장애가정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	4.7억 원	270명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대학생과 장애가정 청소년이 멘토-멘티가 되어 학습지도 및 우체국 희망플러스 통장 지원
전국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	1.2억 원	362명	대한장애인 농구협회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휠체어 농구 대회 개최 지원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38

□ 친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신용 서민(7등급 이하)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체국새봄자유적금'을 개발하여 보급('10. 4월)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정기예금'을 개발하여 보급('09. 9월)하고 있음

<표 2-11> 서민예금상품 현황

(2012년 말 기준)

상품명 (출시일)	지원대상	금리 수준 (1년 기준)	가입한도		유지현황 ('12말 기준)
			인적	금액	
행복지킴이 통장 (2011. 6. 1)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최고 연1.0% (우대 0.5%p)	-	-	12천 좌 12억
더불어 자유적금 (2011. 5. 31)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	연6.0% (우대 3%p)	1세대 1명	1인당 900만 원	4천 좌 84억
이웃사랑정기예금 (2009. 9. 7.)	농어촌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고 연 3.4%	1인 다계좌	제한없음	529천 좌 82,811억
이웃사랑자유적금 (2003. 11. 1.)	농어촌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최고 연 3.4%	1인 2계좌	1계좌당 3천만 원 이하	33천 좌 1,015억
새봄자유적금	신용등급 7등급	최고	1인	1인당	2천 좌

(2010. 4. 22.)	이하(7~10등급), 만 20세이상개인	연 10%	1계좌	300만 원 이하	16억
----------------	--------------------------	-------	-----	--------------	-----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44

라.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

□ 우편사업 적자 보전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기여

-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우편사업의 적자규모는 1983년 이후 약 1조 90억 원 수준임
 - 주요 국가들 대비 한국의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2012년 말 기준, 한국: 270원, 미국: 527원, 독일: 819원, 일본: 928원
- 금융업무 미취급 시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임
 - 우편·금융사업의 시너지 효과: 연 2,246억 원(삼일회계법인 '07. 9)
 - 통상우편요금 10% 인상 시 국민부담 연 1,000억 원이 증가함

마. 우체국예금의 한계

□ 취급 업무의 제한

- 우체국예금은 일반은행과 달리 대출, 신탁, 신용카드, 펀드판매 등의 업무의 취급에 제약이 있으며, 신규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표 2-12> 우체국예금의 업무 취급 범위

구 분	예 금	환대체	대출	신탁	외화송금	환 전	신용카드	펀드판매
민영은행	○	△	○	○	○	○	○	○
우체국	○	○	×	×	△	○	×	×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제한된 수입원

- 저금리, 저성장 추세에 따라 민간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은 취급업무의 제약으로 인해 신

규사업을 통한 수입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민영은행사의 주 수입원인 대출,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의 수입에는 한계가 존재함

2. 우체국예금과 금융회사와의 경쟁 및 보완 관계 분석

가. 민간금융회사와의 비교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와의 경쟁 및 보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점 분포 분석, 자금조달 구조 분석, 자금이동 구조 분석, 평균 잔고 분석을 실시함

□ 지점 분포에 대한 분석

- 민간금융회사는 대도시 영업에 치중하고 있으나,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지역에도 고르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은 읍/면 도서지역에서의 점포 비중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대광역시 24.8%, 중소도시 21.48%의 비중을 나타냄
 - 은행전체의 경우 7대광역시의 비중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31.9%, 읍/면 도서지역 6.7%로 우체국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협(단협포함)의 경우 우체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읍/면 도서지역에의 비중은 47.3%로 우체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우체국 및 금융회사별 지점 분포 비중



자료: 전국은행연합회('12년 말 기준) 참조

<표 2-13> 우체국 및 금융회사들의 지점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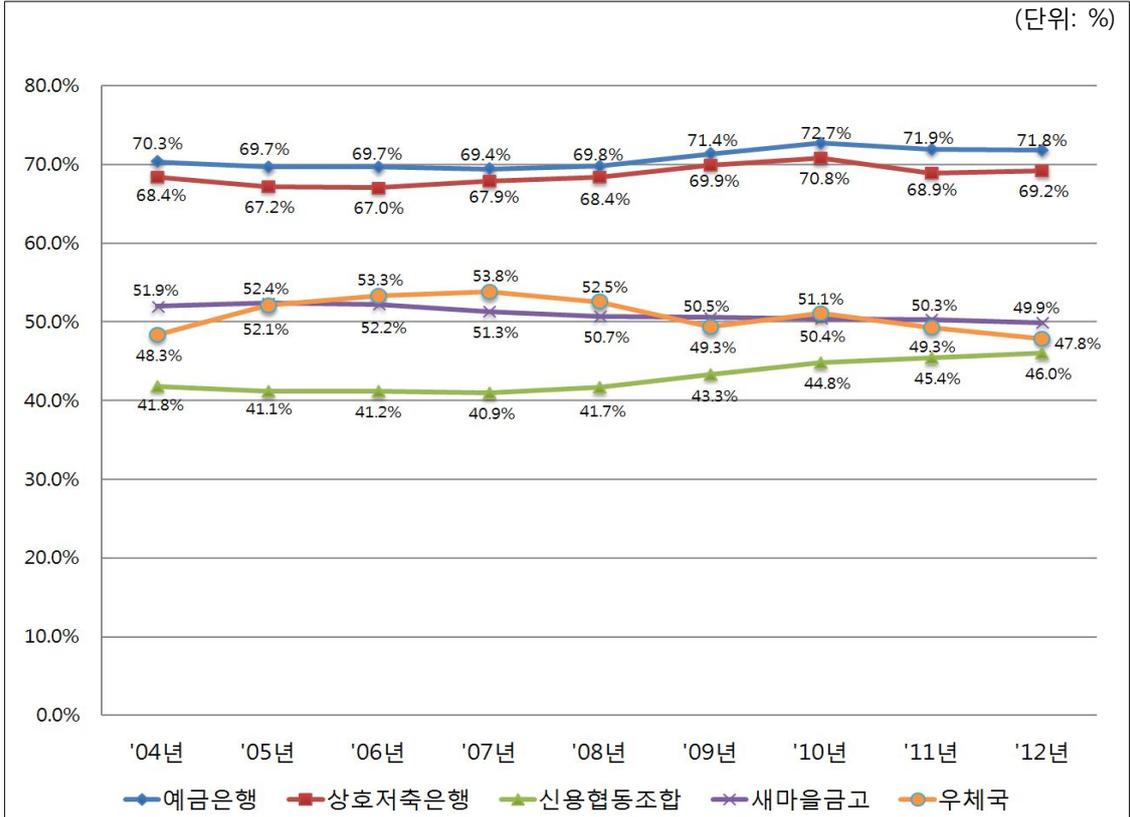
구분	우체국		은행전체		농협 (단협포함)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읍/면 도서지역	1,500	53.8	435	6.7	2,691	47.3	156	36.2	219	23.3	289	22.1
중소도시	598	21.4	2,071	31.9	1,728	30.3	167	38.7	323	34.3	381	29.1
7대광역시	690	24.8	3,981	61.4	1,277	22.4	108	25.1	399	42.4	639	48.8
계	2,788	100.0	6,487	100.0	5,696	100.0	431	100.0	941	100.0	1,309	100.0

자료: 전국은행연합회('12년 말 기준) 참조

□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분석

-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간금융회사들과 우체국의 지역별 자금조달 구조 분석을 통해 경쟁관계를 분석함
- 예금은행의 경우 광역시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체국은 50%수준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예금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광역시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각각 2004년 70.3%, 68.4%에서 2012년 71.8%, 69.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우체국예금의 경우 광역시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2004년 48.3%에서 2012년 47.8%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광역시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비교 대상들 중 가장 낮은 41.8%(2004년 기준)였으나, 2012년 46.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 우체국 및 민간금융회사의 지역별 자금조달 구조



(단위: 10조 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예 금 은 행	전체수신	54.1	56.2	59.3	59.3	67.5	75.1	87.4	94.8	99.0
	광역시 수신	38.0	39.1	41.3	41.2	47.1	53.6	63.5	68.2	71.1
	전체수신대비 비율(%)	70.3%	69.7%	69.7%	69.4%	69.8%	71.4%	72.7%	71.9%	71.8%
상 호 저 축 은 행	전체수신	3.3	3.7	4.5	5.0	6.1	7.3	7.7	6.3	4.3
	광역시 수신	2.2	2.5	3.0	3.4	4.2	5.1	5.4	4.3	3.0
	전체수신대비 비율(%)	68.4%	67.2%	67.0%	67.9%	68.4%	69.9%	70.8%	68.9%	69.2%
신 용 협 동 조 합	전체수신	1.9	2.0	2.3	2.3	2.7	3.5	4.2	4.3	4.9
	광역시 수신	0.8	0.8	0.9	1.0	1.1	1.5	1.9	2.0	2.2
	전체수신대비 비율(%)	41.8%	41.1%	41.2%	40.9%	41.7%	43.3%	44.8%	45.4%	46.0%
새 마 을 금 고	전체수신	4.2	4.6	5.1	5.1	5.6	6.8	8.0	7.9	9.2
	광역시 수신	2.2	2.4	2.7	2.6	2.8	3.4	4.0	4.0	4.6
	전체수신대비 비율(%)	51.9%	52.4%	52.2%	51.3%	50.7%	50.5%	50.4%	50.3%	49.9%
우 체 국	전체수신	3.2	3.5	3.8	3.8	4.5	4.2	4.9	6.0	5.9
	광역시 수신	1.6	1.8	2.0	2.0	2.4	2.1	2.5	3.0	2.8
	전체수신대비 비율(%)	48.3%	52.1%	53.3%	53.8%	52.5%	49.3%	51.1%	49.3%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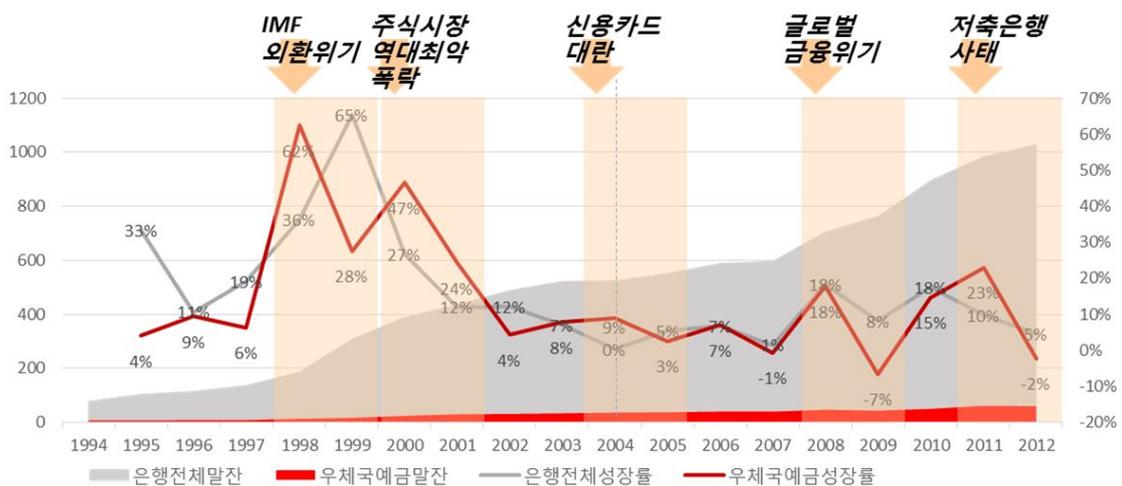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분석

- 우체국 및 은행의 수신고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관계를 분석함
- IMF 외환위기('97-'98년) 시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은행의 수신고 성장률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귀함
- 이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성 선호로 국가 기관인 우체국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증가한 현상
- 글로벌 금융위기('08년)의 경우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수신고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후 우체국의 수신고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함
- 우체국예금의 수신고 증가율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내 하락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절대적인 수신 규모의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이전에는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성장률은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유사한 패턴을 보임

[그림 2-3] 은행 및 우체국의 수신규모*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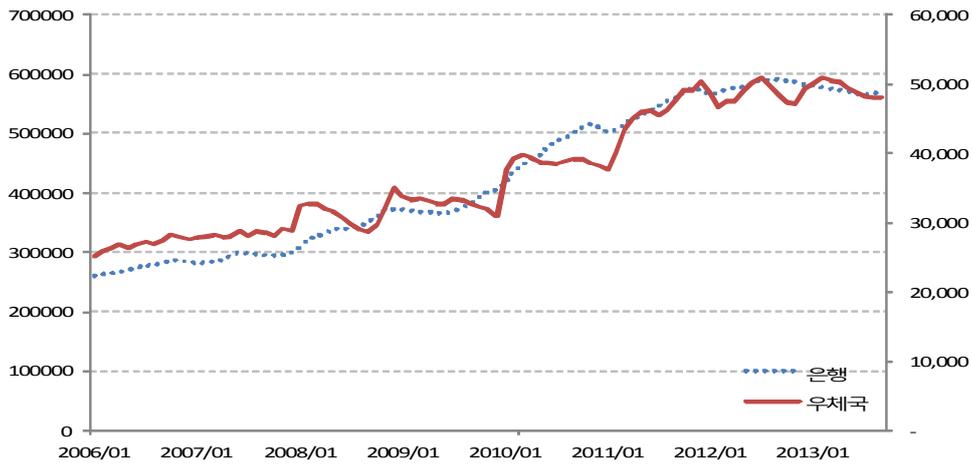
*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말잔(CD, RP, 표지어음 등은 제외)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KISDI 분석

- 우체국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유사한 수신규모 변동추이에 비추어볼 때, 우체국과 은행간 자금이동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양측의 정기예금을 대상으로 수신액과 이자율 변화 추이간의 관계를 살펴봄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체국과 시중은행 간 월별 정기예금 규모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음. 총 수신규모와 마찬가지로 양 기관의 정기예금 규모는 동일한 패턴을 보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던 정기예금은 2012년 중반부터 은행은 570조, 우체국은 50조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정기예금 수신규모에 영향을 끼친 경제 요인들은 모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정기예금 증가율의 차이를 분석 대상으로 함. 동기간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월별 증가율은 0.85%, 우체국은 0.7%의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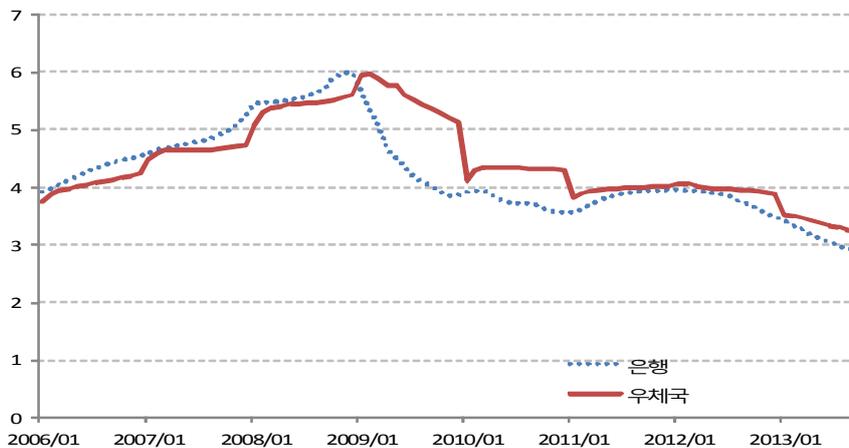
[그림 2-4] 우체국과 은행의 월별 정기예금



주: 은행 좌측축, 우체국 우측축. 단위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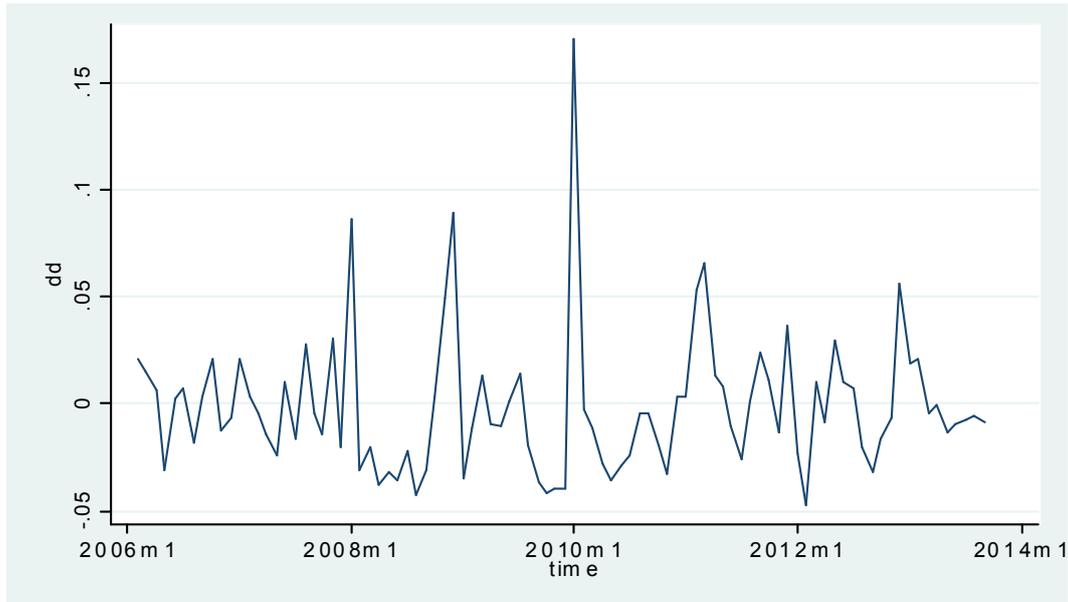
- 동기간 이자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은행의 이자율이 미세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는 우체국 이율이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우체국과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



주: 평균조달금리로 신규가입기준 금리와 달리 큰 차이를 보임(특히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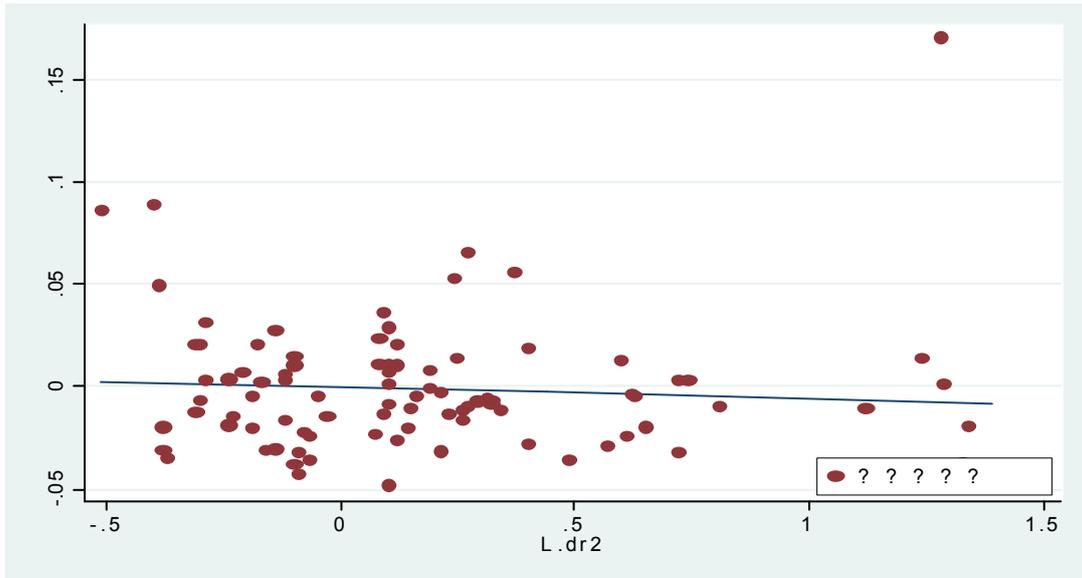
[그림 2-6] 우체국 정기예금의 초과 증가율



주: 우체국 정기예금 증가율과 은행의 정기예금 증가율 차이를 나타냄. 평균은 0 이며 2010년 1월 15%이상의 높은 초과증가율을 보임

- 우체국 정기예금의 은행대비 상대적인 증가율을 나타내는 초과증가율(우체국-은행)과 우체국과 은행간의 정기예금 금리차이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장 교란 정도를 파악함. 만약 두 변수간의 관계가 양이라면 은행의 자금이 우체국의 금리에 따라 우체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다음 그래프는 이 두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두 변수간의 양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음. 회귀분석 결과 직선의 기울기는 -0.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예금이자율이 수신액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월도 초과 이율을 사용하였으며, 동월의 이율을 사용한 경우도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초과 증가율이 아닌 점유율, 수신액의 변화분등을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로 자금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림 2-7]우체국예금의 초과 증가율과 초과이율 산포도



주: 가로축은 초과이율(우체국이율-은행이율)을, 세로축은 정기예금 수신액의 초과 증가율(우체국증가율-은행증가율)을 나타냄

- 우체국예금이율에 대한 시중 은행 수신액의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리에 따라 시중은행과 우체국간 예금자금 이동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은행은 2000년대 이후 매출(수신) 증대 보다는 이익 증대를 위해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펀드상품판매 등 비이자 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기존 은행 수신액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과 우체국 간의 자금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은행)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이동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함
 - 우체국과 민간금융회사의 지역별 지점의 분포 비중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함
 - 예금은행이 도시지역에서 약 70%의 자금조달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우체국 예금도 자금의 약 50%를 도시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음
 - 자금 이동 구조를 살펴본 결과 2004년 이후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성장률의 패턴이 유사하고, 우체국예금 이율에 따른 시중은행 수신액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체국과 은행 간 자금이동이 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평균 잔고 분석의 결과 우체국예금은 은행의 약 60%수준(은행 480만원, 우체

국예금 29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체국예금이 은행과는 달리 서민금융기관의 성격을 띄기 때문으로 풀이됨

- ▶ 우체국예금과 은행은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은행의 지점은 대부분 7대광역시(61.4%), 중소도시(31.9%)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우체국의 경우 읍/면 도서지역(53.8%)에 대부분의 지점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금조달 구조 분석결과 우체국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자금 조달 비중이 약 50%에 달하지만, 은행의 경우 약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이동 규모의 분석결과 2004년 이후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성장률 패턴은 유사하나 절대적인 수신고 차이는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우체국예금의 평균잔고가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우체국예금의 주 이용고객이 읍/면 도서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평균 잔고에 대한 분석

- 우체국예금 및 은행의 수신고를 분석한 결과 우체국예금은 상대적으로 평균 잔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말 기준 우체국예금 계좌당 평균 잔고는 298만원이나, 민간은행의 경우 계좌당 평균 480만원

<표 2-14> 은행 및 우체국예금의 수신고 및 계좌수

(2012년 기준)

구분	수신고(억원)	총계좌수(천좌)	평균잔고(만원)
은행	9,712,030	202,362	480
우체국예금	596,201	20,030	298

자료: 한국은행 은행 수신 동향(2012)

- 민간금융기관은 수익성위주(PB, 종신보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경우 서민소액금융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나. 제2금융권과의 비교

□ 설립 근거 분석

- 우체국과 제2금융권의 설립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우체국의 설립근거는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있음

<표 2-15> 우체국 및 제2금융권의 설립 근거

구분	관련 법령	설립 근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금고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우체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증진에 기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의 취급 범위

- 민영은행의 업무를 기준으로 우체국예금은 대출, 신탁, 신용카드, 펀드판매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업무의 취급범위가 넓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대출업무 및 신용카드 업무가 취급 가능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

<표 2-16> 우체국예금 및 금융회사별 업무 취급 범위

구분	예금	대출	신탁	외화송금	환전	신용카드	펀드판매
민영은행	○	○	○	○	○	○	○
우체국예금	○	×	×	△	○	×	×
새마을금고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신용협동조합	○	○	×	○	○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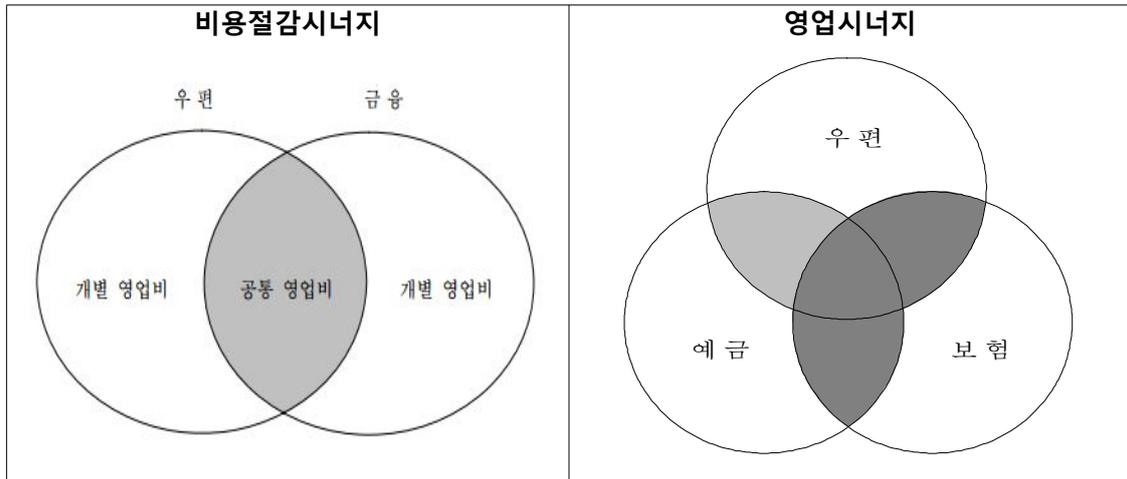
- ▶ 우체국예금과 제2금융권의 경우 취급업무상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체국예금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의 취급업무는 유사하나 우체국예금이 취급할 수 없는 대출,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3.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 우편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금융(예금, 보험)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 '07년 KISDI가 발간한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 의하면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비용절감시너지와 영업시너지로 구분하였음
 - 비용절감시너지란 우편과 금융사업이 공통장소(우체국 창구망)와 공통 관리인력을 사용함에 따라 전체적 서비스 비용 감소 효과를 의미함
 - 영업시너지란 근무자가 자신의 본업이 아닌 분야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나타나는 전체적인 영업 실적의 향상을 의미함

[그림 2-8] 비용절감시너지 및 영업시너지



자료: KISDI 이슈리포트,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 2007

- 추정결과 비용절감시너지('07년 기준)는 향후 10년간 약 5조 5,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7> 우정사업 총 비용 시너지 효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금 액	전체 공동영업비 추정액 대비 비율
비인건비성 공동영업비 추정액의 현재가치	3,555,800	6.7%
공동 인건비 추정액의 현재가치	2,016,700	3.8%
총 비용 시너지	5,572,500	10.5%

자료: KISDI 이슈리포트,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 2007

- 영업시너지의 경우 보험부분에서만 전체 신계약의 55.8%를 차지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과 금융업무의 겸업을 통한 영업 시너지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됨
- KISDI 및 PwC에서 분석한 우정사업의 시너지효과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8> 우정사업 (비용)시너지 효과 추정 비교(KISDI vs PwC)

구분	KISDI(이슈리포트)	PwC(보고서)	비고
정의	○ 우편·금융 사업이 시설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가치	○ 금융사업을 분리할 경우, 공통 인력 활용 불가에 따른 추가적 소요인건비 추정 ('비시너지'로 정의)	○ 시너지 대상 범위의 차이
추정 방법	○ 공통영업비의 미래 규모를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 ○ 시너지 비율(공통인건비 + 비인건비성 공통영업비) 추정 ○ 공통영업비의 현재가치 ⊗ 시너지 비율로 비용절감시너지 추정	○ 금융사업 분리 형태별 -우편사업 손실(전입금 감소) 추정 -금융사업 인력충원비용(신규채용, 인건비 인상) 추정	○ PwC는 금융사업 소요인건비만을 시너지로 정의 ○ 전입금 감소는 비인건비성 공통영업비와 유사한 개념
결과	○ 5조 5,725억원 , 연 2,992억원 (자본비용 5.37%적용시)	○ 1,059 ~ 1,543억원 -전입금감소 572~ 740억원	
차이점	○ KISDI는 현재제하의 공통영업비 및 시너지비율 추정을 기초로 시너지효과를 추정(미래가치 반영) ○ PwC는 사업 분리 형태별 인력충원비용을 시너지효과로 추정(분리시 비용만 고려)		
시사점	○ 현재제 유지시와 금융사업 분리시 시너지효과로 각각 활용 가능 ○ KISDI는 시너지 추정 대상을 광의로 접근한 반면, PwC는 협의로 접근 ○ PwC의 전입금감소분을 시설 공동 활용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볼 경우 시너지효과는 1,631 ~ 2,283억원 수준		

□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생명보험,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창구망을 일반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개방함으로써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은 물론 환전과 해외송금, 공과금 납부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표 2-19> 제휴업무 이용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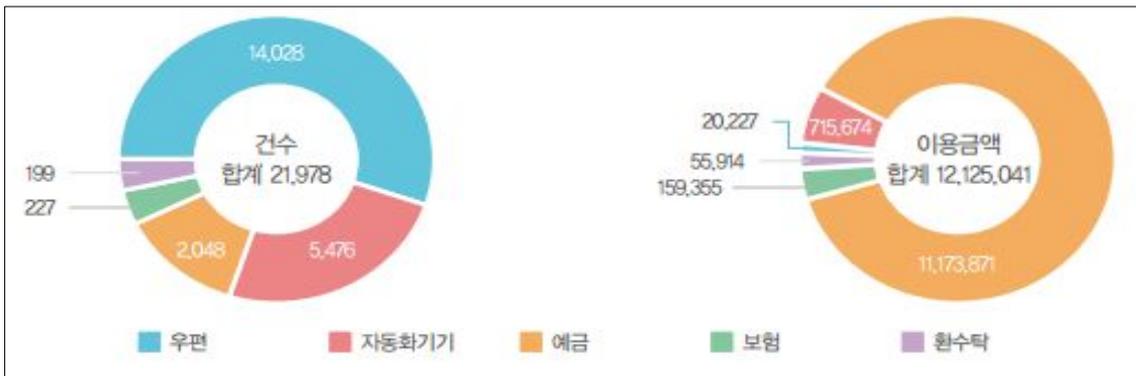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창구망 공동이용	3,058	2,742	2,547	3,038	4,533
제휴카드 대행서비스	966	921	853	518	37
결제자금 수납 대행	19,704	26,374	27,084	27,908	25,403
증권계좌 개설대행	611	768	717	732	635
자동화기기 이용업무	7,275	7,448	7,415	7,545	7,185
전자금융서비스	744	1,254	1,999	3,304	5,638
계	32,358	39,507	40,615	43,045	43,431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21, 재구성

- 재해·재난지역, 지역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고객 우정서비스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국 34곳의 축제 행사장, 주민불편지역을 방문하여 167일간 이동우체국을 운영함

[그림 2-9] 이동우체국 운영 현황

(단위: 건 수, 천 원)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34

□ 국가재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수익 및 평잔 등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전출, 우편적자보전, 공적자금 상환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 일반회계전출의 경우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98년부터 '13년까지 약 1조 2,665억 원을 지원해 왔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은 예금평잔의 $\frac{1}{1000}$, 우체국보험은 보험 책임준비금의 $\frac{1}{1000}$ 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 우체국금융은 외환위기 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음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동일하게 공정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은행과 우체국예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 예금평잔의 0.1%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예금보험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음
 - 신협외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 예금평잔의 0.05%

-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SOC, BTL, 공공펀드 투자 및 지방금융기관 예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음

<표 2-20> 2012년도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예금	보험	소계
중소기업 지원		1,529	1,191	2,720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SOC/공공펀드	371	642	1,013
	지방은행 예탁	200	-	200
	지방우정청 운용	14,337	2,600	16,937
	소계	14,908	-	14,908
총계		16,437	4,433	20,870

자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p.21, 재구성

제3장 해외우체국금융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사례

가. 우편+금융업 vs. 우편업만 하는 국가간 성과 비교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금융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구분

-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우정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우편과 금융을
동시 제공하는 형태와 우편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 제공 없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
란드가 대표적임
-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다시 우편과 금융이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우편과 금융이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이 우편의
자회사로 운영되는 경우, 금융서비스를 Agency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형태별 분석 대상 국가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3-1]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와 조직 형태에 따른 해외 우정 구분



□ 선진국의 우편사업 현황 비교

- 대상국의 우편물량은 금융사업 운영 형태와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편사업의 수익성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08년 48.8억통 이었던 우편물이 '12년 46.5억통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편수지 역시 '1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7년경에는 3,968억원 적자가 전망됨³⁾
 - 우편물량(억통): ('08) 48.8 → ('10) 48.7 → ('11) 48.2 → ('12) 46.5
 - 우편수지(억원): ('08) 399 → ('10) 528 → ('11)△439 → ('12)△707
→ ('13e)△750 → ('14e)△1,312 → ('15e)△2,025
→ ('16e)△2,904 → ('17e)△3,968
- 일본은 2003년에 비해 2011년 우편물량이 23.2% 감소함⁴⁾
- 뉴질랜드(NZPost)의 경우 소포물량은 향후 5년간 약 10%의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포 물량은 통상의 2.5%에 불과하여 통상물량 감소분(2012년 대비 7.5% 감소)을 충당하지 못함.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2억5천2백만 건의 통상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뉴질랜드 우편사업의 순이익은 2012년 대비 29%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⁵⁾
- 영국우정(Royal Mail)은 2020년까지 약 30% 우편물량 급감이 예상됨⁶⁾
- 미국(USPS)는 2010년 이후 소포 화물 물량은 1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편지와 같은 1종 우편물 물량은 계속 줄어 '12년 159억달러 적자를 기록, 2017년까지 우편물량이 21억 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함⁷⁾

3) 2013년 우정사업본부 전망

4) Japan Post Bank 2013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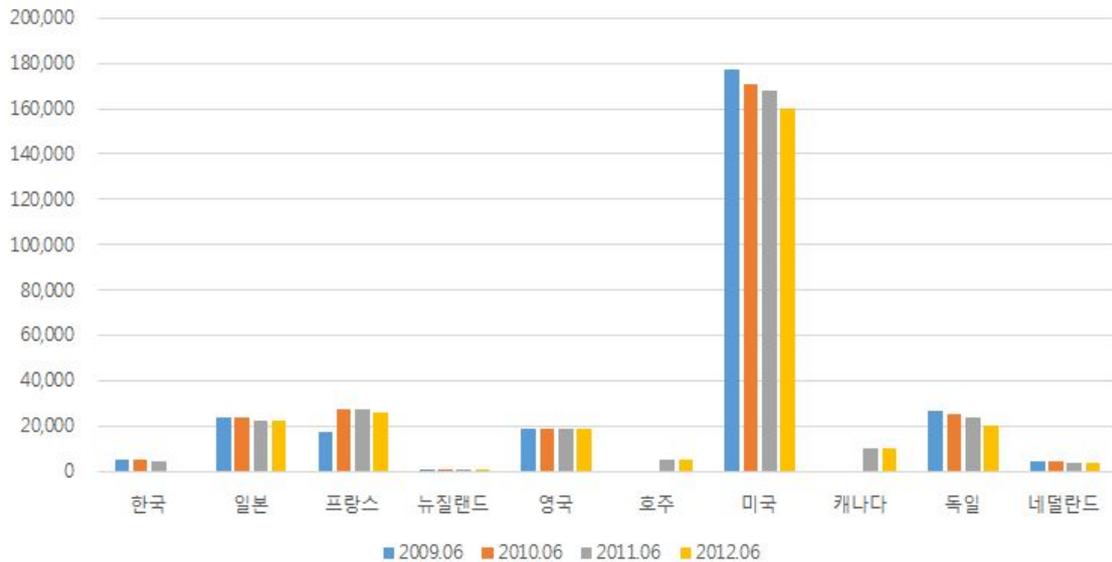
5) 뉴질랜드우정 Annual Report, KISDI 분석

6) 2013년 선진우정포럼 이슈토론회(선진우정포럼, 2013.12)

7) US POSTAL SERVICE(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9.07)

[그림 3-2] 국가별 우편물량 추이

(단위: 백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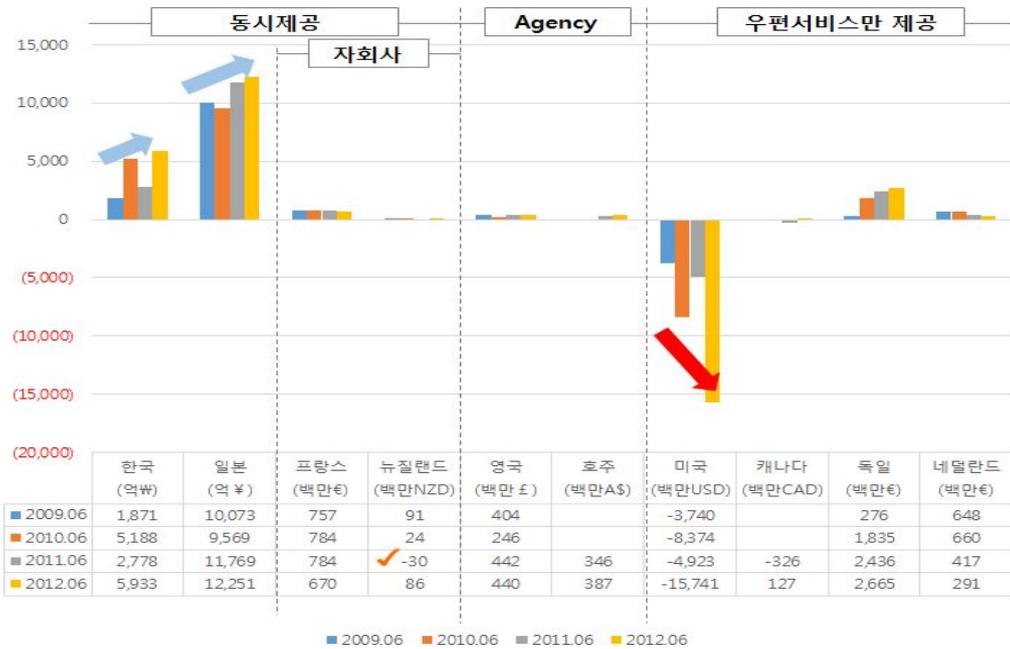
자료: 2013 주요12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우정사업본부, 2013.06)

□ 선진국의 우정사업 경영성과 비교

- '09년~'12년사이 한국과 일본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미국의 경우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 또한 확대됨
- 당기순이익에서도 영업이익과 흡사한 추이가 나타남. 즉, 금융과 우편서비스의 동시제공(Agency 포함)의 경우 '11년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편서비스만 제공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 적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2월 Christ church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에 기인함. 여기에 그룹재편, 자회사 퇴출 관련 비용도 더해져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함⁸⁾
 - 영국의 경우 '09년과 '10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11~'12년 우편요금을 인상하고, 그 외 사업외이익으로 적자폭을 개선함
 - 2011년 네덜란드는 사업외수익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있었음

8) 우정사업본부(2013), 『주요12개국가 우정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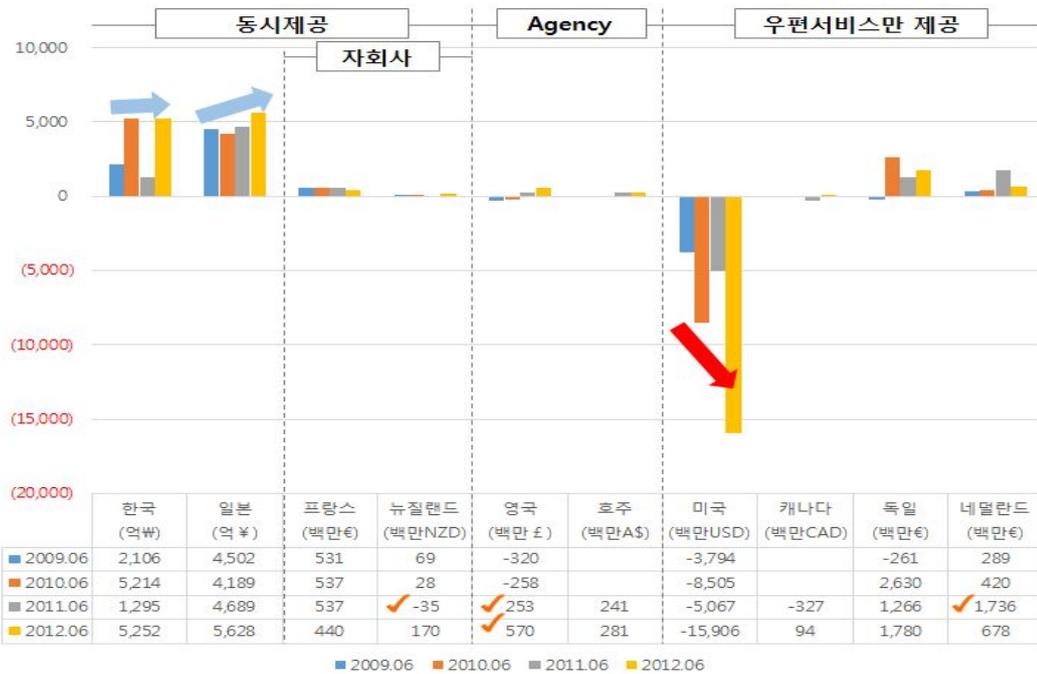
[그림 3-3] 국가별 우정사업 영업이익 추이



*한국은 연말(12월말) 기준

자료: 2013 주요12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우정사업본부, 2013.06)

[그림 3-4] 국가별 우정사업 당기순이익 추이



*한국은 연말(12월말) 기준

자료: 2013 주요12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우정사업본부, 2013.06)

- 한국,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외 기타 국가에서도 우편사업의 수익성 감소를 금융사업을 통해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12년 우편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에서 634억원을 전출함⁹⁾
 - 2012년 Japan Post Network의 순이익이 188억엔, Japan Post Service의 순손실이 45억엔임에도 불구하고, Japan Post Group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4,689억엔으로, 금융(Japan Post Bank, Japan Post Insurance)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¹⁰⁾

<표 3-1> 2011년 일본 우정 사업 손익

(2011.04~2012.03)

	Japan Post Group (consolidated)	Japan Post Holdings (non-cons.)	Japan Post Network (non-cons.)	Japan Post Service (non-cons.)	Japan Post Bank (non-cons.)	Japan Post Insurance (non-cons.)
순이익 (십억엔)	468.9	151.4	18.8	-4.5	334.8	67.7

자료: Japan Post Group 2012 Annual Report

- New Zealand Post는 우편사업에서 '12년 우편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Kiwibank의 높은 경영성으로 약 70%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함¹¹⁾
- La Poste(프랑스 우정)의 자회사인 Banque Postal이 186백만 유로(약 2천억 원, '13.10.23일 기준)를 배당금으로 지불함¹²⁾
- 기타: 2012년 기준 이탈리아의 BancoPosta의 이익이 전체 Poste Italian의 48%, 스위스의 PostFinance가 Swiss Post의 운영수익(operating result)의 71%를 차지함¹³⁾

나. 선진국의 우체국금융 연혁 및 현황

□ 주요 선진국의 금융사업 운영 형태

- OECD 회원국(33개국) 중 24개국이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우편과 동시제공(10개국), 우편의 자회사(7개국) 또는 위탁판매(7개국) 형태로 운영됨

9) 우체국예금 내부 자료

10) Japan Post Group 2012 Annual Report

11) <http://postandparcel.info/53998/news/companies/new-zealand-post-profits-up-70-on-banking-strength>

12) Post&Pacel(2013.10.11.)/http://www.cupw.ca/index.cfm/ci_id/14581/la_id/1.htm

13) Post&Pacel(2013.10.11.)/http://www.cupw.ca/index.cfm/ci_id/14581/la_id/1.htm

- 금융사업을 하는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사 형태이며, 한국만 정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2> OECD 국가 우정사업의 금융사업 운영 형태

겸업형태 조직형태	우편·금융서비스 겸업			우편서비스만 제공(9국)
	동시 제공(10국)	자회사(7국)	위탁판매(7국)	
정부조직 (2국)	한국			미국
공사(29국) (정부소유회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 터키,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폴란드,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호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칠레, 슬로베니아
민간회사 (2국)				독일, 네덜란드

* 동시제공(동일 주체에 의해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자회사(다른 주체에 의해 우편·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소유구조상 관련), 위탁판매(민간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대행)

* 이탤릭체는 보험서비스 제공국가(15국)

자료: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 주요현황 2013.06

□ 주요 6개국의 우체국금융 운영 현황

<표 3-3> 주요 6개국의 우체국금융 운영 현황

우체국 금융체제 국가	우편·금융서비스 겸업					
	동시 제공		자회사		위탁판매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경영체제	정부	민영화 추진(2007.10) 중단(2009.12) 재개(2012.5)	정부소유 주식회사 (2010.3)	정부소유 주식회사 (1987)	정부소유 주식회사 (2002) 민영화 단행 (13.10.11)	정부소유 주식회사 (2007)
주주현황	정부기관	지주회사는 정부 소유 (일본우정주식 회사), 3개 자회사는 일본우정주식 회사 소유	정부 100%	정부 100%	정부 37.5%	정부 100%
규제기관	미래창조 과학부	예금,보험은 금융청	프랑스통신 위원회	경제개발부	OfCom	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
근거법률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은행법	Postal Services Act2011 (우편법)	Australian Postal Corporation Act 1989
전액보장	○	X	X	X	-	-
BIS 규제	△	○	○	○	-	-
대출	X	○	○(주택담보)	○	○	○
예보료	X	○	○	○	-	-
예금사업 수익규모 (백만)	₩282,400 (경영수지)	¥ 373,948 (유초은행 당기순이익)	€574 (La Banque Postale 당기순이익)	97NZD (KiwiBank 당기순이익)	£ 94 (Post Office Limited 당기순이익)	AD200.6 (금융&Retail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	4%	개인예금시장 의 1/4	개인예금시장 의 10.8%	개인예금시장 의 약 10%	-	-

자료: 우정사업본부 주요 12개국가 우정사업 현황, 2013.06, 각사 홈페이지

- 주요 6개국(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의 우체국금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예금전액보장, BIS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한국만 타 국가와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이는 앞서 OECD국가의 금융사업 운영형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라는 체제 하에서 은행법을 따르지 않는 한국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선진국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연구

가. 우체국금융 사업 연혁 및 운영 형태

□ 일본

- ▶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며, 수익성 악화로 선진 경영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영화가 진행됨. 민영화 진행 기간 중 몇 차례 회의론이 대두되며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6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여타 국가의 우체국금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금융부문을 형성함¹⁴⁾
 - 안전성 뿐 아니라 수익성(정액예금 위주의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체국예금은 1999년 기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5%를 차지하여 단일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또한 1999년 기준 예금 잔고에서는 지방은행들의 예금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고 점포수에서는 은행전체 지점수의 2배 이상으로 규모면에서 여타 금융기관을 압도함¹⁵⁾
- 그러나 저금리기에 접어들면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200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회사로 자금의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그에 따라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 우체국금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으며, 2001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방안이 확정·공포됨

14)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15)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 프랑스

- ▶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저축금고가 설립되면서 국영으로 운영되며 투자신탁까지 업무를 관할함. 이후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화가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국가의 전액보장제도는 유지하였음. 현재는 주식회사로 프랑스 개인예금의 10.8%를 차지함
- 1818년 민영으로 운영되면서 우체국금융을 시작함((파리 저축금고)
- 그러나 저축금고의 영업범위가 농촌 및 소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 영업범위를 넓히기 위해 1881년 국민저축금고가 설립되면서 국영으로 운영됨¹⁷⁾
- 1881년 4월 국민저축금고는 개인저축의 활성화라는 설립목적 하에 예금한도액이 정해진 통장저금을 Liver A라는 하나의 저축상품으로 한정함
- 1960년 상업은행의 개인예금시장 진입으로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저축금고의 업무확대 및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1966년에는 한도액이 없는 B통장이(Liver B), 1967년에는 투자신탁이 도입됨
- 1991년 1월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과 저축분야와 전기통신 부문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공사화가 추진되었고, 이로써 우편과 저축부문은 La Poste로 전환함
- La Poste는 주식회사가 되기 전 공사화 시절에는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예금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았음
- 2006년 1월 La Poste의 자회사로 La Banque Postale을 설립하였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은행업무로 사업을 확대함
- 2010년 3월 현재는 공기업에서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정부 지분(100%)은 유지하고 있으며 La Banque Postale은 프랑스 개인예금의 10.8%를 점유함
 - 금융사업영역은 수신, 보험, 여신 사업 부분으로 구성됨

17)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 호주

- ▶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금융사업을 시작함
- 호주는 우체국금융 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2003년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호주의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는 요금수납, 은행, 송금 등 3가지로 분류됨¹⁸⁾
 - (요금수납) 'Post billpay'로 불리는데 우체국은 2003년 기준 511개 기관의 요금수납을 대행하며, 고객들은 창구,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은행업무의 대행 서비스) 'giroPost'로 불리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구분됨
 -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2003년 기준 76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었으며 가입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조회, 계좌개설, 신용카드 대금 지불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 은행업무가 가능한 곳은 약 3,0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업무 대행 서비스는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ational Australia Bank, Bankwest, Adelaide Bank 등 4개 은행과 제휴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함
 - (송금서비스) 우편환, 여행자수표(AMEX Travellers Cheques)판매, Western Union의 해외송금 서비스 등이 있음
- 호주의 우체국에 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음

나. 금융사업 재개/재개 논의 진행 사례

□ 뉴질랜드

-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는 우체국금융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사례임¹⁹⁾
- 뉴질랜드의 우체국 저축제도는 1860년대 뉴질랜드 우체국 저축은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뉴질랜드의 우체국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편, 우체국금융, 전기통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

18) 박재석 외(200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발전방안 연구용역』,KISDI

19) 박재석 외(200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발전방안 연구용역』,KISDI

-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뉴질랜드 우체국은 NZ Telecom, NZP(New Zealand Post), Postbank 등 3개의 회사 조직으로 분리됨
- 뉴질랜드 정부는 외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정부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1988년 우체국금융을 담당하던 Postbank의 매각을 결정하고 마침내 1989년 호주에 근거를 둔 ANZ Bank(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에 6억 6,5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매각되어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던 뉴질랜드의 우체국금융제도는 일단 20)막을 내림
- 그러나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외국계자본의 은행산업 점령, 민간은행의 수수료인상과 농어촌지점의 폐쇄정책, 대출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뉴질랜드우정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체국금융사업의 재개를 결정하였음
- 이에 1990년대 말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은행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1년 11월 우정공사의 자회사로 국유은행인 Kiwibank를 설립하여 금융사업을 재개하였으며, 키위뱅크는 은행으로서 뉴질랜드 중앙은행법 하에 규제를 받음
- KiwiBank는 은행, 보험,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5번째로 큰 은행으로 뉴질랜드 개인예금의 10%내외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캐나다

- ▶ 캐나다는 우체국예금 폐지 후 꾸준히 예금 사업 부활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 경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노조에 의해 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 1868년부터 100년간 예금만 전담하는 Saving Bank를 운영했으나 폐지함. 그 후 1982년, 2005년, 2010년 3번에 걸쳐 예금사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함
- 최근 다시 경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사업을 부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20) 박재석 외(200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발전방안 연구용역』,KISDI

있음²¹⁾

- 2013년 10월 16일에 있었던 공사(Crown Corporation) 전환 32주년 기념행사
에서 캐나다우편노조(CUPW)에 의해 금융사업 재개가 주요 화두로 떠오름
- 캐나다 전역에 6,400개의 우체국이 있으며 이는 은행(6,295개)보다 많은 숫자
로, 국내 최대의 우체국망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
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 ▶ 1907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금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우체
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 예금대출시장의 1/3규모까지 이르렀으나, 그 후 시
중은행의 발전으로 우체국예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짐. 그러나 최근 미국 금융시
스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우체국금융사업 재개가 주장되고 있음
- 미국 우체국(USPS)은 전신인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 1847~1970)를
거쳐 '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1970' 에 의해 1971년 설립되었으며 국
가기관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USPS는 우편전신네트워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던 중
영국의 우체국예금시스템에 영감을 받고 1871년 처음 우체국예금에 대한 도입
을 검토하였으나 도입되지는 않음²²⁾
- 그러나 1907년 미국 금융위기가 닥치자 민간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하
되고 이로 인해 우체국예금법을 통과, 1910년부터 55년간 우체국에서 일정 한
도(처음에는 500달러, 1916년 1,000달러, 1918년 2,500달러로 조정)를 정해 2%
의 고정금리를 주는 예금업무를 취급함²³⁾
- 우체국예금의 창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을 위해 안전한 예금처를
제공하였고, 미국 전역에 예금 뿐 아니라 채권 판매 등을 통해 편리한 금융서
비스를 을 제공하게 되었으며²⁴⁾, 1934년 대공황 시 전 예금대출 시장의 1/3규
모를 이루고 1947년에는 총 34억 달러의 수신규모를 나타냄

21) John Anderson(2013.10), "Why Canada Needs Postal Banking",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22) U.S. Postal Servic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09.05.04
<http://www.uspsoig.gov/blog/banking-postal-service>

23) U.S. Postal Servic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09.05.04
<http://www.uspsoig.gov/blog/banking-postal-service>

24) U.S. Postal Servic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09.05.04
<http://www.uspsoig.gov/blog/banking-postal-service>

- 그러나 2차 대전 후 시중은행의 금리 상승과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인해 1964년 4억 달러까지 수신이 감소, 결국 1967년 금융 서비스를 중단함
- 2009년 미국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됨²⁵⁾
 - 마이클 린드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함. 첫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으로 미국인의 10%가량이 은행 계좌가 아예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로 인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는 국가의 필요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오게 된다는 것이며 넷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공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임
 - 이에 린드는 과거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취급하면서 저임금 이민자의 저축을 끌어 올렸듯이 지금도 우체국금융이 있으면 이민자나 저소득 원주민의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우체국예금은 중산층과 부유층에도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저위험 저수익 투자처 하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2013년 미국우체국 노조의 주도로 금융업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USPS의 우체국금융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음
 - 최근 금융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Wall Street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본 부족, 우편적자의 심화에 따라 우체국금융 부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됨
 - 이에 노조는 2012년 총회에서 금융업 재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편노조위원장은 우체국금융 부활을 주장함
 - 주장에 따르면 USPS는 지난 분기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로인해 토요일배달이 중지되고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기준 미국의 천만 가구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 다른 2천4백만 가구는 계좌는 있지만 은행 외 전당포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금융소외층은 약 6천 8백만명으로 추정됨
 - 이에 타 국가에서 금융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우체국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키위뱅크는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함
 - 현재 우체국이 선불신용카드, 머니오더 발행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를 발행하거나 계좌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 3만2천개 우체국 창구망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파생상품 투자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용되며 적은 수수료로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을 충족시켜 줄 것임이라 기대함

25) Mailing Our Way to Solvency(MICHAEL LIND, 2008.10,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8/10/06/opinion/06lind.html?ref=opinion&r=0>

□ 영국

- ▶ 영국 우체국금융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전국적인 저축금융기관의 필요성으로 창설되었으나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화 달성을 목적으로 Agency형태로 운영체제를 바꿈. 그러나 2009년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를 타개하고자 영국 정부는 Agency에서 확대하여 People's Bank 설립을 검토함
- 영국 우체국금융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전국적인 저축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면서 1861년 Post Office Savings Bank로 설립됨²⁶⁾
- 우편, 예금 등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1969년 10월 우편, 전기통신 등의 사업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우편전기통신공사로 독립, 재편함²⁷⁾
- 1969 우편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고, 금융부분을 국민저축투자금고(정부금융 기관)에 매각함
- 1985년 지로뱅크에 우편대체 업무를 매각함
- 1996년 재무부가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와 사무운영에 관한 재량권을 집행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두 기관에 매각한 금융 업무를 우체국창구에서 위탁 서비스로 제공함(예금, 신용카드, 대출, 보험 업무)
- 1999년 4월에는 서비스사업의 기술적 분야를 Siemens Business Service(SBS)에 위탁하여 SBS가 국민저축청의 전 상품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직원을 SBS로 전직시켜 국민저축청의 직원수는 기존 4,300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함
- 2001년 국민저축청은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National Savings & Investment로 변경함
- 우체국금융의 실제 판매는 우편공사가 창구 업무 전담을 위해 100%출자하여 만든 우편창구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민저축청은 독자적인 점포망을 갖지 않고 우편창구회사에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함

26)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예금보험공사

27)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예금보험공사

- 국민저축청은 상품의 설계, 금리의 설정, 자산운용 등 기획과 업무를 취급, 국민저축의 운영업무는 SBS에 위탁함
- 원칙적으로 개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금융기관과 달리 각종 이자소득비과세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 운용 또한 조달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달자금 전액을 정부에 예탁함
- 대체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분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킴
 - 우편대체사업(National Giro)은 1976년 예금과 대출 등 일반은행업무를 개시하였고, 1978년에는 National Girobank로 명칭을 변경함. 이에 따라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존재했던 Girobank는 그 이후에도 우편공사의 일부분이라는 경영상의 제약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1985년 우편공사가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로 분리, 독립하여 Girobank plc로 변경하고 은행법에 따라 은행면허를 취득함. 그 후 Girobank plc는 1990년에 주택금융조합의 A&L에 매수되어 완전히 민영화됨²⁸⁾
- 2009년 2월 영국정부는 대출 활성화로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우체국금융을 확대하여 국영 은행인 국민은행(People's Bank)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²⁹⁾
 - 영국 우체국은 은행업무 확대를 위해 자회사 형태의 'People's Bank'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은행 자회사 설립계획은 영국 우체국의 모회사인 Royal Mail의 민영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Bank of Ireland'가 우체국 지점망을 통해 자사의 예금, 모기지 및 기타 소매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음
 - 신규 설립되는 'People's Bank'는 자체적으로 직불카드, 당좌계좌, 예대업무, 기업 자문 업무 등 포괄적인 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됨
 - 영국 정부는 12,000여개에 이르는 우체국 지점망을 통한 대출확대가 시중유동성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8)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29) 조선일보 2009.02.02. "영국, '국민은행' 설립 검토"[BBC]
<http://m.chosun.com/article.html?contid=2009020200601>

다. 기타 국가의 우정경영 및 금융사업 운영 현황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우정 지분의 68.5%를 보유한 마끄리(Macri)그룹은 1997년 정부로부터 30년간의 우편사업권을 받고 대신 매년 5천 3백만불의 로열티를 납부하기로 했으나 우편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왔고 1999년 이후 로열티도 체납함³⁰⁾
- 이에 민영화된 아르헨티나우정(Correo Argentino)은 2001년 09월 하순 자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
- 키르치네르 정부는 90년대 민영화되었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재국영화정책을 본격화하였고, 우편사업에 대해서도 국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2003년 아르헨티나우정이 재국영화되면서 Ministry of Federal Planning, Public Investment and Services, Communications Department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Ministry of Economy가 나머지 1%를 가짐³¹⁾
- 2013년 11월 아르헨티나 우정의 대표자들은 브라질에 방문하여 브라질 우체국예금의 법적, 재정적, 사회적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Correo Argentino 최고 재무 책임자(CFO) Leandro Caputo는 아르헨티나우정이 브라질의 우체국예금 모델을 활용하여 2014년 15개 도시에 우체국예금을 설립할 것을 언급함³²⁾

□ 브라질

- 개발도상국가인 브라질에서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체국(ECT: Brazilian Post and Telegraph Corporation)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지원 하에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약 6천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단순우편물과 정보만을 취급하는 간이 우체국을 운영함

30)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방안 마련 연구(2005) p179

31) 해외우정동향 (2001-07호 ,우정사업본부), The Economist Argentina's state-owned firms So far, not so good, 2012. 05. 12

32) Correo Argentina investigating move into postal banking, Post& Parcel 2013.11.20.

<http://postandparcel.info/59019/news/companies/correo-argentina-investigating-move-into-postal-banking/>

-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정조건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금융서비스 제공) 민간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저소득층임
- 2002년부터 2011년 12월 민간은행 Bradesco 와 제휴 천백만계좌를 개설함. 2009년 기준 전체 고객의 73%가 월소득 \$225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됨
- 2009년 Bradesco의 신규 고객의 90%가 우체국을 통해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함
- 2011년 Bradesco와의 Partnership 종료, 2012년 브라질은행(Bank of Brazil)과 새로운 제휴관계를 맺고(5년간 17억8천만달러) 금융 서비스를 같이 우체국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브라질은행은 이를 통해 이전에 지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0여 시에 추가로 지점을 갖게 되어 전국에 걸친 지점망을 확보함

3. 시사점

□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 주요 10개국의 우정 경영 성과 추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편과 금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가 우편만 제공하는 국가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됨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우체국금융의 높은 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시너지효과는 다시 시너지 다양성(비용절감시너지, 영업시너지)과 수준(상,중,하) 측면에서 조직 형태에 따라 한국>일본>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단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공동 사용함으로써 공통영업비라는 '비용절감시너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여 '영업시너지(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이익)'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일본)와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프랑스, 뉴질랜드)에는 시설과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영업시너지는 단일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발생함

- Agency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영국, 호주)는 Fee-biz의 형태로서 시설과 네트워크만을 공유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절감시너지가 약하게 발생함

<표 3-4> 금융 서비스 제공 조직 형태별 시너지 효과

	우편&금융 동시제공				우편서비스만 제공
	단일조직	별도회사	자회사	Agency	
대표국가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비용절감시너지	○	○	○	△	X
영업시너지	○	△	△	X	X

□ 우체국금융의 필요성 확인 및 재개 논의

- 선진 우정은 대부분 우체국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금융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됨
 - 일본 우체국금융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추진 중에도 금융사업 분야의 매각에 대한 입장을 '의무화'에서 '추진'으로 하향조정함
 - 프랑스의 경우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예금이 시작되었음
 - 호주는 우체국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Agency형태의 금융 사업을 새로 시작함
 - 브라질 우체국 은행은 빈곤과 금융소외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 폐지되었던 우체국금융 사업이 재개되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발견됨
 - 뉴질랜드의 경우 매각하였던 금융사업을 2002년 재개하여(KiwiBank)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도농간의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우편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함
- 선진국 우정을 위주로 금융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선진우정(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우정사업의 수익성 강화 수단으로서의 역할, 우체국금융의 금융포용 역할, 국가 경기침체 극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우체국금융 재개를 논의 중임

□ 정부 조직으로서 우체국예금만의 특수성

- OECD 33개국 중 우편과 금융을 모두 제공하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부 조직 형태로 남아있음
- 이러한 정부부처라는 특수성은 예금전액보장, BIS비율규제, 예금보험료, 대출서비스 제공여부 등에서 은행법을 따르는 타 국가의 우체국예금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해외의 민영화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우체국의 민영화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³³⁾.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타국의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목표, 시행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영화 실패로 인한 재국영화된 이력이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도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일본 우체국금융의 경우 민영화가 시작된 것은 우체국예금이 단일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저금리 기조로 우체국예금의 수익성 악화가 배경이 되어 민간의 선진 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4%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름
- 따라서 선불리 민영화를 우체국의 최종 목표로 정립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더 나아가 정부부처로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금융의 보편화'라는 우체국금융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33) 이대기(2013)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제4장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그리고 진실

1. 우체국예금에 대한 혜택

가. 세금, 보험료 및 지불준비금 면제

□ 세금면제

- 민간금융기관과는 달리 우체국예금은 법인세, 교육세, 지방세,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체국예금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운영체제와 연관된 문제임
 - 우정사업이 국가기관의 일부로 남아있는 한 현행 세법체제로는 법인세를 부담할 수 없음
 - 이전까지 면제되었던 증권거래세는 연기금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함
- 민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해 면제된 세금액을 산출함. 2012년 당기 순이익 1,906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유효세율 17.5% 적용시 334억원의 법인세가 면제 되었음. 이에 따라 면제된 지방세액은 33억원 정도임. 영업수익 3조 2,261억원을 기준으로 교육세는 161억원이 면제 되었음

□ 보험료

- 우체국예금은 정부부처로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에 관한 혜택을 받고 있음. 2007년 PWC는 2013년 민간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고용보험료를 43억원으로 추정함(적용비율: 1.3%). 산업재해보험료는 26억원으로 추정함(적용비율: 0.8%)
- 우체국예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관계로, 예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있음.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예수금 평균잔액 58조원을 기준으로 약 471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임금채권보전금 역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고 있음. 2007년 PWC는 2013년 임금채권보전금을 1억원으로 추정함(적용율: 0.04%)

□ 지불준비금

- 우체국예금은 현재 한국은행법 제55조에 의한 지급준비예치금(법정 지급준비금)의 예치를 면제받고 있음
 - 우정사업은 당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보험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불준비금 불필요
- 지불준비금 예치시 우체국은 약 1조 6천억원을 예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CD 수신고의 2%, 기타예금 수신고의 7%).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은 5년 평균 마진율 1.47% 적용시 241억원으로 추정됨

나. 전액보장

-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전액지급을 국가가 보장함
 - 제4조: 국가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2012년 기준 우체국의 보험 대상 예금 비율은 약 59%(비보험 예금 약 41%)로 예금은행의 약 35%(비보험예금 65%)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액 예금이 예금은행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순히 이들 비율을 비교 시 전액 보장이 우체국의 자금 수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우체국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안정성 때문에 우체국을 이용한다는 비율 23%와 2013년 8월말 기준 5천만원 초과 수신고 27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액보장으로 인한 추가 이익은 약 920억원으로 추정됨

2. 우체국예금에 대한 규제

가. 대출업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자금운용 범위에 대출업무가 제외되어 있어 일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체국예금자금 운용)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기관 예탁, 2. 재정자금 예탁, 3. 유가증권 매매·대여, 4. 금융기관

- 대여, 5. 파생상품 거래, 6.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
- 반면, 민간은행은 예금수신의 40~50%를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
 - ※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 49.99%

- 단, '우편대체법' 제20조에 의거 가계수표 대월만 취급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운용자금의 0.9%로 미미한 수준임
- 「우편대체법」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1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2호: 가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표 4-6> 우체국예금자금 운용현황('12)

(단위: 억원, %)

구 분	예 금 자 금			
	운용규모	수익액	수익률	비율
금융기관 예탁	448,257	21,827	4.82	74.3
국·공채 등	126,870	7,735	6.10	21.0
대월	4,773	243	5.09	0.8
지방우정청 운용자금	23,020	968	4.19	3.8
합 계	602,920	30,773	5.10	100.0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등 국영금융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근본적 한계를 내포함
 - 금융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이용 어려움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대출업무 취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한계 존재
- 2013년의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대출업 불가에 따른 기회비용은 4,069억원으로 추정됨
 - 대출 및 신용카드 불가로 인해 우체국의 요구불수신 비중(14.15%)이 일반은행(22.32%) 대비 약 8.17% 낮은 수준임. 이에 대출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수신 가능 금액은 49,735억원(608,750x8.17%)으로 추정됨
 - 예대율: 97.5% (2013년 8월말 기준), 국내은행 5년평균 NIM: 2.12%, 우체국예금 5년 평균 운용마진율: 1.47% 적용함

나. 해외송금 한도액 제한

- 2005년 9월 해외송금업무의 전국 우체국 확대 후, 해외송금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함. 2010~2012년 해외송금 건수 및 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6%임

<표 4-7> 해외송금 연도별 취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송금	
	건수	금액
2010	6,859	4,764
2011	10,350	6,991
2012	14,612	10,203
연평균 증가률	46.0%	46.3%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KISDI분석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체신관서의 외환업무 취급범위를 거주자의 미화 1천불 이하 지급으로 제한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체신관서)에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명시
 - 반면, 일반은행은 연간 5만불 이하, 초과시 송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주요 우정사업자는 송금한도액 없음

- 우체국 해외송금 수수료는 일반 은행의 44%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건당 한도로 수수료 부담 가중 및 이용불편을 초래함
 - 1,000불 초과 송금 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읍면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초래함

<표 4-8> 우체국과 일반은행의 수수료 비교

송금액	우체국	농협	외환은행	하나은행
1,000불 이하	8,000원	18,000원	18,000원	14,500원
2,000불 이하	-	18,000원	18,000원	14,500원
5,000불 이하	-	23,000원	23,000원	19,500원
20,000불 이하	-	28,000원	28,000원	32,500원
20,000불 초과	-	33,000원	33,000원	37,500원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국가간 송금협정 확대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함 (송금협정 체결국은 18개국에 불과)
- 송금한도액 제한에 대한 스리랑카 대사관 공식 항의서한 접수('08.11.8)
- 송금한도액 제한에 대한 세계저축은행협회(WSBI) 공식서한 접수 ('10.10.7)

다. 펀드판매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2-1)'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펀드판매가 가능함
 - 우체국은 보편적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구축, 전문인력 확보(1,064명 자격증 취득) 등 판매기반 마련 후, 인가 추진중
 - 우체국 펀드판매 국가: 일본(1조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펀드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도시지역에 분포한 기관에서만 판매하여 읍면지역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펀드판매중인 기관: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 지방은행(부산은행, 대구은행)과 비슷한 판매고를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펀드판매 불가에 따른 기회비용은 128억원으로 추정됨
 -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의 평균 펀드 판매고 1.6조는 은행 펀드 판매고 87조의 1.8% 수준을 기준으로 함(2013년 9월기준)
 - 보수율 0.8%를 적용함

라. 환매조건부채권시장 및 콜시장 참여 제한

-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매조건부 채권(RP)거래 및 콜시장에서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함
 - 그러나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제8-78조)에 의해 우체국은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RP거래와 콜거래(자금대여)가 불가능함
- 유동자금 1조 5천억 기준에 전체자금 운용수익률과 단기자금 운용 수익률의 차인 1.135%를 적용 시 RP 및 콜시장 참여 제한에 따른 기회 비용은 170억원으로 추정됨

마. 우체국 카드서비스 제한

- 우체국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임
 -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함

-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체국은 신용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전자 바우처 등 정부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신용카드 제휴서비스(발급 접수대행)를 제공하고 있음

<표 4-9>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제휴카드 현황

구 분	고운맘카드	아이사랑카드	화물운전자	개인택시	유공자	실버패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영유아 시설 이용부모에게 소득별로 보육료 지원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대구지하철 이용하는 경로자에게 무료탑승
관련 부처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 가족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대구 지하철공사
지원 금액	1인 40만원	소득수준별로 지원	경유: 리터당 334.97원 LPG: 리터당 197.97원	경유: 리터당 334.97원 LPG: 리터당 239.85원	LPG: 리터당 220원	대구지하철 이용시 무료탑승
주관사	KB국민	KB국민	신한	신한	신한	신한
모집 창구	우체국, 카드사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카드사	우체국, 카드사	우체국, 카드사	읍/면/동사무소 보훈지청	우체국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 신용카드 시장에서 농협의 지점수에 비례해서 농협과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란 가정하에 신용카드업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1,468억원으로 추정됨
- '12년중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 5,777,000
- '12년중 카드대출 총 이용실적: 1,000,000
- '13년 기준 농협 M/S: 6.7%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수익률: 0.55%

바. 신탁업 제한

-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로 신탁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며 금융업권의 신탁업 진출이 크게 증가함
- '13.06월 말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수: 은행 20, 증권회사 21, 보험사 5,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로 총 57개사

- '13년 6월 57개 신탁회사(경영 46사, 부동산신탁회사 11사)의 총 수탁고는 47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9조원이 증가함

<표 4-10>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13년 6월 말)

(단위: 조원, %, %p)

구 분	'12년말 (A)	'13년 6월말 (B)	비율	증감 (B-A)	증감률 (B-A)/A	
						검 영 사
	증 권	113.4	124.3	26.4	10.9	9.6
	보 험	1.8	1.9	0.4	0.1	5.8
	소 계	317.6	350.9	74.4	33.3	10.5
부동산신탁회사		120.9	120.5	25.6	△0.4	△0.3
합 계		438.5	471.4	100.0	32.9	7.5

자료: 금융감독원 2013년 상반기 신탁업 영업 현황(<http://www.fss.or.kr>)

-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장기자산관리형 신탁상품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신탁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도 이어지고 있어 신탁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³⁴⁾
- 신탁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이들 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신탁상품을 출시할 경우 우체국금융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함
- 2012년 기준 은행경영신탁회사 총 신탁 보수의 1.5% (SC제일은행의 시장점유율)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신탁업무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은 68억 원으로 추정됨

사.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운용대상 기관 참여

-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06~'12년 기간 중 연평균 67%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2013년 말 67.3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함

<표 4-1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은행(16)	2,861(37.8)	11,171(40.5)	31,629(47.8)	68,077(48.5)	144,632(49.6)	242,544(48.6)	335,168(49.8)
보험(21)	4,091(54.1)	13,764(50.0)	26,688(40.4)	55,762(39.7)	99,483(34.2)	166,743(33.4)	212,425(31.6)
증권(14)	615(8.1)	2,614(9.5)	7,805(11.8)	16,620(11.8)	47,357(16.2)	89,749(18.0)	124,964(18.6)
계(52*사)	7,567	27,549	66,122	140,459	291,472	499,167	673,459

* 총 52개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902억원) 포함)

34) 월간산업동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

자료: 금융감독원 '12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http://www.fss.or.kr)

-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05년 12월)된 퇴직연금시장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가입 금지, 사외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12년 20%, 이후 매년 5%씩 축소되어 '16년 완전 폐지) 등
- '10년 12월 부터는 퇴직연금의 범위를 4인 이하로 확장하여 이들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로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됨

<표 4-12> 퇴직연금 사업장 현황('12년 12월 말)

(단위: %)

구 분	10인 미만	10인 ~ 29인	30인 ~ 99인	100인 ~ 299인	300인 ~ 499인	500인 이상	전 체
도입 비율	9.6	29.9	38.3	48.9	61.3	86.5	13.4

자료: 금융감독원 '12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http://www.fss.or.kr)

-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우체국의 소규모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표 4-13> 퇴직금 유형별 현황('12년 12월 말)

(단위: 억원, %)

구 분	DB형	DC형	IRA	계
적립금 (비중)	496,987(73.8)	119,556(17.8)	56,916(8.4)	673,459(100.0)

자료: 금융감독원 '12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http://www.fss.or.kr)

<표 4-14> 퇴직금 운용 현황('12년 12월 말)

(단위: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 타 (대기성자금 등)	계
적립금 (비중)	627,026(93.1)	34,379(5.1)	12,054(1.8)	673,459(100.0)

자료: 금융감독원 '12년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결과(http://www.fss.or.kr)

- o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취급할 수 없어 은퇴준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제약

아. 법원공탁금수납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공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향후 공탁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표 4-15> 법원공탁금 납입금액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법원공탁금	3.5	4.1	4.9	5.9	5.7	5.9	6.7	7.2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 우체국은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없는 법원 소재지역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저원가성 자금유치를 통한 건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공탁금 보관자는 공탁법 제3조에 따라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체국은 동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공탁금 보관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고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자. 지자체 금고대행

- 현행「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는 은행만 취급할 수 있음
 - '11.8.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12.3.9. 시행)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 추가됨
 - 하지만,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제외되어 지자체금고특별회계, 기금 등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어려움

<표 4-16> 지자체 금고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자체 금고시장 규모	76	83	93	98	95
증감률(%)	-	9.2	12.0	5.4	-3.1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0년 95조원으로, 연평균('06~'10) 5.8%의 성장률을 보임.

* '11년 기준 총244개의 자치단체 금고 은행 중 농협(168개), 우리은행(26개), 부산 은행(15개) 대구은행(12개), 기타(23개) 금융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자료: 우체국예금 내부자료

- 지자체 금고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우체국이 배제됨에 따라 예산 등의 안정적 운용관리를 선호하는 지자체의 선택기회를 제한함

3. 우체국예금에 대한 진실

가.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 ‘국가재정법’ 및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이익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전출규모를 임의 계상하고 결산 완료 후에 전출하며 당기순이익이 예산총칙의 전출금보다 적을 경우 이익잉여금 전액을 전출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기업 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 결산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이 가능함
- 최근('09~'10), 당기순이익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우체국예금의 BIS 비율이 일반은행보다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이 악화됨

<표 4-3> 우체국예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BIS 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9	합계
전년도 당기순이익	1,726	1,748	1,106	281	390	2,698	1,263	1,906	11,118
일반회계 전출금	379	351	748	281	390	700	634	1,302	4,785
우체국예금 BIS 비율	13.51	13.09	12.69	12.82	13.77*	10.76	9.78	9.30	-
일반은행 BIS 비율	12.31	11.95	12.72	14.57	14.72	14.27	14.81	15.06	-

* '07년까지 당기순이익과 전출금은 우편과 합산 ('08년부터 우편, 예금 회계 분리)

* '10.9월부터 금감원 권고에 따라 자본금 산출시 우편을 합산하여 BIS 비율 상승

* BIS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자료: 우정사업본부

- 당기순이익의 과도한 일반회계 전출이 지속될 경우 BIS 비율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등 심각한 자본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우체국은 자본건전성 확보의 주요수단인 증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적립으로만 자본 확충 가능

- 현 추세대로 자본금 적립없이 BIS 비율이 감소되면, BASEL III('13년 도입)에 의해 강화되는 BIS 비율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할 전망

<표 4-4> BASEL III 요구수준과 우체국예금 BIS비율 전망

(단위: %)

구분		2010	2011	2013(E)	2016(E)	2019(E)
BASEL III 요구수준	기본	8.0	8.0	8.0	8.625	10.5
	경제위기시*	8.0	8.0	10.5	11.125	13.0
우체국예금	전액 전출	13.91	13.09	11.58	9.64	8.03
	60% 적립시	13.91	13.09	12.35	11.39	10.59

*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시 감독당국 재량에 따라 0~2.5%의 추가자본을 부과

* 위험자산 및 당기순이익 전망은 최근 3년간('07~'09년) 예금수신고 증가율 (6.3%) 적용

자료: 우정사업본부

나.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납부

- 우체국금융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상환금을 출연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천분의 1)을 공급한 금액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용한 책임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1천분의 1)을 공급한 금액
- '12년까지 4,769억원을 출연, '27년까지 13,048억원 추가 출연 전망임

<표 4-5> 연도별 공적자금상환금 출연액

(단위: 억원)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12	'13~'27(예정)	계
예 금	291	304	304	313	425	380	402	445	561	3,425	10,747	14,172
보 험	127	131	138	123	126	137	142	215	205	1,344	2,301	3,645
계	418	435	442	436	551	517	544	660	766	4,769	13,048	17,817

자료: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금융은 예금보험부보대상기관이 아니고, 공적자금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상환금을 납부하고 있음
 -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어 예금자의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 예금보험기관에서 예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 예금보험부보 대상기관이 아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는 기금을 납부하지 않음
- 공적자금상환기금 납부요율(0.1%)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신협이 납부요율(0.05%)보다 높아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확보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 은행, 우체국 등은 예금 평균잔액의 0.1%를 2027년까지 납부하고, 신협은 금융기관의 1/2수준을 2017년까지만 납부함

다. 우체국 시설 등 무상 사용

- 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불공정경쟁 논란은 초기 주어진 시설이 아닌 현재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이 운영상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우체국의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은 전국적인 국가시설 사용을 통해 이루어짐
 - 시설관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논란은 최소화 될 수 있음
- 우체국시설에 대한 신축 및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은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어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특별회계를 통한 독립채산제는 현재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전인 1949년(통신사업특별회계)부터 유지되어옴
- 2000년~2012년 사이 토지매입과 건물공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2조 4,500억원으로 연평균 58개 국 대상으로 1,742억원 정도를 지출함
-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이 운영상 반영되는 것에 더해 초기 주어진 시설(자체 수익으로 추가 건설되지 않은 시설)의 잔존가치도 상당부분 소멸되었음
 -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61개소, 30~34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은 141개소로 전체 우체국 1,669개소의 12.1%에 해당됨
 - 5년 후인 2018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 우체국의 약 30%인 496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건물의 잔존가치가 상당부분 소멸되어 가고 유지, 보수가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체국예금의 국가 시설 무상 사용 혜택의 소멸을 의미함

라. 재무건전성 및 감독 문제

□ 재무건전성

- 우체국의 BIS 자기자본 비율 5년 평균치는 11.5%로 6대은행의 13.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보다는 일반회계 전출 등 자기자본 축적의 제약에서 기인함

- 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각종 비율의 구성 항목들이 우체국예금 운용상 모두 허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 비율상 수평적인 비교는 타당하지 않음
 - 자기자본비율은 은행들의 고위험/고수익 전략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산출된 지표이므로 운용상 제약이 있는 우체국은 적용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님
 - 민간은행처럼 증자나 은행채 발행(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을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순이익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은행과 동일하게 이들 비율 준수를 요구 하는 것은 무리임
 - 자기자본비율 개선 요구는 일반회계전출 제한, 이익잉여금 적립허용과 병행되어야 함

- 우체국예금은 바젤II 기준에서 요구하는 총자본비율(8%이상), 기본자본비율(4%이상)의 준수를 위해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12.12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9.78%, 기본자본비율 6.86%)
 - 최저자기자본규제 중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음에도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 건전성 기준 제 8조에 8% 이상을 유지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자본(은행권의 보통주와 Tier 1합산치)에 대한 4% 비율 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바젤II의 나머지 한 축인 공시(Pillar3)는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 41조에 명시되어 있음

- 바젤협약 기준 적용으로 제한된 고위험/고수익의 운용 방식이 우체국에게 허락되는 경우 공정경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바젤 협약준수로 인한 보수적인 운용으로 영업범위가 줄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태에서(예: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위험자산인 대출금을 회수하는 행위) 우체국은 이러한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임
 - 우체국예금의 자산운용은 중위험/중수익 추구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투자 역시 낮은 투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대체투자는 운용자산의 10월말 기준 3.10% 수준임)
 - 일부 고위험 자산이 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위험은 낮은 수준임. 2012년 말 기준 평균 위험가중치는 대상익스포저의 59.4% 수준임

- 바젤협약 III에서 기존의 자본비율 규제에 추가된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 역시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추구를 제한함(국채는 100% 유동성 인정하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채는 75%만 인정). 이들 추가된 규정은 각각 2015년과 2018년부터 시행 예정임. 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7조(유동성비율)의 개정이 요구 될 수 있으나 대출이 없는 우체국예금 특성상 충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바젤협약 Ⅲ는 추가로 완충자본 (자본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최대 2.5%) 적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용상품 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우체국예금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우체국 예금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제한된 투자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우체국예금건전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 준수하고 있음. 또한 여타 기금의 운용 방식대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보유함

□ 금감원 감독

- 우체국예금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달리 특별법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경영 사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민간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 대상이 아닌 관계로, 은행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하지만 기관 성격, 업무영역과 특성 자체가 기존의 금감원 감독 대상과 다르며 이를 반영해 제정된 건전성 기준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음
- 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경영상태, 사업운영, 자산운용 및 소비자 보호 등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감사,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통제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로부터 예산의 편성, 인력의 운영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등 **민간 금융기관들은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중첩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음**
- 이에 민간금융기관들이 받는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과잉규제에 따른 비효율성과 행정적 낭비 및 비용 과다 발생
 ※ 매년 2~3개월간 감사원(연기금국)의 집중 수감(금감원 검사역 합동 감사)

- 아울러 우체국금융은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신탁, 신용카드, 외환거래, RP 및 콜 시장 참여 등 여러 분야에 국영기관으로써 제한되어 있어 민간금융기관과는 다른 사업적 규제들을 우선 완화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현재 RM/ALM시스템('05.10월 구축)을 이용하고 시장, 신용, ALM(금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통합리스크시스템 구축 용역을 통해 시장, 신용, ALM, BIS비율 산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제5장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안

1. 우체국예금을 통한 소비자 효용 확대

- 우체국 예금에 대한 공정경쟁 문제는 우체국 예금의 상대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우체국이 민간금융사와 불필요하게 경쟁하여 민간은행의 고객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음
- 우체국예금의 운용상 혜택과 불이익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체국예금의 공공성이 주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체국이 민간은행의 영역을 잠식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강함
- 단, 우체국예금상품의 차별성으로 시중은행 상품과의 대체성이 떨어져 두 기관 간의 자금이동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은 우체국 내부의 비효율성에 그침. 더 이상의 파장효과는 없어 그 비용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우체국예금이 어떠한 특혜를 지니고 운영 되더라도 공정경쟁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임
- 시장 왜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효율성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내부비효율성과 이로부터 파생된 시장에서의 자원분배왜곡, 금융정책 효과 반감의 외부비효율성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내부 비효율성: 정책금융, 동기부여 부족, 전문성 부족등 주어진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운영상 발생하는 비효율성
 - 외부 비효율성: 타 시장 참여자와 시장 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 문제와 금융정책 효과 반감 문제가 이에 해당함
- 하지만 위와 같이 제기된 우체국 예금에 대한 비효율성의 뚜렷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음
 - 우체국 예금은 운용상 규제와 혜택이 공존하기 때문에 민간은행과의 성과 비교를 통한 효율성 판단이 어려움.
 - 우체국 예금의 금리는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게끔 책정됨: 2006년 이후 정기예금 이자율은 우체국이 4.45%, 은행이 4.25%로 우체국이 0.2%p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이율의 표준편차가 0.7인 것을 고려하면 그리 큰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우체국 예금의 낮은 시장 점유율: 전체시장 대비 4%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정기예금 시장도 8% 정도로 일본 우체국 예금과 같은 높은 시장 지배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우체국 예금과 같은 높은 시장 지배력을 기대할 수 없음.

- 위 비효율성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총효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특히 공정경쟁 왜곡 문제는 지나치게 민간은행 입장에서 서술된 바, 소비자의 효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민간은행 효용 감소가 총효용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음. 민간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일부를 우체국이 차지, 영업영역이 줄어들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체국 예금이 어떠한 효용변화를 안겨주는지를 고려해야함
- 내부 비효율성이 존재할 경우 외부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됨. 하지만 소비자가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을 인지하는 등의 기타 이유로 우체국예금과 민간은행 예금상품간의 대체성이 크지 않다면, 내부비효율성이 존재하더라도 창출되는 외부비효율성의 크기는 제한적 일 것임. 은행과의 이자율 차이가 크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낮다는 사실 또한 비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 해줌
- 시장에 대한 교란 정도가 크더라도 (예: 우체국 예금의 이자율이 시장을 선도하고 양자간 예금자금의 이동도 큰 경우) 과점형태인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총효용은 증가할 수 있음. 가격(예금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주어지는 완전경쟁하에서의 시장균형은 총효용의 최대화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필요 하나 가격 조정이 가능한 과점 상태에서는 생산자의 이익 극대화가 총효용 극대화를 보장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명분을 제공함.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없더라도 과점시장에서 과대창출된 생산자 잉여의 일부를 국가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잉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3> 은행권과 우체국의 사안별 주장

문제제기	내부비효율성	공정경쟁 왜곡	금융시장 왜곡
민간은행 주장	·정책금융 가능성 ·동기부여 부족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왜곡	·금융정책 효과 반감
우체국 반론	·독립채산제로 운영 ·양호한 수익성 지표 ·공공기관의 일정수준 비효율성은 불가피	·이자율간 괴리가 크지 않음 ·과점 상태인 예금시장이 개선 대상	·낮은 시장 점유율 ·민간은행의 과점 상태가 금융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더 큰 요인

2.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

- 우체국예금의 특징은 운영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영업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공정경쟁 논란은 지속될 것임.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금융사의 시장 잠식은 우체국예금이 지닌 운용상 특혜와 성격을 살려 민간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음

<표 4-1> 우체국예금의 연계 강화 방안

특성	연계강화방안	기대효과
운용상 혜택	공공활동 (자본시장 안정화)	시장 변동성 감소
차별화된 고객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서민금융 강화)	시장 분담, 비용 절감
전국의 지점망	업무제휴 확대	판매량 증가, 소비자 편익 증가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용상 혜택이 공공활동을 통해 시장참여자 다수에게 돌아간다면 혜택 논란을 경감 시킬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안전판 제공을 들 수 있음
 - 자본시장 안전판 제공은 우체국예금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우체국과 민간 은행의 고객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업무가 분담된다면 시장에서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우체국의 서민금융 기능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서민금융정책에 대출기능이 없는 우체국이 배제되었으나 고객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우체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으로의 강화는 민간금융사와의 고객 차별화를 달성하여 마찰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우체국이 운용상 제약으로 판매가 힘든 상품과 민간금융사의 판매망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업무 제휴로 판매량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우체국의 판매 가능 상품 제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가. 공공활동

□ 자본시장 안정화

- 은행 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조달한 예금으로 자금수요자인 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해 줌으로써 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전통적 금융 기법에 속함
-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활성화 되고 펀드 등을 이용한 자금중개기능이 보편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화 추세임
- 특히, 우체국예금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기능을 향상시켜옴
 - 기업이 직접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 투자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 금융기관 예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공채 매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 전체 채권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정책 수행 자금 조달 시장의 수요 확충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와 국가정책 지원에 기여
- 예금 전액보장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가 가능함.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특정 상황 하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신금액을 시중은행에 재예치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자금의 쏠림 및 이탈현상을 완화 할 수 있음
 - 민간금융기관과의 대체관계가 아닌 우체국 예금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의 재예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 우체국은 금융 네트워크 보유로 타 은행의 위기상황 시 완충기능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 업무제휴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특정상황에서 타 은행의 거래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해줄 필요가 있음
 - 2004년 7월 한미은행 파업 시 우체국 창구를 통해 고객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06년 12월에는 씨티은행 한국지사와 싱가포르 지역본부 간 해저 케이블 손상 당시 우체국에서 입출금 서비스를 대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함³⁵⁾

-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규율을 통한 업무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규율을 통한 공익 사업은 가급적 우체국이 맡음으로써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나. 서비스 차별화

□ 서민금융 강화

-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지점망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현재의 고객 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파악해 그들을 위한 서비스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지적된 사례는 주 고객층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을 시사함
- 우체국예금의 주 고객은 시중은행보다 계좌당 금액이 적고 연령대가 높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민금융 확대 및 강화는 우체국예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차별화를 더할 수 있음
- 수익성에 따라 민간금융사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우체국예금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됨
- 도시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은행에 비해 우체국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며 설립목적에도 부합됨. 하지만 대출 기능 부재로 최근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서민금융의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못함

□ 민간 서민금융 제도 현황

-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조된 사업으로 시중은행의 참여 시 일정 수준의 자율성 침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참여나 재원마련 등의 방법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35) 박재석, 문성철, 유승훈(20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KISDI

- 은행은 새희망홀씨,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햇살론에 직접 참여 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미소금융: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전자금을 대출. 은행의 휴면예금, 은행과 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루어 짐
 - 새희망홀씨: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대상,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여 저금리 자금을 대출함
 - 햇살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 연 소득 4천이하,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사용용도별로 차등된 한도의 자금을 대출함.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함

-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상품들은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추진 중임

- 서민금융 지원 및 신용회복은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기관들 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의 분리·통합을 추진 중임
 - 2013년 내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임

<표 4-2> 서민금융 제고 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목표	10년간 2조2천억원	5년간 10조원	5년간 은행 영업이익×10%	
대출 실적 (억원)	대출기간	'08.7 ~'12.2	'10.7 ~'12.2	
	누계	5,352 (63,037건)	19,197 (214,882건)	
	기관별	·미소금융지점: 3,722 ·기존사업자: 1,630	·새마을금고: 6,832 ·농 협: 5,832 ·신 협: 4,444 ·저 축 은 행: 1,695 등	·국민은행: 2,883 ·신한은행: 2,841 ·하나은행: 2,315 ·우리은행: 2,662 등
	용도별 (비율:%)	·창업자금: 2,539(47.4) ·운영자금: 1,795(33.5) ·생활자금: 585(10.9) ·기 타: 433(8.2)	·창업자금: 55(0.3) ·운영자금: 9,433(49.1) ·생계자금: 9,596(50.0) ·대환자금: 114(0.6)	·일반자금(용도불문)
	평균 대출액	849만원	893만원	858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우체국 서민 금융 필요성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서민금융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민간금융을 통해 간접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자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2008년 25.3%에서 2012년 19.9%로 하락하는 추세로 제도권금융의 여신 서비스에서 제외된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
 - 소득 분위별로 신용대출기관을 살펴본 경우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전 분위에서 저축은행 이용률은 1% 이하로 낮게 조사된 반면, 개인 및 기타를 통한 거래는 14%~80%로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2분위 36%,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80%로 높은 비율로 제 2금융권 역시 은행에세 제외된 이용자들에게 여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6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

치·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 등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14년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임
- 금융업무 수행과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

○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자금을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서민금융 시장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체국은 사업비가 적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가능함

○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 우체국금융이 친서민 금융정책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신기능의 일부를 부여하여 소액대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우정사업자도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 및 신용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대부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잔액은 8조 원대에 이룸. 저축은행의 100만명, 5.7조원 규모보다 큰 수준임. 대부업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로 경쟁 금융기관 또는 대체 상품이 부족한 것으로 꼽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기관이 소액신용대출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여신업무에 실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실적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 실제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7~10등급 저신용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6월 기준)

○ 시중은행의 미미한 실적은 서민금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한계를 보여줌.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중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에 우체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대두됨

- 미소금융, 햇살론등의 정책금융 실행 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신용업무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 우체국은 3,500여개소(별정국, 취급국 포함)에 43,000여 명의 직원과 물류·금융·전산망 등을 갖추어서 전국 고른지역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농어촌을 망라한 전국 2,810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전국적 금융망 구축(3천 8백만 계좌, 2013년 6월 기준)
 - 우편·예금·보험 전산망에 경영관리, 보안관제, 자원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국적인 우정사업 기반망을 구축·운영함. 서버 721대, PC 등 단말장비 65,248대, 3,772회선
- 이러한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우체국예금은 현재 18개 업무에 한해 229개 기관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지방은행,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우체국 बैं킹 업무제휴 표준 플랫폼」을 개발, 전국적 점포망이 부족한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함
-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이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펀드판매, 대출 대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체국의 펀드판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제2-1조)'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후 가능하나 현재 불가능한 상태임. 은행 등 도시지역에 분포한 기관에서만 판매하여 읍면지역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함
 - 우체국 펀드판매 국가: 일본(1조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 펀드판매중인 기관: 은행, 농·수협중앙회, 보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 우체국은 공공성 차원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을 고려함. 단,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 보다는 시설 이용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원가 보상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함. 우체국의 펀드 판

매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판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은행은 매년 약 1%의 수수료 수취(판매수수료=가입수수료+판매보수)

- 상호금융을 통해 여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도시 거주민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주택담보대출금리 농협중앙회: 4.38%~5.56%, 지역농협: 7~9%)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우체국 객장 내에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안내장을 비치하고 우체국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 및 그 승인 시 우체국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를 통해 네트워크가 약한 은행의 업무를 지원해줌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³⁶⁾

- 우체국은 지방의 주민들이 대출신청 시 제공할 담보물건의 현장방문을 통한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조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연체대출금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일정부분의 수수료수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자금 운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³⁷⁾

- 본 안은 1999년 검토되어 그 해 7월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우체국의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 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대출업무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 서비스가 ①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 ②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③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여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함

- 2012년 12월 KISDI 의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 서비스 강화방안”은 은행대출 업무 대행서비스 사업 모델로 `역경매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대출정보 서비스 제공`과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연계 대출 대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였음

36) 박중권/박재석/이석범/김효정/박경원(2001),『사회간접자본으로서 우체국 창구망의 공동이용 전략』,KISDI

37) 박중권/박재석/이석범/김효정/박경원(2001),『사회간접자본으로서 우체국 창구망의 공동이용 전략』,KISDI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우체국 예금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정리하고 해외 우체국 예금의 사례와 변화 추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금융사와의 협력 방안을 크게 3가지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

□ 우체국예금의 역할 및 특수성

- 우체국예금은 서민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지원하며 저렴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취급 업무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그 수입원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포함함
- 우체국예금과 민간금융회사는 수신측면에서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 이동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 해외 사례

- 우편 물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우체국 예금 사업이 우편사업의 수익원임을 확인함. 우체국예금을 겸업하고 있는 국가는 우편사업만을 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업 개입 정도에 비례함
- 주요 OECD 33개국 중 우편서비스와 함께 우체국금융을 제공하는 국가는 24개국으로 절반 이상이며, 우체국금융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 현재 우체국금융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개를 논의하는 사례는 우체국 예금의 규모 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암시함

- 세계적인 우체국 민영화 추세 속에 OECD국가 중 한국 우체국이 유일하게 정부부처로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강행했다가 재국영화한 사례나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체국예금이 설립취지와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금융사와의 상생방안과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

- 우체국예금의 특수성 및 강점을 활용한 민간금융사와의 연계방안을 크게 공공 활동 강화, 금융상품/서비스 차별화, 업무제휴 확대로 제시함. 자본시장 안정화라는 공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차별화 방안은 시장을 분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제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상품의 판매량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우체국예금에 대한 주요 혜택과 규제 사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략적인 액수로 산출

2. 우체국예금의 제도개선

- 우체국 예금에 대한 불공정 경쟁 논란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명확하지 않음.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행하는 공공활동을 차치하더라도 운영상 규제로 인한 불이익도 혜택과 공존
- 우체국 예금의 금융시장 교란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체국 예금의 지나친 규모 확대 역시 경계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우려하여 우체국예금의 순기능을 도외시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체국예금의 운영 형태 등을 고려 시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 아울러, 우체국예금에 대해 일방적 불공정경쟁을 논하기 보다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이 우체국예금의 혜택과 규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영금융기관인 우체국금융이 민간금융과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 모색하는 것이 한국 금융의 발전과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 만약, 우체국예금에 대한 혜택 축소 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우체국예금에 대한 제도 개선은 우체국예금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국가기관임을 유념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단기준은 민간금융사의 편익이 아닌 소비자(국민)를 포함한 사회전체 편익으로 설정 되어야 함

<부록1>

우체국예금 개요

□ 연 혁

- 1905. 7: 예금사업 시작
- 1929. 5: 보험사업 시작
- 1977. 3: 예금·보험업무 농협 이관
 - 이관사유: 우체국금융자금은 국가정책 목적에 의거 조달금리 이하로 운용함에 따라 부실 규모가 증가하여 금융업무 이관(자금의 50%를 국민투자채권으로 운용, 수신금리(18%)가 운용수익률(15%)을 상회)
- 1983. 7: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재개
 - 재개사유: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및 통신공사 분리후 우체국 유희시설 및 인력 활용, 우정사업 누적적자 ('77~'81: △2,507억원) 증가
- 2000. 7: 우정사업본부 출범
 - (1996.12.3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2007.12: 금융사업단을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으로 분리

□ 사업 목적과 범위

- 사업목적: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예보법 제1조)
- 사업범위
 - 수신업무만 취급(여신, 신탁업무 등 미취급)
 -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수납점 업무, 조성자금의 운용 등

□ 소관 법률

<표 6-1> 소관법률

법 률(3)	대통령령(3)	부 령(5)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체신관서의 국채·공채매도 등에 관한 규칙
○ 우편환법		· 우편환법 시행규칙 · 국제환 규칙
○ 우편대체법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부록2>

규제 vs. 혜택 계량화

가. 규제 vs. 혜택의 계량화를 통한 비교

- 우체국예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와 혜택이 존재하는 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혜택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우체국예금은 공정경쟁의 비교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비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우체국금융의 사업목적은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이 우체국예금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됨물론 우체국예금은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지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수단일 뿐임 즉, 민간금융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이나 산간벽지 주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체국예금 본래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적과 수단이 전이된 주장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민영화된 해외 우체국예금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체국 Network의 특성은 은행과 흡사함
 - 제2금융권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닌 단지 niche market을 target으로 한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있어 우체국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 구체적으로 우체국이 은행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총 6가지 항목 대비 업무영역 확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창출에의 기회비용 발생 부분을 추정하여 그 규모를 산출함

<표 6-2> 규제와 혜택 항목별 비교(요약)

(단위: 억원)

혜택		규제(불이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① 전액보장	919	① 대출	4,069
② 예금보험료면제	471	② 신용카드	1,468
③ 법인세면제	334	③ 외환업무	276
④ 지불준비금면제	241	④ RP 및 콜시장	170
⑤ 교육세면제	161	⑤ 펀드판매	128
⑥ 지방세면제	33	⑥ 신탁업	68
합 계 (A)	2,159	합 계 (B)	6,179
		차 이(A-B)	-4,020

-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간 우체국예금의 총 혜택은 2,159억원,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총 6,179억원으로 추정되어, 따라서 연간 불이익이 혜택보다 4,020억 원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나. 혜택 산출내역

<표 6-3> 혜택 산출내역

(단위: 억원)

No.	항목	산출내역	결과
1	전액보장	- 우체국예금 '13년 8월 말 5,000만원 초과 수신고: 271,923 - 안전성 때문에 우체국예금을 이용하는 고객*: 23.0% *2004년 우체국금융 TFT(재경부, 금감위, 정통부,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진행 한 우체국금융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 시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 중 우체국금융 이용 이유를 '안전성'이라고 응답한 비율 - 우체국예금 5년 평균 운용마진율: 1.47% ∴ 271,923 X 23.0% X 1.47% = 919.4	919
2	예금보험료 면제	- 예수금 평균잔액 (외화표시예금, CD,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 RP, 은행발행채권, 우편환/우편대체 제외): 588,226 - 예금보험료: 0.08% ∴ 588,226 X 0.08% = 471	471
3	법인세 면제	- '12년 당기순이익: 1,906 - 법인세 유효세율*: 17.5% *법인세 유효세율: 국회예산정책처, '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총수입 전망 ∴ 1,906 X 17.5% = 334	334
4	지불준비금 면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0%)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수신고 (2%): 504,570 X 2% = 10,091 - 기타예금 수신고(7%): 90,512 X 7% = 6,336 - 우체국예금 5년 평균 운용마진율: 1.47% ∴ (10,091 + 6,336) X 1.47% = 241	241
5	교육세 면제	- '12년 영업수익: 32,261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0.5% ∴ 32,261 X 0.5% = 161	161
6	지방세 면제	- 법인세: 334 - 지방세율: 10% ∴ 334 X 10% = 33.4	33
합 계			2,159

다. 규제(불이익) 산출내역: 업무영역 확대 불가에 따른 기회비용

<표 6-4> 규제 산출내역

(단위: 억원)

No.	항목	산출내역	결과
1	대출	- 대출가용자금*: 592,323 *608,750('13년 평잔) - 16,427(지급준비금)=592,323 - 요구불예금 수신고 증가분*: 49,735 *대출 및 신용카드 불가로 인해 우체국의 요구불수신 비중(14.15%)이 일반은행(22.32%) 대비 약 8.17% 낮은 수준. 이에 대출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수신 가능 금액은 49,735억원(608,750x8.17%) - 예대율: 97.5% *2013년 8월 말 기준 97.5% - 국내은행 5년평균 NIM: 2.12% - 우체국예금 5년 평균 운용마진율: 1.47% ∴ (592,323+49,735) X 97.5% X (2.12%-1.47%) = 4,069* *정기예금, 종합자산관리 역할 부진에 따른 기회손실은 미반영한 금액임	4,069
2	신용카드	- '12년중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 5,777,000 - '12년중 카드대출 총 이용실적: 1,000,000 - 2013 기준 농협 M/S: 6.7%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수익률: 0.55% *여신금융협회 전업계카드사 '13년 상반기 수익률(영업이익/총이용실적)기준 ∴ (5,777,000+1,000,000) X 6.7% X 58.8% X 0.55% = 1,468	1,468
3	외환업무	- 최근 2년('11년 '12년) 평균 우체국예금 이자수익: 21,318 - 최근 3년 평균 농협 이자수익 대비 외환관련 손익비중: 2.2% - 농협 대비 우체국 점포수 비율: 58.8% ∴ 21,318 X 2.2% X 58.8%= 276	276
4	RP 및 콜시장	- 유동자금: 15,000 - 전체자금 운용수익률-단기자금 운용수익률: 1.135% *'12년,'13년 10월 말 평균 전체자금 운용수익률: 4.57% *'12년,'13년 10월 말 평균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3.435% ∴ 15,000 X 1.135% = 170	170
5	펀드판매	- 펀드판매고*: 16,000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평균 펀드판매고(1.6조) 기준 *'13년 9월 은행 펀드판매고 87조의 1.8%수준 - 보수율*: 0.8% * 부산, 대구은행의 평균주식형 비중 55%등 고려하여 추정 ∴ 16,000 X 0.8% = 128	128
6	신탁업	- 2012년 은행경영신탁회사 신탁보수: 4,551 - SC제일은행 M/S: 1.5% ∴ 4,551 X 1.5% = 68	68
합 계			6,179

라. 기타 규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정성적인 부분)

□ 규제

- 공탁금수납, 지자체금고대행 등은 일반 은행은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이 행할 수 없어 수익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상실함
- 금융채발행 역시 우체국예금에 허용되지 않아 운용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

□ 일반회계전출, 우편적자보전, 공적자금상환기금

- 우체국예금만이 가진 특수성으로 일반회계전출, 우편적자보전, 공적자금 상환 기금이라는 추가적인 지출이 있음. 따라서 비록 정량적으로 그 기여도를 추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성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고려해야 함
- **(일반회계전출)**우체국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음 ('13년 기준 1,302억원 전출)
※ 1998년 이후 일반회계전출금: 총 12,665억원
- **(우편적자보전)**예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우편사업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며, 우편사업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12년 기준 우편적자규모: 707억원, 우체국예금의 우편적자 보전금: 466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우체국금융은 외환위기사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출 비율 또한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에 비해 높은 수준임('12년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561억원 출연)
 - 은행 & 우체국예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 예금평잔의 0.1%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예금보험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음
 - 신협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비율: 예금평잔의 0.05%

마. 동일 조건에서 사업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우체국의 기회비용

○ 우체국예금이 규제로 인해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해 얻지 못하는 수익은 연간 4,694억원으로 추산됨

- 시중은행의 수신고대비 당기순이익(최근 3년 평균): 1.1%
- 우체국예금이 업무영역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경우) 기대되는 당기순이익
: 60조 X 1.1% = 6,600억원
- 우체국예금 당기순이익('12년 기준): 1,906억원

☞ 우체국예금이 수신고 60조의 은행이었을 경우를 가정, 2012년 당기순이익과의 차이

$$= 6,600 - 1,906 = 4,694(\text{억원})$$

$$\times 4,020 + 1,661(\text{일반회계전출, 우편적자보전, 공적자금상환기금}) = 5,681$$

○ 이상의 산식은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비교이므로 우체국예금의 은행대비 저렴한 인건비 등 사업비, 우편업무와의 시설공유를 통해 일어나는 비용절감시너지 등의 비용 감소 부분을 감안하지 않아 비용이 과대추정된 측면이 있음. 즉, 우체국예금은 시중은행 대비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이상에서 추정된 4,694억원은 우체국이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최소한의 금액'임

<표 6-5> 2012년 6대은행과 우체국의 수신고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우체국	기업	농협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일반관리비	4,903	18,778	19,171	15,838	27,276	33,057	27,067
수신규모	597,000	598,000	1,377,000	1,018,000	1,514,000	1,891,000	1,473,000
일반관리비/ 수신규모	0.8%	3.1%	1.4%	1.6%	1.8%	1.7%	1.8%

자료: 각사 annual report, KISDI 분석

<부록3>

은행과 우체국예금의 회계기준 차이

□ 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 관리방법의 차이

- 은행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 우체국은 단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관리

○ 내부유보 곤란

- 은행은 자본충실화를 위해 이익준비금 및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의 내부유보
- 우체국은 이익잉여금은 기업예산회계법 및 특례법에 의해 국가재정에 활용됨에 따라 내부유보가 어려움

○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규제 지침 부재

-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요구 및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 지침이 존재

<표 6-6> 자본적정성 기준 비교

은행	우체국예금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7조(자본적정 평가) 제8조(자기자본비율)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제10조(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식: BIS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산출방법: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8이상으로 유지 산식: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나. BIS기준기본자본비율 산식: BIS기준기본자본/위험가중자산*100	주1) 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 +운용리스크
다. 단순가지가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무형자산)/(실질총자산-무형자산)*100	주2) 자기자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자료: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시행령,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 자산건전성

○ 유가증권 투자비중

-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는 수익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우체국예금은 대출과 신탁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 대손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비율

- 우체국예금은 민간은행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 우체국예금은 민간 은행의 원화유동성 비율과 같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표 6-7> 자산건전성 기준 비교

은행	우체국예금
은행업감독규정 제 26조(경영지도비율) 제 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제 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 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1조(자산적정성 평가) 제12조(자산건전성 분류) 제13조(부실채권의 상각) 제14조(부실채권의 본부 집중) 제15조(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제16조(유동성 평가) 제17조(유동성비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 자산건전성 지표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채권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 자산건전성 비계량평가항목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 자산건전성 - 대출채권, 여신성유가증권, 위탁대여금, 여신성 가지급금 및 미수금, 기타 자산 등 보유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 분류 ▶ 대손충당금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 유가증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 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은 100분의 85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시행령,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 자금운용

○ 자산운용 규정

- 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은 업무범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체국예금은 자금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은행은 신탁, 신용카드, 자산운용회사 등을 검업을 통해 자산운용 가능

○ 유가증권 매입비율의 차이

-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규정
- 우체국예금은 사채권의 취득가액 총액의 경우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
- 대출 및 콜차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표 6-8> 자산운용 규정 비교

은행	우체국예금
은행법 제 27조(업무 범위) 제 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제 28조(겸영업무의 운영)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 2(겸영업무의 범위) 은행업감독규정 제 59조의 2(자산운용의 특례) 제 78조(여신운용 원칙)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 26조(운용원칙) 등 제 27조(예금자금의 운용) 등 제 28조(증권의 매입비율 등) 제 29조(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제 30조(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제 31조(예금자금 운용분석) 제 32조(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 은행업무의 범위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 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외국환 ▶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우체국예금 자금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재정자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증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
주선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의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
의 수탁업무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
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자료: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시행령,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2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제 1 장 서 론

- 우체국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전기, 수도, 우편, 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 * 우체국예금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영국의 경우 도입 당시부터 민간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기능과 공공성 중시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도 전국에 걸친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등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 * 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 수는 2011년 말 현재 2,769개로 국민은행의 1,160개(출장소 포함, 해외점포 제외), 삼성생명의 919개 등 대형 민간금융 회사의 2배 상회
- 우체국 예금 수신은 IMF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등 여신업무 취급 불가에 따라 자산운용은 주로 국고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
 - 우체국예금 수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대여, 파생상품 거래 등이며,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은행의 자산운용방식과 많은 부분 상이함
- 금융접점의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
 - 금융접점 확대, 인터넷 금융 확산 등으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당위성이 지속적

으로 약화될 전망되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다소 퇴색

← 우체국 예금은 도시 지역은 물론 농어촌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와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혹은 대체관계

□ 이와 함께 불공정 경쟁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문제, 금융감독 및 정책의 취약성 등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금융이라는 우체국예금의 본원적 차이로 인해 경쟁조건에서 불공정경쟁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

- 우체국 예금은 지준, 예보료, 법인세, 예금 전액보장으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여신업무 제한, 예보료 및 법인세 수준의 일반회계 전출 등 제한부분도 균형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우체국 예금은 금융감독원 감독 등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또한 저해할 가능성 있음. 다만,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 수신예금의 3% 수준의 점유율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용역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일부 보완관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등 체계전환 및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기관화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현실적이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 본고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간 금융회사와 우체국예금이 실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확대, 서민금융 역할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제2장 금융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가.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 이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
 -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 아울러 한계기업이 발행한 CP 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특히 G20 금융정상회의, G30 Report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
 - 새로운 규제의 방향은 규제당국의 역할 재조정,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financial system)의 역할 제한, 민영화 등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규제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을 상승시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나. 알파수익률 회피

- Exposure 규제 및 위험회피 성향의 강화로 고위험-고수익 비즈니스모델이 퇴조하고 저위험-저수익 모델 중심의 경영이 일반화됨
 - 금융회사의 외형성장에 의한 수익성보다 지배구조(governance), 퇴출전략(exit strategy)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고조

- 이에 따라 전통적인 성격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안정적인 수수료 발생거래의 중요성이 재조명
 - 신탁(custody),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산운용, 무역금융 등 거래(transaction) 중심의 비즈니스가 각광

□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제고를 위해 규모(scale)에 집중하는 현상 또한 재현

다. 디레버리징

□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은행, 헤지펀드, PEF 등의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모델을 채택하는 금융회사가 증가

- 이는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5% 이상의 ROE와 같은 성과는 당분간 기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라. 대형화 및 집중화

□ 금융시장이 호황일 때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분사 등이 적극 이루어졌지만,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는 고객들의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 금융기관(seller)과 금융소비자(buyer)간 위상 및 책임관계가 크게 변화

- 과거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투자상품판매 등에 있어 금융기관의 준수 의무가 강화

- 이에 따라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음

<표 2-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글로벌 트렌드

규제 강화 및 정부의 역할 제고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금융감독 및 정책당국의 시장 개입 수준이 한층 강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정책 및 규제 공조 강화 규제당국 역할 재조정, shadow financial system 보정,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 등 금융기관의 규제비용 상승 부담 가중
'Alpha to Beta' 시장으로 이동	Exposure 규제 및 위험회피성향의 강화로 고위험-고수익 Business Model 퇴조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금융상품& 서비스와 수수료 발생거래의 중요성 재조명 비용효율성 제고, 규모에 집중
디레버리징 (De-leveraging)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가속화 Economic capital model 채택
대형화 및 집중화	전략적 합병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대형화 및 집중화 정도 심화 (from Fragmentation to Consolidation) 안전자산 선호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seller)과 금융소비자(buyer)간 위상 및 책임관계의 변화: from Buyer Beware to Seller Beware Return to basics: 거래중심형(transaction based)에서 관계중심형(relationship based)으로 변화

2. 국내 금융환경 변화

가.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를 위한 글로벌 공동협력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실물경제의 회복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소지
 -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응한 G20체제와 FSB를 통한 글로벌 금융개혁, 중앙은행 간 양적완화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기반과 소비위축을 방지함으로써 실물경제를 견인
 - 한편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공조체계가 다시 강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일본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신흥국 또는 인접국 간 이해관계가 복

잡해지고 대립되는 양상

-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쟁 문제와 글로벌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대립 가능성 존재
- *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수급에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외채 증가 또는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나.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 상승

- 국내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기순환적 측면(grand business cycle)과 부채위험, 고령화 및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
 - 업종별 기업구조조정, 외화유동성 지원, 상시 위험평가체계,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 정책적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조기에 극복
 - 반면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가계부문의 부채축소(de-leverage), 주요 수출품에 대한 경쟁압력 확대 등에 따라 실물경제의 경기순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 단기적 요인에 비해 주요 업종의 경쟁력 및 글로벌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하방위험(downside risk)을 계속 점검할 필요
 - 선진경제의 부채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은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계속 상승해 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구조적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존재
 - * 가계부채 대책이나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충, 서민금융체계의 보완,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다. 금융중개기능의 위축과 정체성 문제 대두

- 금융산업은 새로운 기업의 발굴보다도 기존 기업의 단기자금 제공이나 우량기업(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위험관리 경영으로 인해 적극적·도전적 중개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은행권 및 자본시장은 주로 대기업 또는 우량 중견기업의 여신 및 회사채 발행이 지속되는 반면, 창업자금 또는 벤처자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나 민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특히 양대 보증제도와 정책자금의 운영체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체계로 운용됨에 따라 모험자본의 형성이나 장기투자를 통한 정책적 리더십도 미진한 상황
 - * 글로벌 위기 이후 유동성 중심의 기업회생에 초점을 둔 정책기조를 강화한 것에도 부분적으로 기인

□ 특히 금융산업의 중개기능 위축은 금융산업의 중장기 역할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위기로 인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bashing)가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
-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과 아울러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이슈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의 정체성이 약화
 - * 신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의 위상이 거의 소멸

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하락

□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위기 이후 감독 및 규제 정책의 강화, 공공성 요구의 확대, 경쟁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다시 악화

- 자본력 및 외화유동성 지표 등은 글로벌 금융개혁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기에 회복
- 반면 수익 환원 또는 공익활동 확대, 소외계층 배려 등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사후비용 확대가 불가피
- 특히 수수료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개선과 경쟁당국의 감시 강화 등은 구조적 위험과 맞물려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안전자산 선호와 장기금리의 하락에 따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민간부채의 상환 압력 등으로 금융산업의 중장기 침체가능성 대두

- 안전자산 선호는 외국인자금의 유입과 맞물려 장기금리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보험권 및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상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 민간의 부채상환 노력은 장기적으로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지연시킴으로써 중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소지
 - * 금융자산의 축적 지연은 금융의 글로벌화에도 부정적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
 - *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탈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부분적으로 기인

마. 외환시장의 취약성 잔존

-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유사시 외국인의 자금이탈 또는 급격한 환율조정 등에 따른 변동위험도 내재
 -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해외자금의 유입은 국가신용도 상승 및 외환시장의 단기유동성 개선에 기여
 - 반면 내국인의 해외차입이 확대되거나 유사시 외국인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초래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표시 외화차입이 증가하거나 비금융권의 역외차입이 증가하는 것은 유사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소지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및 전망

가. 국내 금융산업 현황

1) 은행

- 국내은행의 경우 성장성·수익성은 경기회복세 미약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13년 1/4분기에 2.0% 증가하여 '12년(3.2%), '11년(6.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이는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 기업의 낮은 매출액 증가 등으로 국내은행의 영업환경이 위축된데 주로 기인

□ **국내은행의 수익성도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3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12년 상반기(5.5조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었음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 및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3년 상반기 현재 각각 0.29% 및 3.78%로 해외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2> 수익성지표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상
당기순이익	13.3	15.0	7.7	6.9	9.3	11.8	8.7	2.7
총자산수익률(ROA) ¹⁾	1.11	1.10	0.48	0.39	0.54	0.68	0.47	0.29
자기자본수익률(ROE) ¹⁾	14.64	14.60	7.17	5.76	7.22	8.58	6.17	3.78
순이자마진	2.61	2.44	2.31	1.98	2.32	2.30	2.10	1.91

주: 1) 주요 해외은행('12년기준)의 ROA 및 ROE : 중국공상은행(1.76%, 30.55%), HSBC(0.77%, 13.67%)

자료: 금감원

□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됨**

- 자산건전성의 경우 '13년 들어 경기민감 업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여신 부실이 확대되면서 부실채권비율(6월말기준)이 1.73%로 '12년말(1.33%) 대비 상승하였으나 선진국 주요은행과 비교해 보면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
-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대비 무수익여신비율('13.2월기준)은 2.6%로 주요국 평균(1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자본적정성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큰 폭의 자기자본 확충 이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13.6월말기준)은 13.88%로 '13년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저비율(8%) 및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이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 기본자본(Tier 1)비율이 11% 수준으로 자본의 질도 양호하여 '13년말부터 바젤 Ⅲ 시행에 따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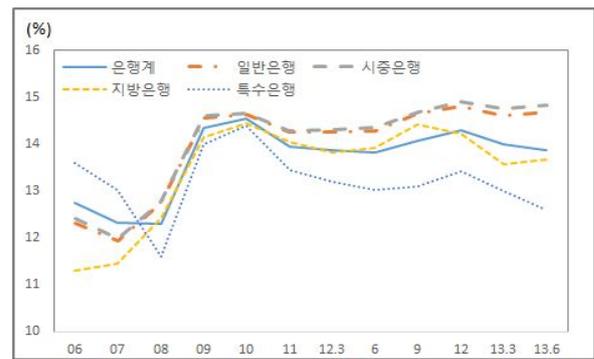
<표 2-3> 부실채권비율 현황

(단위: %)

구 분	'11말	'12말	'13.3말	'13.6말
부실채권 비율	1.36	1.33	1.46	1.73
(대기업)	1.20	1.30	1.41	2.41
(중소기업)	2.17	1.97	2.13	2.15
(가계)	0.60	0.69	0.78	0.74

자료: 금감원

[그림 2-1] 은행 BIS 비율



자료: 금감원

-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부 대출과 만기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에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은행권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비중을 '16년말까지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

- ← '13년 6월말현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7.3%,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17.4%로 '13년말 목표치 11.1%와 14.2%를 각각 상회

- 향후 목표수준(30%)을 달성하고 이행기간(잔여기간 3년)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으로 은행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전망

-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시에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신규연체 발생액도 늘어나고 있어 신용위험 상승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3년 1~8월중 증감액 기준으로 전체 원화대출 37.3조원의 56.5%인 21.1조원이 중소기업대출로 증가

←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의 영향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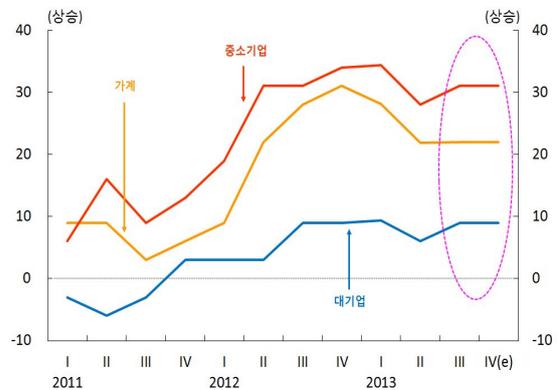
- '13년 8월말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40%로 '12년말(1.27%)보다 0.13%p 상승하였고
- 특히 '13년 8월말기준으로 선박건조업 연체율은 2.26%로 전월(1.86%) 대비 0.40%p, 그리고 해상운송업은 7.23%로 전월(7.09%) 대비 0.14%p 각각 상승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
- 국내은행 대출담당자가 인식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도 '13년 2/4분기 22에서 3/4분기에는 26으로 상승하였으며 4/4분기에도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표 2-4>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13년 8월말
기업대출	1.13	1.10	1.18	1.25
대기업	0.35	0.25	0.90	0.81
중소기업	1.30	1.34	1.27	1.40
가계대출	0.61	0.67	0.81	0.99
주택담보대출	0.52	0.61	0.74	0.89
가계신용대출 등	0.79	0.80	0.94	1.20
원화대출 계	0.90	0.89	1.00	1.13

자료: 금감원

[그림 2-2]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① 저축은행

-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관련 PF 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되는 상황

- 저축은행의 자산규모(2013년 6월말 현재 43.8조원)도 구조조정 이전(2010년 6월말 86.4조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 이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2013년 6월말 현재 29.0조원)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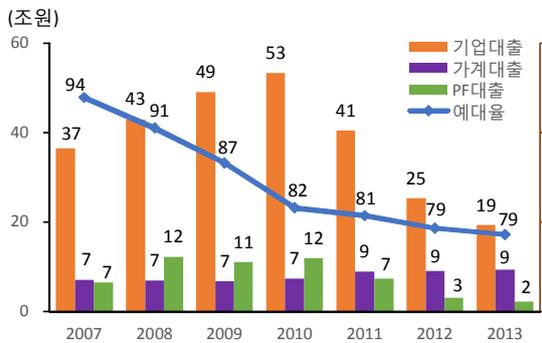
<표 2-5> 저축은행 연체율 현황

(단위: %)

	2009.6	2010.6	2011.6	2012.6	2013.6
연체율	15.8	12.8	15.8	21.6	21.5
기업	16.3	13.4	17.5	25.8	27.2
가계	14.5	10.7	9.3	11.3	11.4
PF대출 연체율	9.6	8.7	20.4	51.2	59.8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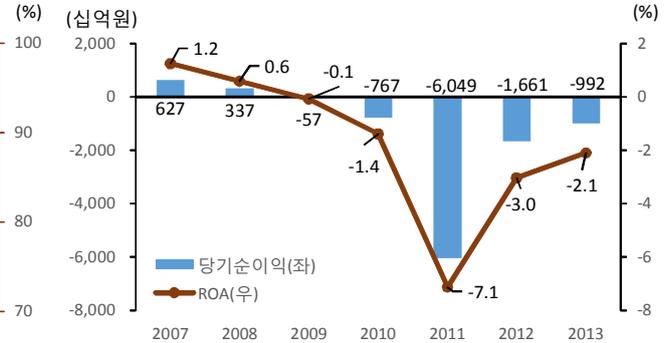
[그림 2-3] 저축은행 순여신1)



주: 1)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4] 저축은행 당기순이익과 ROA¹⁾



주: 1)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적기시정조치 기준 비율인 5%를 상회하며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수익성은 2011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되고 있어 향후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자본적정성은 구조조정 기간중(2011~2012년) 5%대로 하락한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2013년 6월말 현재 10%대로 상승

-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9,924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은 소폭 축소되었음

- 저축은행은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지역경제 및 중

소기업과의 관계형 금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성장 모델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영업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고유한 영업기반이었던 가계·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었음
- 2011년부터 진행된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및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자구적, 정책적 노력으로 저축은행의 누적된 부실이 크게 해소되며 경영건전성 악화는 점차 둔화되고 있음

② 상호금융

□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의 자본적정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은 악화되는 모습 노정

- 2013년 6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순자본비율(ROE)은 7.6%로 증가세
- 경기둔화 및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연체율(4.23%)과 고정이하여신비율(2.67%)이 증가하며 자산건전성은 악화
- 상호금융조합의 여신과 수신은 2013년 6월말에 각각 206.6조원, 295.5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증가(1.9%, 4.2%)하는 가운데 예대율은 69.9%로 전년 동기대비 1.6%p 하락

<표 2-6>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 및 예대율 추이

(단위 : 조원, %)

		2012				2013	
		1/4	2/4	3/4	4/4	1/4	2/4
총자산 ¹⁾	신용사업자산	305.2	313.3	321.4	325.6	324.9	328.3
	계	331.3	339.9	348.5	352.3	352.1	357.9
여신 ²⁾	상호금융대출금	188.0	190.2	191.6	193.4	192.3	194.6
	계	200.2	202.6	204.0	205.7	204.3	206.6
	수신	276.5	283.5	288.3	291.6	292.5	295.5
	예대율 ³⁾	72.4	71.5	70.8	70.5	69.8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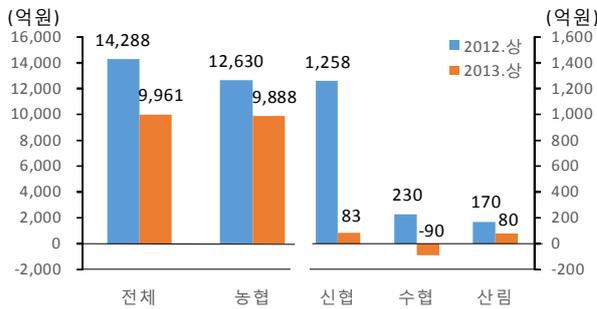
주 : 1) 총자산=신용사업자산+경제사업자산

2) 여신=상호금융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신협은 없음)

3) 예대율=총여신/수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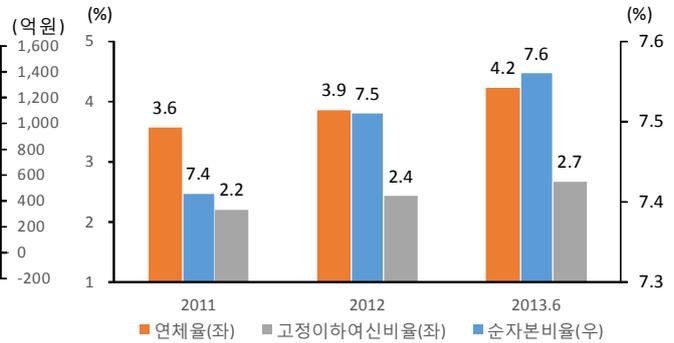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5] 상호금융조합별 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6]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자료: 금융감독원

□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도 저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건전성 개선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상반기 순이익은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및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한 9,961억원을 기록
- 조합별로는 신협, 농협, 산림조합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수협은 적자 시현

□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 상호금융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하고, 과도한 수신 증가를 제한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 연체 기준 범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범위, 예대율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규제

③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은 다소 개선된 모습이나 전반적인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은 경기 불안정성 지속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

- 2013년 6월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7.6%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하는 등 전업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은 전년동기대비 양호한 모습
- 신용카드사의 자산규모는 2013년 6월말 현재 84.3조원이며, 이중 75.5%를 차지하는 카드자산은 7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

<표 2-7> 신용카드사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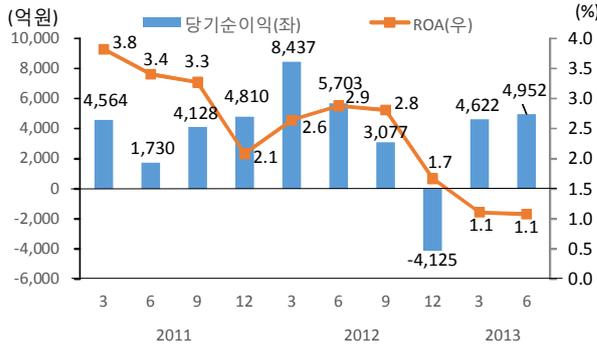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2012.3	2012.6	2012.9	212.12	2013.3	2013.6
당기순이익	843.7	570.3	307.7	-412.5	462.2	495.2
ROA	2.64	2.88	2.81	1.67	1.11	1.08
조정자기자본비율	26.2	26.9	26.7	25.7	26.8	27.6
고정이하여신비율	1.34	1.28	1.37	1.27	1.48	1.43

자료 : 금융감독원

- 전업카드사(우리카드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2/4분기에 4,952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하는 등 2012년 4/4분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작년의 주식매각이익(5,350억원) 효과 및 금년의 국민행복기금 부실채권 매각이익(911억원) 효과와 같은 비경상적인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3년 상반기의 당기순이익(8,063억원)은 전년동기(7,967억원)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 2013년 6월말 현재 8개 전업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은 2.03%를 기록하며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나, 실질연체율은 2.84%로 전기대비 0.12%p 증가
 - 신용판매(0.05%p) 및 카드대출(0.19%p)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카드채권 연체율은 1.82%로 전기대비 0.09%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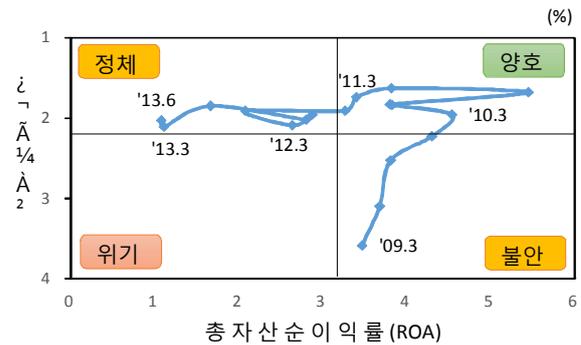
[그림 2-7]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



주: 순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2-8] 신용카드사 수익성 및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 카드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요 수익창출 요인인 가맹점수수료 경쟁보다는 카드회사내 비용절감 및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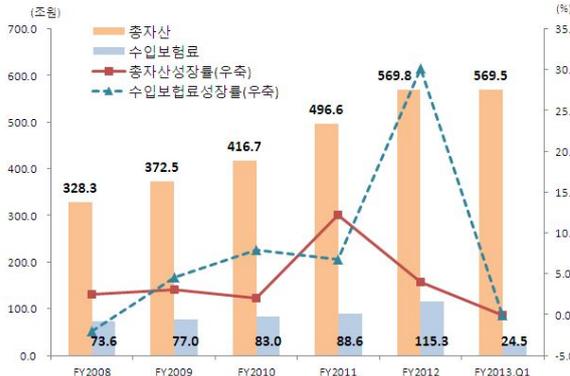
○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달금리 상승 가능성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조치 시행 등으로 금년 하반기의 전업카드사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④ 보험사

□ FY2013 1/4분기(6월말) 현재 생보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한 569.5조원, 손보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160.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FY2011 이후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저금리기조 및 경기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9] 생보사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



주 : 총자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10] 손보사 총자산 및 원수보험료



주 : 총자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들어 보험사의 수익성도 다소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생보사는 FY2010 이후 당기순이익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손보사의 경우 FY2011 이후 정체된 상황
- 최근 몇 년간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이차이익 축소 및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1] 생보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주 : ()는 총영업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12] 손보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주 : ()는 총영업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 FY2013 1/4분기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73.7%로 전분기 대비

3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9월 이후 보험사의 RBC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차역마진위험액 발생으로 인한 요구자본 상승 및 RBC제도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최근의 RBC비율 하락은 미국 출구전략 가능성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대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일부 보험사의 경우 RBC비율이 150%에 근접 또는 소폭 하회하는 등 다소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요구됨

[그림 2-13]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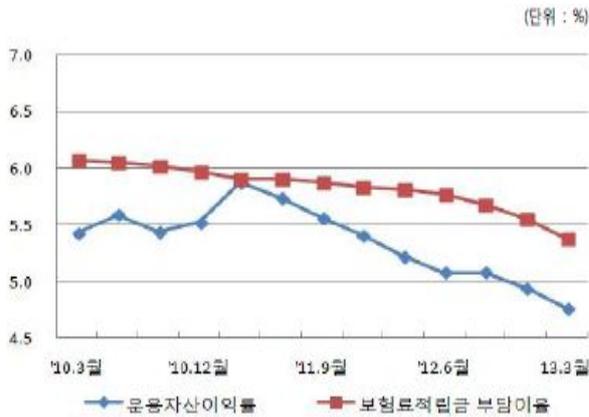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최근 저금리기조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하에서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차역마진 부담이 확대될 우려
 - 생보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FY2008 이후 운용자산이익률과 부담이율간의 격차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저금리의 영향으로 FY2010 4분기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
 - 손보사의 경우도 FY2012 기준 보험료적립금의 부담이율은 4.37%인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은 4.36%로 보험료 적립금의 부담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거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이차

역마진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성,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미국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거나 단행될 경우 금리상승으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및 이차역마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14] 생보사 부담이율 및 운용자산수익률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2-8> 손보사 부담이율 및 운용자산수익률

구 분	FY2012		
	적립금 부담이율 (A)	운용자산 이익률 (B)	차이 (B-A)
14개사 평균	4.37	4.36	Δ0.01

자료 : 예금보험공사

□ 저금리기조 등에 따른 이차역마진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증대되면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 상승할 우려

○ 이와 같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행태는 외부충격 등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재현 시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2-15] 생보사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회사채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16] 손보사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회사채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보험사의 대출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출채권 규모가 두자릿 수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국내 금융산업 전망

-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글로벌 차원의 협조체계 약화(dis-integration)와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조정(structural shift)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

- 글로벌 협조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동향과 주력업종 수출 추이에 따라 대외적 금융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완화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글로벌 자금유출입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

- *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지속될 수 있으나 현재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필요

- 특히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저금리-저수익(3저 현상)과 고부채-고위험-고령화(3고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금융산업은 당분간 저성장과 저금리, 저수익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고부채 및 고위험, 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해결해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

- 또한 국내 금융산업은 구조적인 성과 약화에 대비할 필요

- 이자수익 및 수수료 수익은 금리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와 신규 금융서비스 창출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성과 약화에 대비한 완충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경영효율화, 자본확충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의 경우 자금의 단기화와 안전자산 선호, 기업금융의 위축에 대비한 필요**

- 장기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 **국채금리의 경우 외국인자금의 움직임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금융기관의 수익성 하락과 기업부문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계층 등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

□ **앞으로 국내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건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 선순환 구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나갈 필요
-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와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신금융서비스 확충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모색할 필요
- 특히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표 2-9> 향후 5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국가재정의 건전화 기초 연기금 등 공공 금융자산의 축적 포괄적인 정책금융 및 재정정책 수단	가계부채 위험 상존 일부 기업의 부실 확대 우려 디레버리지로 금융산업의 성장성 둔화 저금리에 따른 마진 위축	양적완화의 지속 가능성 외국인자금의 유입 확대 (글로벌화에 유리) 저금리로 인해 부채 구조조정에 효과적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자산 축적 유인 증대	저금리 기초의 장기화 중국 및 일본계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내수기반 약화에 따른 서민금융 취약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기업금융 약화

제3장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현황

1. 우체국금융의 개관

가. 우체국금융의 연혁

- 우체국예금제도는 186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각국으로 전파됨
 - 초기의 우체국예금제도는 빈곤층에 대해 저축수단을 제공한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산업혁명 직후 금융시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황과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세한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였음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기관에 의한 저축제도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도입 당시부터 최고 예입금액의 제한이 있었음
 - 초기에는 1인 1계좌로 연간 예입금액은 30파운드, 원금은 150파운드, 원리금 합계 200파운드의 엄격한 제한이 있었음
 - 또한 체신예금과 신탁저축은행의 양쪽 모두에 계좌를 갖는 것도 불허되었음
 - 그러나 개인자산의 축적, 저축증대의 필요, 여타 금융기관의 발달 등에 따라 예입금액의 제한은 점차 완화되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금융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통칭
 - 우체국금융을 도입한 취지는, 도·농간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 또한 우체국금융은 우정사업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도 있음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의 효시는 1905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 취급이라고 할 수 있음**

- 1880년에 한국 주재 일본 우편국에서 우편환 및 우편저금사무를 개시하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침략정책을 수행하고 일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
- 1905년 통신권이 이양된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체신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기를 거쳐 1910년 우편저금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
- 해방 후 1952년 「우편저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체국의 예금업무 취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1977년 3월 1일에는 누적되는 적자 등으로 인해 우체국의 금융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음**

- 당시 우체국예금은 예금의 보편화 및 저축성향 고취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용수익보다 높은 조달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적자가 누적되었음
- 우체국은 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무를 농협으로 이관하고 고유업무인 우편업무와 전기통신업무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음

□ **1983년 통신공사의 분리 후 우체국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우정사업의 누적적자가 증가하자 이를 금융사업 이익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우체국예금 및 보험 업무 재개**

-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체국은 1983년부터 예금과 보험 업무를 다시 취급하게 되었음
- 이는 우체국의 주요업무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이 1982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유휴 인력 및 시설이 발생하는데 대한 배려에 크게 기인하였음
- 금융사업을 통해 우정사업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목적도 있었음

□ **우체국금융은 1993년에 한국은행의 금융공동전산망에 가입하여 타행환 및 지로**

업무의 본격적인 취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0년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여 독립 경영의 기틀 마련

<표 3-1> 우체국금융의 연혁

시 기	내 용
1905. 7	우체국에서 우정 부대사업으로 예금 취급 개시
1929. 5	보험사업 개시
1952. 12	우편저금법 및 국민생명보험법 제정
1976. 12	우편저금법 및 국민생명보험법 폐지
1977. 3	예금·보험업무 및 종사원을 농협에 이관
1982. 12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1)
1983. 7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예금 및 보험업무 재개
1993. 6	한국은행의 금융공동전산망에 가입
2000. 7	우정사업본부 출범

주: 1) 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자료 : 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나. 우체국금융의 역할 및 의의

□ 우체국금융은 예금사업(1905) 및 보험사업(1929)을 개시한 후 100여년 동안 국민재산형성과 정부재정지원 등 국가적 목적달성에 기여

- 우체국 금융자금을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조달금리 이하로 활용·운용함에 따라 부실규모 증가로 지난 1977년 농협으로 이관
- 1982년 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공사로 분리된 후 우편사업의 적자보전과 우체국 유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83년 우체국 금융사업이 재개
- 우체국금융은 우편적자보전과 유희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란 국가적 목적달성을 '의무'로 하고, 여기에 적정한 혜택과 규제를 가미한 "제한적 금융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각종 세금 및 예금보험료 면제와 금융감독원 감독 제외가 혜택으로 주어진 반면, 이에 상응하여 대출, 신탁, 신용카드 제한 등 자금운용상의 각종 규제와 보험가입한도(4,000만원 이하) 설정 등이 제약으로 부과

-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2,769개(12'말) 우체국을 통해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수납, 해외송금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카드발급서비스 등을 제공**
 - 전국에 설치된 1,540개(12'말) 365자동화 코너를 통해 연중무휴로 현금 입·출금 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제공
- **우체국은 특히 민영금융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민영금융기관에서 수납비용 증가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
- **우체국금융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을 포함함**
 - 우체국의 우편환 취급은 격지자간의 송금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편대체는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은 금융의 대중화와 국민의 저축의식 함양을 위해 우체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예금상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됨
 -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이보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가입자에 따라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장내용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구분됨
-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해서는 <표 3-2>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각 업무별로 기본법률과 시행령 및 세칙 등이 제정되어 있음**

<표 3-2> 우체국금융의 취급업무 및 근거 법령

취급업무	법령명	내용
우편환	-우편환법 및 동법 시행령 -우편환업무취급세칙	-우편환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우편대체	-우편대체법 및 동법 시행규칙 -만국우편연합의 우편대체약정	-우편대체 시행에 관한 규정
우체국예금 및 보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우체국예금보상지급세칙 -우체국신보험보상지급세칙	-우체국예금·보험의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우체국예금 및 체신보험 취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절차 규정
환매조건부채권	-우체국관서의 국채·공채매도 등에 관한 규칙	-국채·공채 등의 매도에 관한 절차 규정

□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여권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민생활정보 인프라로서 우체국을 활용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지역에 대한 우체국의 보편적서비스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우체국 유희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우편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저렴한 우편서비스 이용 및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 우체국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에 비해 농어촌지역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

○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12년말)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06.6말)의 점포만 운영

□ 우체국보험도 농어촌 주민과 도서벽지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소액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익을 국민에게 환원

- 우체국보험은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무배당 상품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금을 주주에 귀속
- **우체국금융은 현재 구축된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외지역에도 제공함으로써 민영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
 - 업무제휴를 통해 민영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국적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금융서비스와 함께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 * **2013년 6월 말 현재 221개 기관과 업무를 제휴하여 은행, 증권, 신용카드 등 18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
 - 또한 민영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고 있으나, 우체국은 모든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납함으로써 민영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 * **우체국 공과금 창구 수납액 비율: 85.1%**
 -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지 않은 민영금융기관 입·출금, 해외송금, 신용카드, 증권계좌 개설업무 등을 우체국에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민영 금융기관 역할을 보완
- **농어촌 등 금융독과점 지역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편익을 향상**
- **우체국금융 자금을 공자기금에 위탁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및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
 - 2011년 말 현재 우체국 운용자금 중 1,545억 원을 공자기금에 위탁
 - 2004~2027년까지 약 1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할 예정

<표 3-3> 연도별 공자기금예탁 현황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9,427	114,615	103,684	84,549	49,250	29,698	14,304	13,123	1,545

주 : 평잔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표 3-4> 연도별 공적자금상환금 출연금모

(단위 : 억원)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12	'13~'27 (예정)	계
예금	291	304	304	313	425	380	402	445	561	3,425	10,747	14,172
보험	127	131	138	123	126	137	142	215	205	1,344	2,301	3,645
계	418	435	442	436	551	517	544	660	766	4,769	13,048	17,817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매입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

<표 3-5> 연도별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단위: 억원)

'98	'99	'00	'01	'03	'05	'06	'07	'08	'09	'10	'11	'12	계
								1,000	681	690	1,000	634	
								*우특	*우특	*우특	*우특	*우특	
980	2,008	1,516	201	1,483	430	379	351	252	400	300	300	0	11,363
								*예특	*예특	*예특	*예특	*예특	
								748	281	390	700	634	

자료: 우정사업본부

- 남북한 통일 이후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한 북한지역에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우체국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다. 우리나라 우체국예금의 특징

- 우리나라의 우체국예금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주체인 공적 금융사업으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의 임용 및 근무조건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1960년대에 이미 우체국예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우체국예금을 민영화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우체국예금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하여 공사화
- 우체국예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저축유도가 주목적이므로 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걸친 우체국망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서민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보완 및 경쟁하는 기능을 수행
 - 우체국예금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 및 형평성의 원칙 하에 전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저축상품을 제공
 - 또한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정보통신업체 지원 등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
- 우체국예금 인력 및 조직은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미래부의 조직으로서 복합적 겸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 점포 면에서 우체국예금 영업창구는 우체국 창구와 동일 점포 내에 위치하면서 금융과 우편업무를 동시에 취급
 - 우체국장은 금융업무와 우편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며, 직원의 경우도 일선 조직에서는 금융업무와 우편업무 조직이 구분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후선업무에 있어서는 겸직하고 있는 직원도 존재
 - 금융업무에 있어서도 은행의 예금업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를 점포 내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은 정부기관으로서 예금보험, 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리금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므로 예금보험료 납부 또한 면제, 또한 우체국예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³⁸⁾

2. 우체국예금의 조직구조 및 현황

가. 우체국예금의 조직

- 우체국예금을 관장하는 부서는 우정사업본부 내 예금사업단으로서, 6팀 79명으로 구성
 -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사업단, 보험사업단 및 우편사업단의 사업부와 경영기획실로 구성
 - 예금사업단은 금융총괄과, 준법위험관리팀, 예금자금과, 예금사업과, 예금증권운용팀, 예금대체투자팀으로 구성

[그림 3-1] 예금사업단 조직도(2012년 말)



자료: 우정사업본부

38) 다만, 예금보험료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면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적용되지 않은 연례적인 감사원 감사(연1회)를 수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음

[그림 3-2] 우정사업본부 조직도(2012년 말)



자료: 우정사업본부

나. 우체국예금 현황

1) 우체국예금 자금조달

□ 우체국예금은 환매조건부채권과 국고예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치식과 요구불 예금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우체국예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치식예금은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 말 49.2조원, 2013년 10월말 현재 48.0조원을 기록함

○ 요구불예금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말 8.7조원, 2013년 10월말 9.5조원으로 200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환매조건부채권과 국고예금은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임

<표 3-6> 우체국예금의 자금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0
요구불1)	92,543	90,872	95,258	77,747	80,370	86,875	95,454
거치식	287,511	349,304	307,767	381,625	503,389	492,348	480,264
적립식	15,391	15,431	16,806	16,752	15,229	15,775	19,291
환매조건부 채권	12,701	10,569	14,092	10,040	8,349	7,916	8,883
국고예금	6,220	5,500	7,685	17,585	9,937	1,793	5,857
계	414,366	471,675	441,607	503,749	617,273	604,706	609,750

주 : 1) 환,대체,자기앞수표 포함

자료: 우정사업본부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우체국예금이 급증하였으나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인한 가계부실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됨**

- 우체국예금은 1998년 전년 말 대비 82.1% 증가하였으나 2000년 47.9%, 2005년 9.7%, 2010년에는 16.2%로 증가세가 둔화됨
- 일반은행의 예금증가율은 1998년 24.9%, 2000년 23.4%, 2005년 4.1%, 2010년 16.3%를 기록
- 우체국예금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2% 내외였던 총 예수금(우체국예금+일반 및 특수은행 예금+상호금융 예수금) 대비 우체국예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를 넘어섰으며, 2010년 말 4.3%에 이름

<표 3-7> 우체국 및 금융기관 수신 추이

(단위 : 십억원, %)

연도	우체국예금	일반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	계(B)	(A)/(B)
1998	10,637 (82.1)	204,598 (24.9)	47,196 (37.0)	71,100 (21.5)	333,531 (27.0)	3.2
1999	14,512 (36.4)	264,771 (29.4)	58,640 (24.2)	75,719 (6.5)	413,642 (24.0)	3.5
2000	21,457 (47.9)	326,647 (23.4)	78,014 (33.0)	84,081 (11.0)	510,199 (23.3)	4.2
2001	25,270 (17.8)	364,906 (11.7)	90,725 (16.3)	91,523 (8.9)	572,424 (12.2)	4.4
2002	28,516 (12.8)	405,868 (11.2)	106,552 (17.4)	101,656 (11.1)	642,591 (12.3)	4.4
2003	30,101 (5.6)	432,697 (6.6)	115,401 (8.3)	111,195 (9.4)	689,394 (7.3)	4.4
2004	32,069 (6.5)	417,771 (-3.4)	122,956 (6.5)	122,423 (10.1)	695,218 (0.8)	4.6
2005	35,182 (9.7)	434,705 (4.1)	127,241 (3.5)	136,527 (11.5)	733,655 (5.5)	4.8
2006	37,971 (7.9)	456,554 (5.0)	136,167 (7.0)	154,058 (12.8)	784,750 (7.0)	4.8
2007	37,923 (-0.1)	455,929 (-0.1)	137,243 (0.8)	156,488 (1.6)	787,582 (0.4)	4.8
2008	45,305 (19.5)	519,424 (13.9)	155,780 (13.5)	170,255 (8.8)	890,765 (13.1)	5.1
2009	41,883 (-7.6)	590,934 (13.8)	160,339 (2.9)	193,028 (13.4)	986,184 (10.7)	4.2
2010	48,659 (16.2)	687,428 (16.3)	186,462 (16.3)	212,452 (10.1)	1,135,001 (15.1)	4.3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체국예금이 급속히 증가한 주요 원인은 금융상품의 안정성이 증시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과는 달리 우체국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정기에금의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정기에금을 제외한 보통·저축·환매채의 경우 그 규모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증가세가 미미한 실정

○ 정기에금은 1997년 말 2.5조원에서 1998년 말 약 7.4조원으로 1년 동안 약 5조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년대비 48.3%, 2005년에는 11.6%, 2011년

에는 31.9%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보통예금은 2010년 전년대비 67.0%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축예금 역시 낮은 증가세를 보임

<표 3-8>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연월말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환매채
1995	167	2,679	1,380	1,552
1996	192	2,537	2,032	1,521
1997	194	2,354	2,482	2,033
1998	438	2,042	7,353	2,083
1999	376	2,562	8,436	1,700
2000	480	3,551	12,508	2,334
2001	506	4,288	14,983	4,217
2002	582	4,984	18,545	2,290
2003	711	5,270	19,347	3,125
2004	732	5,488	21,849	4,114
2005	806	5,726	24,382	1,909
2006	1,419	5,604	27,543	1,698
2007	1,277	5,119	28,751	1,270
2008	2,236	4,895	34,930	1,057
2009	1,663	5,499	30,777	1,409
2010	548	5,973	38,162	1,004
2011	535	6,382	50,339	835
2012	556	6,781	49,235	792
2013.10	547	7,446	48,026	888

자료: 정보통신부, 『체신예금조사통계』 및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통계연보』

2) 우체국예금 점포망

- 우체국이 우체국예금 서비스를 위한 창구가 됨으로써 우체국예금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1,199개(출장소 포함), 상호금융(신협 및 농·수·산림조합)의 2,339개

보다 많음

-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4.4%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의 점포만을 운영

<표 3-9> 우체국 및 은행 점포망 분포 현황

구 분	우체국		일반은행	
	점포수(개)	점유율(%)	점포수(개)	점유율(%)
도시 지역	1,263	45.6	5,565	93.2
읍면 지역	1,506	54.4	404	6.8
계	2,769	100.0	5,969	100.0

주: 우체국(2012년말 현재)은 집중국, 우편취급소 등을 제외한 금융업무 취급관서이며, 은행은 2006년 6월말 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 시도별 예금구성비를 비교하면, 우체국은 예금수취에 있어 7대광역시와 기타 지역과의 비중이 비슷함

- 우체국 예금의 지역별 수취비중은 7대광역시 47.8%, 기타지역은 52.2%(시지역 28.9%, 군·구지역 23.2%)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 예금은행의 7대 광역시 예금 비중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높은 71.8%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산림협과 신협의 경우 각각 26.4%, 43.3%로서 상호금융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표 3-10> 시도별 예금 구성비 현황

(단위 : %)

	우체국1) (2012년말)	예금은행 (2012년말)	상호금융(FY09)	
			신협	농·수·산림
서울	21.6	54.1	13.3	9.6
부산	8.9	5.8	5.3	2.9
대구	5.5	3.5	5.1	3.7
인천	2.6	3.0	6.6	3.3
광주	3.3	1.7	5.7	2.3
대전	4.1	2.3	5.6	2.4
울산	1.8	1.4	1.7	2.2
7대 광역시	47.8	71.8	43.3	26.4
경기	11.4	13.9	14.3	22.4
강원	4.6	1.3	4.1	4.4
충북	3.3	1.3	7.4	3.8
충남	4.7	1.7	7.0	8.0
전북	6.8	1.7	6.9	4.8
전남	6.2	1.6	4.8	7.4
경북	7.3	2.3	4.4	10.3
경남	6.8	3.5	5.3	10.5
제주	0.8	0.7	2.5	2.1
세종	0.2	0.1	-	-
계	100.0 (58.9조원)	100.0 (990.3조원)	100.0 (34.8조원)	100.0 (193.0조원)

주 : 1) 환매조건부채권, 우편환,우편대체, 자기앞수표 제외

2)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자료 :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금융감독원「중소서민금융통계」

<표 3-11> 우체국예금 지역별 분포

(단위: 억원)

광역시 이상	시지역	구,군지역	총합계
281,833 (47.8%)	170,402 (28.9%)	136,802 (23.2%)	589,036

주 : 1) 2012년 말 기준

2) 환매조건부채권, 우편환,우편대체, 자기앞수표 제외

3)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자료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예금은 영업망의 수적 측면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

위를 접하면서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

- 그러나 CD, ATM 등의 자동화 기기의 설치 등을 고려할 경우 우체국 이용의 편리성이 은행 등에 비해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우체국예금은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점포당 예금액이 낮음

- 우체국예금의 점포당 예금액은 2012년 말 215억 원으로 일반은행 1,384억 원, 상호금융 1,247억 원 등에 비해 매우 낮음
- 이는 우체국이 읍면단위에 집중 분포(54.4%)하고 있고 약 200개 총괄우체국 이외에는 은행의 출장소 규모의 소규모 우체국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우체국의 주 업무가 우편업무인 것에도 일부 기인함

<표 3-12> 생산성 지표 비교

(단위 : 억원)

	우체국예금	일반은행	상호금융
점포당 예금액	215	1,384	1,247

주: 1) 2012년말 기준

2) 점포당 예금액 = 원화예금/점포수

3) 상호금융(신협, 농·수·산림조합)

자료 : 우체국예금 경영실적(2012), 금융감독원

3) 우체국예금의 이용자 현황

□ 우체국예금의 경우 예금은행에 비해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음

- 우체국예금 계좌수의 개인예금 비중은 2012년 말 99.0%에 이르고 있으며 예금 잔액 기준으로는 83.0%에 이룸
- 예금은행의 경우 개인예금액 비중은 47.5%로 우체국예금에 비해 낮음

<표 3-13> 우체국예금의 예금주별 예금 비중

(단위: 천건, 억원)

구분	개인	일반법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합계
계좌수	21,161 (99.0)	164 (0.8)	47 (0.2)	2 (0.01)	21,374
잔액(평균)	490,072 (83.0)	56,831 (9.6)	12,100 (2.0)	31,281 (5.3)	590,284

주: 1) 2012년말 기준

2) ()는 비중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표 3-14> 우체국예금과 예금은행의 예금주별 비중 비교

(단위 : %)

	개인	법인 및 공공기관
우체국예금	83.0	17.0
예금은행	47.5	52.5

주 : 2012년말 예금기준

자료 :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우체국예금은 서민계층에게 소액 저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입계좌당 평균 예금액이 작은 편임

○ 우체국예금 가입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2012년 말 기준 약 300만원 수준에 불과

□ 가입계좌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체국예금 이용자들 대부분이 거래적 필요에 따라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면에서는 정기예금의 규모가 압도적임

○ 전체 우체국예금 가입계좌 가운데 저축예금의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84.8%에 이르고 있으며, 기능이 유사한 보통예금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이 86.3%에 이른 반면, 정기예금 이용자는 전체의 8.8%에 불과

○ 이는 우체국을 통해 일시적인 거래성 자금을 예탁하거나 송금, 이체 등을 위해 우체국예금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음을 시사

○ 전체 우체국예금액 가운데 정기예금의 비중은 1997년 말 32%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그 비중이 73.0%, 2012년에는 82.5%로 증가³⁹⁾

<표 3-15>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규모 및 계좌 수

(단위 : 좌, 명, 억원, %)

	유지계좌수	유지고객수	말잔
보통예금	301,195 (1.5)	212,234 (1.3)	5,565 (0.9)
저축예금	16,981,338 (84.8)	13,242,921 (80.2)	67,814 (11.4)
MMDA	107,986 (0.5)	103,980 (0.6)	5,742 (1.0)
정기예금	1,769,196 (8.8)	969,884 (5.9)	492,348 (82.5)
정기적금	134,397 (0.7)	124,228 (0.8)	3,480 (0.6)
근로우대	1,845 (0.01)	1,843 (0.01)	3 (0.001)
가계우대	168,123 (0.8)	150,268 (0.9)	5,235 (0.9)
학생적금	198,400 (1.0)	197,735 (1.2)	1,653 (0.3)
국고예금	8,992 (0.04)	2,844 (0.02)	1,793 (0.3)
주택저축	55,768 (0.3)	42,645 (0.3)	5,404 (0.9)
환매채권	302,757 (1.5)	1,462,817 (8.9)	7,916 (1.3)
계	20,029,997	16,511,399	596,952

주 : 1) 2012년말 기준

2) ()는 비중임

자료 : 우정사업본부

39) 이는 우체국예금이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급여이체 계좌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요구불예금의 확대가 어려웠고,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우체국금융 이용자들의 정기예금 선호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기인

4)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에서는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우체국금융은 소외계층에 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저축수단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귀착됨

□ 우체국예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예금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음

- 자금의 운용 대상은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일반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체신예금의 80%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이 가능함
-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함

□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과는 달리 위험이 수반되는 일반대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대출심사,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여신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다만, 우체국대체법에 따라 우체국예금 가입자에 대해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는 있음.

□ 우체국예금의 일부 자금은 공적인 목적에 운용하는 정책금융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정보통신업체 지원, 건설·주택 경기활성화 지원 등 공공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데 운용할 수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우체국금융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출연 등에 수신예금 및 보험적립금을 운용

<표 3-16> 자금운용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7년 운용금액	2012년 운용금액
금융기관예탁	25.1	44.8
국·공채 등 매입	8.6	12.7
가계수표대월	0.4	0.4
지방채신청 운용	0.7	2.3
공공자금관리기금	3.9	
기 타	0.5	
조달 계	39.1	60.2

자료 : 정보통신부의 국회제출자료

□ 우체국예금의 자산운용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부가평가 자산(국내채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임

○ 2012년 우체국예금의 자산운용규모 총 60.3조 원 중 장부가평가자산은 46.3조 원으로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채권과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채권, 정기예금, 표지어음, RP 등 금융상품에 투자함

○ 시가평가자산은 14.0조원으로 전체 자산운용규모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채권형 간접투자자산, 주식 등에 투자함

□ 2012년 우체국예금은 대출업무 제한, 공자기금예탁, 콜시장 참여제한 등 자금운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0%이상 증가한 운용 수익을 달성

○ 2012년 우체국예금 자금운용수익은 3조 774억원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하

였으며, 수익률 역시 2011년 3.86%에서 2012년 5.10%로 1.24%p 증가함

<표 3-17> 우체국예금 상품별 운용성과

(단위 : 억원, %)

구분	평잔	운용수익	수익률	
장부가평가자산	463,046	21,683	4.68	
공자기금				
채권	국내채권	92,688	5,759	6.21
	국채	281	14	4.99
	특수채	11,890	645	5.42
	회사채	54,290	2,461	4.53
	기타	26,226	2,640	10.07
	해외채권	2,137	130	6.07
	소계	94,826	5,889	6.21
단기자금	10,758	385	3.58	
금융상품	정기예금	53,543	2,258	4.22
	표지어음			
	기타금융상품	276,127	11,939	4.32
	소계	329,670	14,197	4.31
대출금	4,773	243	5.10	
청 운용자금	23,020	968	4.20	
시가평가자산	139,874	9,091	6.50	
국내주식	22,399	2,045	9.13	
국내채권	직접투자	12,873	483	3.75
	국채	99	4	4.43
	특수채	2,190	109	4.96
	회사채	6,892	371	5.38
	기타	3,692	-1	-0.03
	간접투자	77,764	4,017	5.17
	채권형	77,764	4,017	5.17
	기타			
	소계	90,638	4,500	4.96
해외주식	5,717	861	15.06	
해외채권	직접투자	4,802	323	6.73
	간접투자	1,627	275	16.87
	소계	6,429	598	9.30
대체투자	국내	9,992	953	9.54
	해외	4,699	134	2.85
	소계	14,691	1,087	7.40
합계	602,920	30,774	5.10	

주 : 전체수익률 산정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12년 : 3,745억원)

자료 : 우체국예금 경영실적(2012)

제4장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관련 주요 이슈

1.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상 우위 여부

가. 수신경쟁력 측면

1) 국영금융의 예금전액보장으로 인한 안전성 측면

□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원이며 비보호금융상품도 다수인데 반해 우체국의 모든 수신은 원리금 전액이 보호

○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책임진다)에 의거 정부가 원리금을 전액 보장

<표 4-1> 금융기관별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구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우체국	수시입출식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국민연금안심통장 등 적립식예금: 자유적금, 정기적금,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등 거치식 예금: 정기예금, 연금예금 등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고예금	
은행 (농·수협중앙회, 외은지점 포함)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적립식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외화예금(예금자별 5천만원 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실적배당형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등 주택청약저축
투자매매 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투자중개업자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변액보험 제외) 원금 보전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등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CP) 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 채권 등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

자료: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2012), 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2012)

2)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 점포망 이용

□ 우체국이 우체국예금 서비스를 위한 창구가 됨으로써 우체국예금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영업망의 수적 측면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
- 현재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말 2,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로 절대적 우위

- 우체국과 은행의 점포망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체국은 읍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면 지역에 6.8%의 점포만을 운영

<표 4-2> 우체국 및 예금은행·비은행 점포수 비교

(단위: 개)

	2000	2005	2010	2012
우체국예금				2,769
일반은행	4,805	5,161	5,623	5,767
국민은행	600	1,104	1,179	1,199
상호저축은행	265	264	344	342
새마을금고	1,817	1,612	962	950
농업협동조합	1,380	1,288	1,168	1,164
수산업협동조합	86	86	90	90
신용협동조합	1,317	1,051	1,480	1,420

주: 1) 국민은행의 경우, 2001년에 합병

2) 상호저축은행(전 상호신용금고)은 본점과 지점의 합계

3) 농협은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조합(본소)이며, 축협과 인삼을 포함

4) 수협은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조합(본소) 기준

5) 신협은 조합수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새마을금고 통계

<표 4-3> 우체국 및 은행 점포망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인구비율	우체국		일반은행		농협	
		점포수	점유율	점포수	점유율	점포수	점유율
도시 지역	79.7	1,263	45.6	5,565	93.2		
읍면 지역	20.3	1,506	54.4	404	6.8		
계	100	2,769	100	5,969	100	1,164	100

주: 우체국(2012년말 현재)은 집중국, 우편취급소 등을 제외한 금융업무 취급관서이며, 은행은 2006년 6월말 현재

자료: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예금은 예금의 안정성과 전국적 점포망의 수신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크게 성장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성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은행예금 및 상호금융 예수금과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
- 외환위기 이전에는 2% 내외였던 총 예수금(우체국예금+일반 및 특수은행 예금+상호금융 예수금) 대비 우체국예금의 비율이 2012년말 현재 4.7%에 이릅니다

<표 4-4> 우체국예금 및 예금은행·비은행 수신고 추이(1)

(단위 : 조원, %)

	1997	1998	1999	...	2007	2008	2009	...	2010	2011	2012	'97년 대비
우체국예금 (A)	5.0	10.0	26.0		39.2	40.9	44.4		50.4	56.4	60.3	55.3
증가율		100.0	160.0		2.1	4.3	8.6		13.5	11.9	6.9	1,106.0
일반은행 예금	163.8	204.6	264.8		455.9	519.4	590.9		687.4	736.2	756.2	592.4
증가율		24.9	29.4		-0.1	13.9	13.8		16.3	7.1	2.7	361.8
특수은행 예금	34.4	47.2	58.6		137.2	155.8	160.3		186.5	211.6	234.1	199.7
증가율		37.0	24.2		0.8	13.5	2.9		16.3	13.5	10.6	579.8
상호금융 예수금	58.5	71.1	75.7		156.5	170.3	193.0		212.5	226.5	242.7	184.2
증가율		21.5	6.5		1.6	8.8	13.4		10.1	6.6	7.2	314.8
계 (B)	261.7	332.9	425.1		788.9	886.4	988.7		1,136.7	1,230.7	1,293.7	1,031.6
증가율		27.2	27.7		0.5	12.4	11.5		15.0	8.3	5.1	394.2
(A)/(B)x100	1.9	3.0	6.1		5.0	4.6	4.5		4.4	4.6	4.7	

주 : 1) 예수금(외화예수금 포함), 자체발행어음, 표지어음매출, CMA, 수익증권, 보험계약준비금 등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표 4-5> 우체국예금 및 예금은행·비은행 수신고 추이(2)

(단위 : 조원, %)

	우체국 예금(A)	일반은행 예금	특수은행 예금	상호금융 예금	계(B)	(A)/(B) x100
1997	5.0	163.8	34.4	58.5	261.7	1.9
1998	10.0	204.6	47.2	71.1	332.9	3.0
1999	26.0	264.8	58.6	75.7	425.1	6.1
1997~1999 평균증가율(%)	128.0	27.2	30.5	13.8	27.5	
2007	39.2	455.9	137.2	156.5	788.9	5.0
2008	40.9	519.4	155.8	170.3	886.4	4.6
2009	44.4	590.9	160.3	193.0	988.7	4.5
2007~2009 평균증가율(%)	6.4	13.8	8.1	11.1	12.0	
2010	50.4	687.4	186.5	212.5	1,136.7	4.4
2011	56.4	736.2	211.6	226.5	1,230.7	4.6
2012	60.3	756.2	234.1	242.7	1,293.3	4.7
2010~2012 평균증가율(%)	9.4	4.9	12.1	6.9	6.7	
1997~2012 평균증가율(%)	18.1	10.7	13.6	9.9	11.2	

주 : 1) 예수금(외화예수금 포함), 자체발행어음, 표지어음매출, CMA, 수익증권, 보험계약준비금 등

2)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 우체국예금 증가의 대부분은 정기에금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정기에금을 제외한 여타 예금의 경우 그 규모가 오히려 하락하였는데 이는 우체국예금의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때문으로 판단되며 대출이 안되어 급여계좌 유지가 어려운 것도 일부 작용

○ 정기에금은 1997년말의 2조 5천억원에서 1998년말에는 약 7조 4천억원으로 1년 동안 5조원이 증가

- 외환위기 이후에도 정기예금은 지속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49조원으로 우체국예금의 85.8%를 차지
- 거래성 예금인 보통예금, 저축예금의 합계는 2012년말 현재 약 7조원 규모로 우체국예금의 12.8%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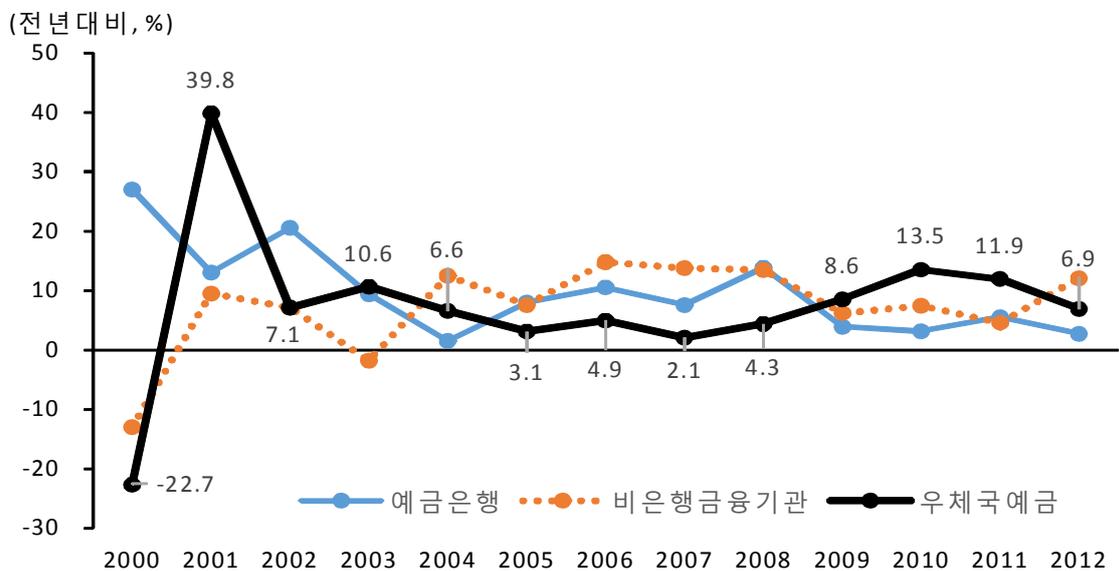
<표 4-6> 우체국예금의 종류별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환매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997	194	2.7	2,354	33.3	2,482	35.1	2,033	28.8
1998	438	3.7	2,042	17.1	7,353	61.7	2,083	17.5
1999	376	2.9	2,562	19.6	8,436	64.5	1,700	13.0
2007	1,277	3.5	5,119	14.1	28,751	78.9	1,270	3.5
2008	2,236	5.2	4,895	11.4	34,930	81.0	1,057	2.5
2009	1,663	4.2	5,499	14.0	30,777	78.2	1,409	3.6
2010	548	1.2	5,974	13.1	38,163	83.5	1,004	2.2
2011	535	0.9	6,382	11.0	50,339	86.7	835	1.4
2012	557	1.0	6,781	11.8	49,235	85.8	792	1.4

자료: 정보통신부 체신예금조사통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통계연보

[그림 4-1] 우체국예금 및 예금은행·비은행 수신 증가율 추이



나. 비용경쟁력 측면

- 우체국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세, 예금보장한도 및 건전성감독 면에서 유리 또한 민간금융기관과 달리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없음⁴⁰⁾

<표 4-7> 민간금융기관의 우체국예금간 비교

구 분	민간 금융기관	우체국 금융
법인세	22%	비과세
예금보험료	은행0.08%, 상호저축0.4%	없음
지급준비금	2.0%~7.0%(평균3%)	미적용
예금보장한도	5천만원	전액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원, BIS규제 (8% 이상) 적용	적용면제 (단, 고시로 8%이상 규제중)

<표 4-8> 우체국과 일반은행의 비용요인 비교

	우체국	일반은행
대손충당금	일정 부분 충당	예금액 대비 2~3%수준

- 2012년 기준 우체국예금의 국영금융기관으로써 혜택(묵시적 보조금)을 살펴보면, 예금전액보장으로 2,068억원, 법인세 등 세금 534억원, 예보료 471억원으로 약 3,073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4-9 참조)⁴¹⁾

40) 다만, 우체국예금은 법인세 및 예보료 이상의 일반회계전출, 공적자금 상환자금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에서 하지 않는 감사원법(금융감독원 검사역 동행)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수감하고 매년 1회 국회 국정감사 및 임시·정기국회 등을 수감하고 있음. 또한, 우체국예금은 대출, 신용카드, 신탁 등 여신기능이 없는 관계로 손실우려가 거의 없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완화 적용되는 등 비용측면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41) 반면, 우체국예금은 예금전액보장 혜택에 따라 대출·신용카드·신탁 등 업무취급 제한(금액환산 불가)을 받고 있고 일반회계전출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으로 2012년 기준 1,200억원을 납부하고 있음

□ 우체국예금이 국영금융기관으로서 혜택과 규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혜 택	규 제
예금액 전액보장	대출, 신용카드, 신탁, 펀드판매, 퇴직연금 등 업무 취급불가, 외화송금 제약
세금, 예보료 등 면제	일반회계전출, 우편사업보조, 공적자금상환금 납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제도 미적용	RP 및 콜시장 참여 불가
BIS 등 재무건전성 규제 미적용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 및 고시하되, BIS비율이 8%미만이 될 경우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미래부장관 보고
금감원에 의한 금융감독 면제	매년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등 수감

<표 4-9> 목시적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예금액	191,500,000	102,700,000	58,900,000
이자수익	12,478,432	6,936,135	3,226,119
예금전액보장	672,483	360,647	206,837
2. 법인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86,862	135,328	37,351
3. 교육세(비과세)	62,392	34,681	16,131
4. 추정 예금보험료(면제)	153,200	82,160	47,120
5. 추정 지준예치상당분 이자비용(면제)	143,625	77,025	41,068
A. 당기순이익 (보조금혜택 받을 시)	2,876,339	1,217,253	190,566
B. 당기순이익 (1~5 부담 시)	1,357,777	527,411	-157,940
C. 당기순이익 (2~5 부담 시)	2,030,260	888,058	48,896
총자산	257,748,697	155,312,739	66,397,740
ROA: A의 경우	1.12%	0.78%	0.29%
ROA: B의 경우	0.53%	0.34%	-0.24%
ROA: C의 경우	0.79%	0.57%	0.07%

주 : 1) 2012년 기준

- 2) 전액보장 혜택 = 5천만원 초과 수신고×기준금리(2.5%)
- 3) 전액보장 대상: 안정성이유 응답 23%
- 4) 은행의 전액보장 혜택 = 우체국의 예금액 대비 보장 비율과 동일하게 가정(0.35%)
- 5) 법인세 유효세율 = 17.5%
- 6) 지방세 = 법인세×10%
- 7) 농어촌특별세 = 법인세×2%
- 8) 교육세 = 이자수익×0.5%
- 9) 은행의 예금보험료 = 예금보험대상예금의 평잔×0.08%
- 10) 지급준비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0%+예금액(정기예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수신고)×2%+기타예금×7%, 이자비용(기준금리)2.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표 4-10> 국내외 주요은행 수익성(ROA) 비교

(단위: 백만원, 천유로, 백만달러, %)

구 분	우체국예금		
	한국우체국	라방크 포스탈	키위뱅크
이자수익	3,226,119	5,650,346	792
자산	66,397,740	185,711,926	15,345
세전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국외: income tax차감전)	190,566	544,714	112
법인세 (국외: income tax)		134,653	32
세후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전) [세전당기순이익-법인세]		410,061	80
ROA(세전이익)	0.29%		
ROA(세후이익)		0.22%	0.52%

주: 국내기관은 2012년말, 프랑스 라방크포스탈은 2011년말, 뉴질랜드 키위뱅크는 2012년 6월말(회계연도 2011년)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기관 연차보고서

2. 우체국예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가. 비효율 초래 가능성 여부

(재정자금 조달수단으로서의 한계)

□ 서민자금의 금융기관 유치와 정부의 자금조달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체국예금은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재정자금 조달수단으로서 필요성이 감소

- 우체국예금을 확대하여 재정적자 보전과 재정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서민자금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됨은 물론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므로 비효율적인 자금조달방법임
- 또한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의 1998~2012년까지 일반회계 전출금 누계액 1조 1,363억원이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상환금출연 누계액은 2004~2012년간 4,769억원이며, 향후 2027년까지 총 1조 1,747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국가예산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 우체국예금은 공공성 및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취급상품 및 영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 우체국예금은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수신고 증대 및 유동성 확보에 불리
- 또한 우체국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에서 자금운용범위에 대출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범위가 제한되어 운용수익률이 낮음.
 - * 우정사업본부에서 여신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금자금 39조원(2007년말) 중 약 32조원을 개인이나 기업 등에 직접 대출 가능(약 5천억원 추가 수익 가능)
 - * 우체국예금 운용수익률(2007년) : 5.00%, 은행 대출수익률(2006년) : 6.55%

- 우체국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공공정책상의 용도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성과 운용효율성이 낮음
 - 우체국예금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계산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공익성을 중시하는 자금운용도 결국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과 경쟁관계를 유발
 -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소기업 지원자금, 정보통신업체 지원자금,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지원자금 등의 공적 자금운용도 결국에는 여신시장에서 민간금융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음
 -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른 경쟁심화로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민간에 비해 더욱 낮아져 정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 한편 이러한 공익적 사업은 자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강제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서민금융기관 경쟁 심화

- 우체국예금은 외환위기 이후 경합관계에 있는 농수협·중소형 금융기관 등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과 비교할 때 우체국의 수신점유율은 1997년 2.9%에서 2012년 8.5%로 크게 성장
- 우체국예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소지
 -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및 금융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우체국이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어 이들의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

<표 4-15>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별 수신점유비중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1997	1998	199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우체국	5.0 (2.9)	10.0 (4.9)	26.0 (11.4)	39.2 (8.4)	40.9 (8.0)	44.4 (7.5)	50.4 (7.7)	56.4 (8.3)	60.3 (8.5)
상호금융	58.5 (34.0)	71.1 (34.6)	75.7 (33.2)	156.5 (33.6)	170.3 (33.2)	193.0 (32.6)	212.5 (32.3)	226.5 (33.4)	242.7 (34.2)
상호저축은행	27.2 (15.8)	25.6 (12.5)	22.6 (9.9)	50.4 (10.8)	60.9 (11.9)	73.3 (12.4)	76.8 (11.7)	63.0 (9.3)	42.8 (6.0)
신협	14.8 (8.6)	16.9 (8.2)	16.5 (7.3)	23.3 (5.0)	26.5 (5.2)	34.8 (5.9)	41.9 (6.4)	43.3 (6.4)	48.8 (6.9)
농협	44.5 (25.8)	55.0 (26.7)	58.0 (25.5)	145.5 (31.2)	158.0 (30.8)	178.1 (30.1)	195.7 (29.8)	208.8 (30.8)	223.2 (31.4)
새마을금고	22.2 (12.9)	27.0 (13.1)	28.9 (12.7)	50.8 (10.9)	56.2 (11.0)	68.2 (11.5)	79.9 (12.2)	79.1 (11.7)	92.1 (13.0)
합 계	172.3 (100)	205.6 (100)	227.8 (100)	465.7 (100)	512.8 (100)	591.7 (100)	657.1 (100)	677.2 (100)	710.0 (100)

주 : ()은 비중

자료: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우체국예금의 대출기능이 미약하고 자금을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면서 지방금융지원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초래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를 저해

○ 이는 지역민(주로 서민)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출수요는 은행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다.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 약화

□ IT기술발달로 인해 금융의 대중화에 이바지한다는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 등이 약화

○ 우체국예금은 저축기관이 크게 부족하던 시절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예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 현재 금융IT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

(도시지역 거래 비중)

□ 시도별 예금구성비를 비교하면, 우체국은 예금수취에 있어 점포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소재 점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우체국 창구망은 도시지역에 45.6%, 농촌지역에 54.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자금조달은 도시, 특히 대도시 주민의 예금이 큰 비중을 차지
- 2012년말 기준 7대 광역시 28.8조원(48%), 다른 도시지역 17.4조원(29%), 군·구 지역 14.1조원(23%)의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사례 (2012년 현재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말 현재 우체국예금 중 7대 광역시의 점포망 비중은 26%이지만, 동 지역에서의 예금수취 비중은 55.0%에 이룸. 즉, 도시지역예금비중은 76.4%, 읍면 지역 비중은 23.6%으로 점포 점유율에 비해 도시지역 의존도가 높음
- 예금은행의 7대 광역시 예금 비중은 우체국예금에 비해 높은 69.4%를 차지하였으나,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신협은 각각 25.3%, 41.2%로서 상호금융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

<표 4-16> 시도별 예금 구성비 현황

(단위 : %)

	우체국1) (2007.12)	예금은행 (2007.12)	상호금융(2006.12)	
			신 협	농·수협·산림조합
서울	31.9	50.4	12.3	8.1
부산	7.9	5.9	4.9	3.1
인천	2.2	3.7	5.1	4.1
대구	5.3	3.6	6.3	3.0
광주	3.0	1.8	5.4	2.2
대전	2.7	2.5	5.6	2.6
울산	1.9	1.4	1.6	2.3
7대광역시	55.0	69.4	41.2	25.3
경기	9.7	14.4	13.7	22.7
강원	3.3	1.5	4.3	4.5
충북	2.8	1.5	7.8	3.7
충남	4.4	2.0	7.4	8.0
전북	5.1	1.9	7.9	4.9
전남	5.3	1.8	4.4	7.7
경북	6.9	2.7	4.7	10.7
경남	6.8	4.0	5.8	10.4
제주	0.7	0.7	2.8	2.1
계	100.0 (34조원)	100 (593.2조원)	100 (22.6조원)	100 (154.1조원)

주 : 1) 우체국예금의 경우 예금유입액 기준

2)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자료 : 우정사업본부, 2007 우체국예금통계연보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자료 :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법인 및 기관 거래)

□ 거래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한편 예금전액보장 등에 따른 안전성 목적의 법인 및 금융기관 거래가 증가

○ 법인과 기관의 우체국예금액은 2012년 현재 10조원 정도로 16% 정도를 차지

○ 특히 금융기관의 계좌당 예금액은 20억원 정도이며 고객당 예금액은 36억원

으로 매우 커 예금전액보장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표 4-17> 예금주별 예금 비중 비교

(단위 : %)

	2007		2012	
	개인	법인 및 공공기관	개인	법인 및 공공기관
우체국예금	75.4	24.6	83.0	17.0
예금은행	49.8	50.2		

자료 :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라. 예금부분보장제도 취지에 불부합 여부

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취지에 불부합

- 우체국예금의 경우 법률에 의거 국가에 의해 원리금의 전액지급이 보장되므로 소수의 거액예금주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마. 건전성감독 미흡 여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자적인 운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국제기준 등에 의한 효과적인 감독 곤란⁴²⁾

우체국예금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의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⁴³⁾

-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된 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으나 우체국예금은 감독대상에서 제외

- 우체국예금에 대한 통제는 물론 정보수집도 용이하지 않아 금융감독 및 금융

42) 다만, 우체국예금은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 필요성이 적고,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이 불필요한 실정임. 또한, 매년 감사원(금감원 검사역 동행)으로부터 건전성,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수감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필요성은 극히 낮음

43) 다만, 우체국예금의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동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추가적으로 수감하고 있으며, BIS비율은 자체적으로 민영금융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고시하되 비율이 8%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자체 재무건전성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

□ 우체국예금은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저해할 우려 여부⁴⁴⁾

- 우체국예금은 은행예금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총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지준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우체국예금 규모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통화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

44) 다만, 예금시장에서 우체국예금의 MS가 3~4%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여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우체국예금의 MS가 10% 이상이 될 경우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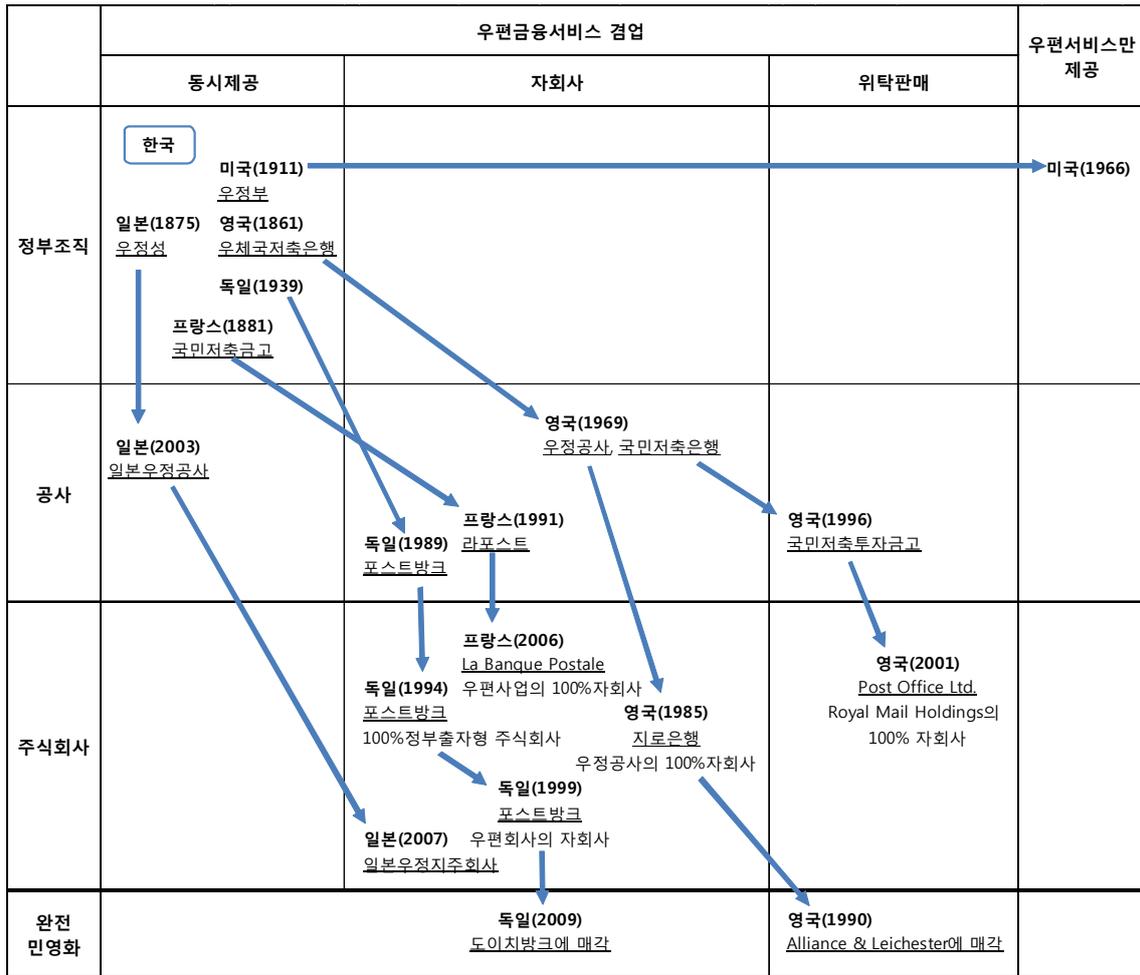
제5장 우체국예금 해외 사례

- 많은 국가에서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예금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금융업무 미취급, 영국의 경우 타 금융회사가 위탁한 금융업무 단 순 대행
 - * (미국) 1966년 USPS 금융서비스 제공 중단
 - * (영국) 1969년과 1985년에 각각 국민저축은행(금융업무)과 지로은행(우편대 체 업무)에 매각되었으며, 현재 두 기관에 매각한 금융업무를 위탁대행
 -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우정사업기관의 자회사로 설립된 별도의 전문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업무를 수행
 - * (프랑스) 우정사업기관(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의 자회사로 설립(2006)된 La Banque Postale이 모든 은행업무 수행
 - * (일본) 2007년 일본우정주식회사로 민영화되어 그 자회사인 유초은행 및 간포생명이 전문 금융회사로써 은행업무 및 보험업무 수행
 - * (독일) 2009년 금융사업 철수를 진행하며 우정사업기관은 민영화

<표 5-1> 국가별 우정사업 경영형태

국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미국	미국우편청(USPS)(국가기관)	없음	없음
영국	•우편회사(특수회사) * 공사에서 정부가 100% 주식을 보유하는 특수회사로 이행	•Post Office Ltd.(국영) * SBS에 운영업무 위탁 •지로뱅크(민간)	없음
독일	•Deutsche Post(특수회사) *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공개	•Deutsche Postbank * Deutsche Bank가 최대지분 보유	•PBV생명보험(주식회사) * Deutsche Postbank와 HDI(독일공업배상책임보험상호조합)가 합병하여 1999년에 설립
프랑스	•La Poste(공사) *직원신분은 공무원	•La Banque Postale * La Poste의 100% 자회사	•CNP보험 * 1959년 국영생명보험금고와 국영재해보험금고가 합병하여 설립하여 1992년 주식회사화, 현재 La Poste가 주식의 73.5%를 소유
일본	•우정공사	•우정공사	•우정공사

[그림 5-1] 국가별 우편금융 서비스 민영화 과정



자료: 각국의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함

1. 영국

- 영국의 우체국금융은 정부 소유의 공사 형태를 유지하며 민간기업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 관민결합의 민영화 방식으로 운영

가. 변화 과정

- 1861년 우체국저축은행(Post Office Savings Bank)의 설립으로 세계 최초로 우체국 금융을 도입
 -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체국 금융을 도입하였으며,

설립초기에는 정부부서인 영국 우정성이 통신, 우편, 금융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 이후 100여년간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

□ **1969년 우정공사법(The Post Office Act)에 따라 우정공사를 설립하며 통신 및 우편과 금융사업을 분리**

- 통신 및 우편사업은 영국우정공사가 계속 담당
- 우체국저축은행은 국민저축은행(National Savings Bank)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재무부의 내부부서인 국민저축청이 담당

□ **영국우정공사는 1978년 국민지로은행로 출범 후, 민영화 논의가 지속되며 1985년 지로은행으로 주식회사화(우정공사의 100% 자회사)를 거쳐 1990년 민영화됨**

- 우체국 금융서비스 법(The Post office Banking Services Act)에 따라 1978년 우정공사 산하의 국민지로은행(National Giro Bank)로 명칭을 바꾸며, 당초의 송금, 결제 업무 외에 저축, 대출 등의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1985년 국민지로은행은 지로은행(Giro Bank)로 주식회사화(우정공사의 100% 자회사)되며 영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상업은행으로 변경
- 1990년 영국의 주택금융조합회사인 Alliance & Leicester에 매각되며 민영화

□ **국민저축은행은 1996년 국민저축투자금고(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로 명칭이 바뀌며 외청에서 담당**

- 1996년 재무부가 경비 삭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인사·사무 운영 재량권을 집행대리인(Executive Agency)에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저축은행은 국민저축투자금고(National Savings & Investment)로 변경, 집행대리인으로 임명
- 1999년 서비스사업의 기술적 분야를 Siemens Business Service(SBS)에 위탁하

여 SBS가 국민저축투자금고의 전 상품에 대한 운영을 책임

- 하지만 영국 우정의 금융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공기업 조직문화가 지속되면서 경영진 및 직원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이어져 연중 절반 이상의 기간동안 파업이 진행

□ **현재 정부 소유의 우정지주회사로 전환된 가운데 창구회사에 금융상품을 위탁하는 형태**

- 실제 판매는 우정공사가 100% 출자해서 창구 업무를 전담하는창구회사(Post Office Ltd.)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저축투자금고는 독자적인 점포망을 갖지 않고 창구회사에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탁
- 2013년 현재, 우정지주회사(Royal Mail Holdings)는 창구회사(Post Office Ltd.), 우편사업부(Royal Mail Group Ltd.)를 자회사로 운영중인 가운데, 창구회사에서 우편서비스와 우체국금융(Agency) 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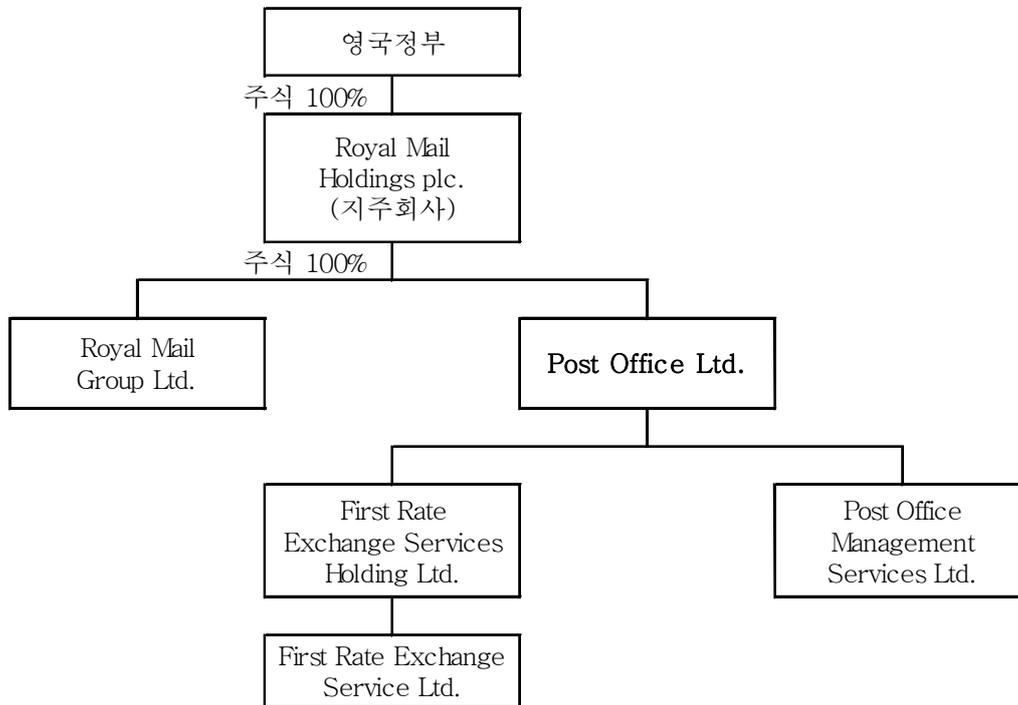
나. 최근 현황

□ **영국의 우체국 금융의 사업 주체는 바뀌었지만 독자적인 판매창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창구업무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형태**

- 영국정부와 우정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에 서명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저밀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2년 현재 창구회사는 11,78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소매업과 금융업의 연결하는 체인으로써 금융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꼽힘
- 창구회사는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tandard Life사의 위탁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연금상품 판매를 대행
- 아울러 아일랜드 은행의 방계회사인 First Rate Enterprise와의 합작으로 'First Rate Travel Service'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에 진출하며 전국 우체국에서 렌터카, 여행자보험, 외화환전, 택배, 호텔예약 등 서비스도 수행

- 한편, 최근 금융사업부문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저축 등의 위탁업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및 주택보험의 가입, 신용카드의 발행 등 다양한 금융수입원 창출 방안 모색

[그림 5-2] 영국 창구회사(Post Office Ltd.)의 지배구조



자료: Post Office Ltd.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2013)

<표 5-2> 영국 창구회사(Post Office Ltd.)의 수익구조 및 영업이익

(단위: £mil.)

	2011-2012	2012-2013
순이익 (Revenue)	1,160	1,234
우편사업부(Mails & Retail)	392	409
우체국금융(Financial Service)	264	281
(Government Service)	164	164
통신서비스(Telecom)	120	129
기타(Others)	40	41
매출(Turnover)	980	1,024
보조금(Network Subsidy Payment)	180	210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23	47

자료: Post Office Ltd.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2013)

2. 독일

- 독일의 우체국금융은 1980년대 후반 공사화를 거쳐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5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이후 정부지분의 매각을 통해 완전민영화를 달성
 - 우체국금융은 정부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제1차 우편개혁으로 국영형태인 공사로 별도 분리되었으며, 제2차 우편개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서 그 법적 지위가 변경
 - 이 과정에서 우편은행은 우체국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어 영업력이 취약해졌으며, 독일우정도 제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우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우정과 우편은행은 우편창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계약을 체결
 - 독일우정과 파트너십 체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우편은행 지분을 독일우정(Deutsch Post AG)에게 넘김으로써 우편은행은 독일우정의 자회사가 됨
 - 이에 따라 우편은행은 독일우정 창구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반 예금업무, 대출, 국제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

가. 변화 과정

- 독일의 우체국금융은 1939년 시작되었으며, 제1차 및 제2차 우정개혁을 거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
 - 독일의 우체국 금융은 1938년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으로 오스트리아 금융제도가 도입되고 이듬해 우체국예금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
 - 독일연방우정국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위되어 오던 금융, 우편, 통신업무는 1989년 제1차 우편개혁을 통해 우편은행(Postbank), 독일우정(Deutsche Post), 통신(Deutsche Telecom)의 3개 공사로 분리
 - 1994년 3개의 공사는 상법의 영향을 받는 100% 정부출자형 주식회사로 전환
 - 이에 금융업은 우편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독일우정은 우체국 창구망을 통해

위탁업무로서만 금융 업무를 수행토록 제한

□ **1995년 우편은행이 주식회사화된 이후에는 정식으로 은행법상의 은행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공사에 제한되었던 업무 및 자산운용 등에 부문이 해제됨**

- 업무에 대한 감독 또한 신용조직법상 은행으로서 신용은행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감독이 의무화
- 민간은행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능

□ **100% 정부소유의 주식회사였던 독일우정은 1999년 우편은행의 주주로서 상장된 이후, 주식이 꾸준히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점진적인 민영화 과정을 진행**

- 독일우정은 1999년 DPWN(Deutsche Post World Net: 독일우정주식회사)로 상장된 이후 정부는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며 민영화를 추진
- 1999년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우편은행은 독일우정의 100% 자회사로 흡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편은행은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1999년 DSL(Deutsche Siedlungs- und Landesrentenbank:주택금융융자지원)을 인수함으로써, 우편은행은 개인 소매금융업, DSL은행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의 노하우를 살려 주택금융, 기업간의 융자 및 유가증권 발행의 업무를 수행
- Easytrade라는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 전화, 우체국 지점을 통한 주식 및 투자펀드 관련 중개업무를 수행
- 2005년에는 개인연금전문기관인 Beamten Heimstätten Werk (BHW)를 인수하여 2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Ergo insurance Group와 보험상품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KV(Deutsche Krankenversicherung AG)의 보험상품을 판매
- 이러한 수익확대 노력에 따라 2004년 전자거래시장인 XETRA에 우편은행을 신규 상장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30대 주요기업의 주식거래시장인 DAX30에 상장됨

□ 한편, 2009년부터 도이치방크는 우편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며 그 비율을 점차 확대

○ 2010년 도이치방크(Deutsche Bank)는 우편은행(Postbank)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2년 말 현재 지분을 더욱 확대하여 총 94.1%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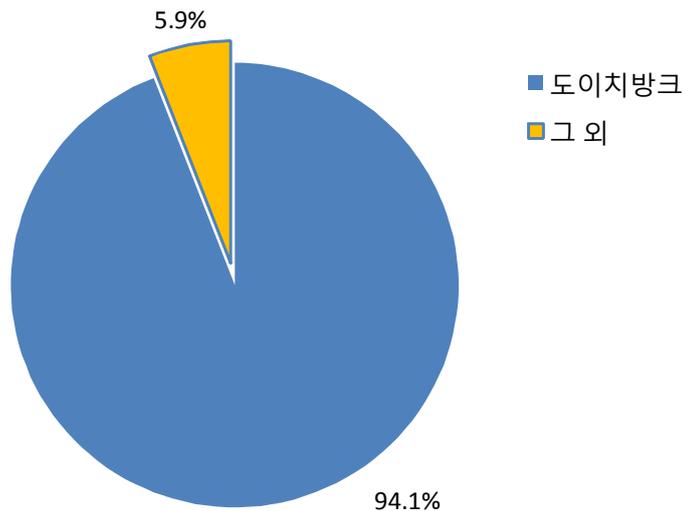
나. 최근 현황

□ 2012년 현재 약 1,4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총 자산 약 2천억 유로의 독일 주요 금융 기관 중 하나로 개인 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

○ 지점 및 ATM이 각 1,092, 3,530곳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담당자가 3,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판매채널 강화를 위해 투자

○ 우편은행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는데, 이는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의 양호한 실적 등에 기인

[그림 5-3] 독일 우편은행(Postbank)의 지분 구조



자료 : Postbank annual report(2012)

<표 5-3> 독일 우편은행(Postbank)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mil.)

	2011	2012
지점수(branches, 점)	-	1,092
직원수(employees, 천명)	18.94	18.60
고객수(customers)	14	14
계좌수: 개인(private checking account)	5.01	5.13
계좌수: 법인(corporate checking account)	0.32	0.32
저축규모(savings accounts)	13.57	13.57
중개계좌규모(brokerage accounts)	0.76	0.71
총수신(customer deposits)	112,961	111,508
총여신(customer loans)	108,896	106,495
개인대출(private loans, €bn)	4.16	4.42
모기지대출(mortgage lending, €bn)	70.20	70.40
상업대출(commercial finance, €bn)	12.65	11.32

자료 : Postbank annual report(2012)

<표 5-4> 독일 우편은행(Postbank)의 수익구조 및 영업이익

(단위: €mil., %)

	2011	2012
자산(total assets)	191,935	193,822
자본(equity)	5,657	6,309
세전 이익(profit before tax)	78	386
당기순이익(net profit)	111	279
ROA (세전기준)	0.0	0.2
ROA (세후기준)	0.1	0.1
ROE (세전기준)	1.4	6.1
ROE (세후기준)	2.0	4.4

자료: Postbank Annual Report(2012)

3. 프랑스

- 프랑스의 우체국금융은 1991년 공사화된 이래 우편과 금융이 결합된 국영공사의 형태가 유지된 이후 2010년 자회사로 전환

가. 변화 과정

- 1881년 국민저축금고가 설립되면서 우체국금융은 국영으로 운영
 - 국민저축금고는 우편전기통신부의 관할 하에 개인저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금한도액이 정해진 통장 한 종류로 상품을 제한
 - 1966년 예금한도액이 없는 통장이 추가 개설되었으며, 1967년에는 투자신탁이 도입
 - 하지만 업무 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과의 과열 경쟁 등으로 국민저축금고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저하
- 1991년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자 우편·저축, 전기통신 부문을 분리함과 동시에 공사화(EPIC)를 추진
 - 우편·저축부문은 라포스트(La Poste), 전기통신부문은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으로 전환되며 우체국금융은 우편전기통신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직체로 성장
- 라포스트는 2006년 유한책임회사로 발전하며 100% 자회사인 우편은행(La Banque Postale)을 설립하는 등 공사로부터 분리
 - 라포스트는 우체국(The Retail Brand), 우편배달(Mail), 택배(ColiPoste), 우편은행(La Banque Postale) 등의 자회사를 형성
 - 유럽 의회는 우편은행의 설립이 경쟁 관계인 은행업에 손실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11년 우편은행은 기업 금융상품으로 영업을 확대한 가운데 2012년에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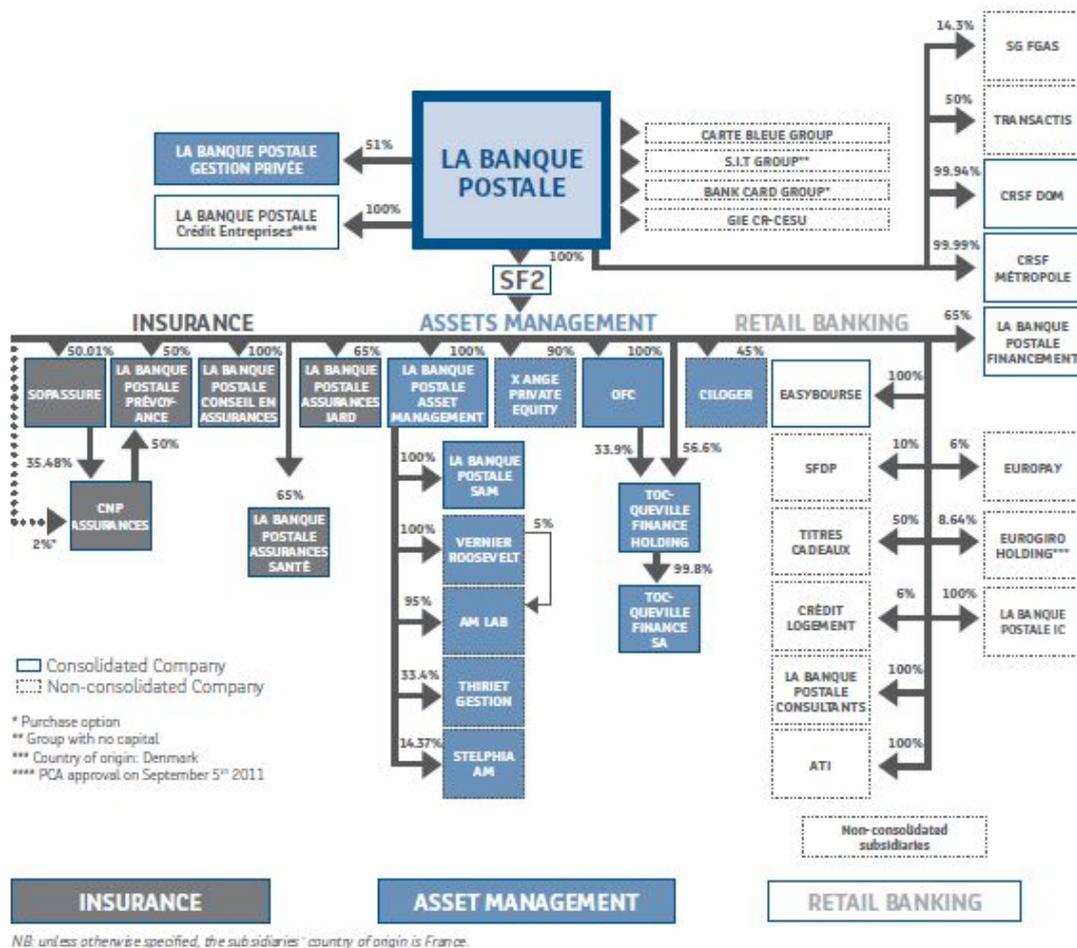
방 공공기관 금융서비스를 시작

나. 최근 현황

- 우편은행은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소매금융(retail banking), 보험(insurance) 등을 담당
 - 우편은행은 프랑스의 기업 금융보다는 소매금융서비스에 특화된 모습
 - 우편은행은 19개의 대도시, 4개의 해외 지부, 6개의 지역으로 총 29개의 금융 센터를 운영
 - 2011년말 현재 우편은행은 약 1천만명의 고객, 1,150만 개의 계좌를 보유

- 최근 2011-2015년에 걸쳐 "Putting the customer's interests first"라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strategic plan)을 추진
 - 2015년까지 영업이익을 160억 유로 달성, 1,100만 고객 확보 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그림 5-4] 프랑스 우편은행(La Banque Postale)의 경영구조



자료: La Banque Postale Annual Report(2011)

<표 5-5> 프랑스 우편은행(La Banque Postale)의 수익구조 및 영업이익

(단위: €mil.)

	소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순저축수익(Net banking income)	5,020,970	89,499	120,223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306,370	31,031	52,476
세전 영업이익(Pre-tax profit)	300,873	191,393	52,448
법인세(Income tax)	(95,981)	(21,453)	(17,219)
순이익(Group net profit)	204,892	169,940	35,229

주: 1) 2011년말 기준

2) 각 부문의 자기자본 보수 비용은 제외

자료: La Banque Postale Annual Report(2011)

4. 일본

-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공적금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늦은 2003년에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를 시작
 - 2017년 우체국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부작용 및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활성화 원칙, 정합성 원칙, 편리성 원칙, 자원활용 원칙, 배려 원칙 측면에서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
 - 정부는 우정지주회사 지분의 1/3을 소유하고 우정지주회사는 우편회사와 창구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며, 우정지주회사 자회사인 예금회사(유초은행)와 보험회사(간포생명보험)는 2017년까지 지분을 완전 매각하여 민영화할 계획

가. 변화 과정

- 일본의 우체국금융은 1875년에 시작되었으며, 특별한 조직 개편없이 우전성의 내부조직 형태로 운영
 - 별도로 운영되던 우편환(1875년) 및 우편대체(1906년), 생명보험(1915년), 우편연금(1925년) 등의 업무가 1991년에 통합됨
 - 1990년대 이후 재정조치 실패로 일본의 재정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안전하다는 이유로 가계 금융자산의 60%가 우체국 예금 및 보험상품에 집중됨에 따라 우정공사가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이 되는 기형적 구조 형성
 - 그러나 조달된 자금이 정부 예산의 일부처럼 사용된 반면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조장하고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정부는 우편사업, 우편저금, 간이보험서비스 등 우정사업 개혁을 통해 우편사업은 민간과의 경쟁 활성화를, 금융사업은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 2001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총무성, 자치성, 우정성이 총무성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편 및 우체국금융 부문은 총무성의 외청인 우정사업청으로 개편

○ 우정사업의 경영형태는 기획입안 및 관리는 총무성의 우정기획관리국(총무성 내부부국)이, 우정사업의 시행은 총무성 외청의 우정사업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우정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분리

○ 자금운용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화되어 있던 재무성 자산운용부에 대한 예탁을 폐지하고 전액 자주운용을 실시

□ **2003년 정부는 총무성 산하의 우정사업청을 국영기관인 우정공사로 전환하고 향후 민영화 방안을 발표**

○ 기존 우정사업을 4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을 승계하는 회사는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하여 기존의 특권을 폐지하고 민간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토록 함

□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2005년 우정사업 민영화를 위한 6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

○ 6개의 법안으로는 일본우정공사민영화법, 일본우정주식회사법, 우편사업주식회사법, 우편국주식회사법,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법, 우정민영화법 등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가 있음

○ 동 법에는 지주회사형태인 일본우정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우정공사를 해산하고 지주회사 산하에 그 기능을 승계할 수 있는 4개의 독립된 자회사를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우편저금은 은행업법상의 면허를 가지게 되고, 우편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의 면허를 가지게 되어 타 금융기관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업무를 실행

□ **민영화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9), 이행단계(2007.10~ 2017.9), 완료단계(2017.10 이후)로 단계적으로 진행**

○ 준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정공사의 업무를 승계하고,

2007년 10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 이행단계에서 금융자회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민영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정공사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 한편, 정부는 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을 실행하되 발생한 총지분의 1/3이 넘는 주식은 보유하도록 하고, 우편회사와 창구네트워크회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한 형태로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
 - 아울러 완료시점에서는 4개의 운영회사간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우편저금과 보험사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음
- **2007년 10월 민영화 이행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본우정공사는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을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를 통해 담당하도록 함**
- 우편국회사는 우편창구를 이용한 우편·우편저금·간이보험의 서비스 제공창구로서 위 3개 기업의 위탁업무를 수행
 - 우편사업분야는 우편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에도 진출하는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물류시장에도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
 - 각각 회사명을 유초은행과 간포생명보험으로 한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는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취급
 - 유초은행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대출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2008년 독자적인 신용카드 업무도 시작
- **일본 우정의 민영화는 치밀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반대파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과 전략적인 계획의 실행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달성했다는 평가**

나.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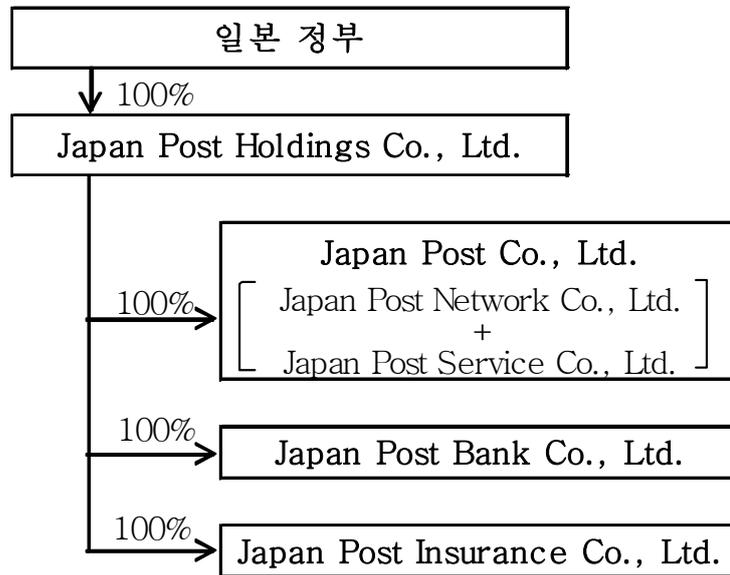
- **2007년에 조직 개편한 우편, 창구네트워크, 우편저금, 간이보험회사 중 우편서비스와 창구네트워크 부문을 2012년에 일본우정회사로 통합**

- 2012년에 우편서비스와 창구네트워크 부분을 통합한 일본우정회사(Japan Post Co., Ltd.)는 향후 우편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

□ 2012년 우정의 민영화 법안을 일부 개정하며 2021년까지의 목표를 설정

- 총수신 176조엔, 보험 총자산 94조엔, 점포수 24,514개, 직원 44만명 등을 목표로 잠재 성장력 증진
- 지속되는 저금리에 기인하여 2003년 대비 2012년 현재 우편 배달 23.2%, 수신고 23.9%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경영 환경 도전이 시급
- 기업 통합, 통합 형태의 우편 및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개선책을 통해 서비스 향상, 경영환경 개선, 기업문화 창조를 기대

[그림 5-5] 일본 우정공사의 지배구조



자료: Japan Post bank Annual Report(2013)

<표 5-6> 일본 우정공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mil.)

	2011	2012
영업점수(outlets, 점)	24,249	24,215 (지점: 234, 우체국: 23,981)
직원수(employees, 명)	12,796	12,922
ATM 수(개)	26,557	26,669
총수신(deposits)	175,953,292	176,096,136
총여신(loans)	4,134,547	3,967,999

주: 회계연도 2012년말 기준

자료: Japan Post bank Annual Report(2013)

<표 5-7> 일본 우정공사의 수익구조 및 영업이익

(단위: ¥mil., %)

	2011	2012
총자산(Total assets)	195,819,898	199,840,681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 before provision for general reserve for possible losses	495,470	512,808
순이익(Net income)	334,850	373,948
ROA	0.17	0.18
ROE	3.54	3.59

주: 회계연도 2012년말 기준

자료: Japan Post bank Annual Report(2013)

5. 미국

- 미국의 우편사업은 USPS(미국우편청)가 담당하고 있으며 1911년 발족한 우체국 금융은 1966년에 폐지됨

가. 변화 과정

- 1947년부터 미국의 우편서비스를 담당했던 미국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는 1971년 정부의 외청인 우정청(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으로 개편
 - 1960년대 우편사업의 경영 악화와 높은 정부보조금 의존도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1967년 카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1970년 우편법(Postal Reorganization Act)을 제정
 - 한편 우체국 예금(Postal Savings System)은 1911년에 시작되었으나 1966년 폐지되고, 미국우정은 우편서비스에만 집중
- 2000년 들어 USPS가 다시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우편사업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USPS의 탄생 이후 30년간 순탄했던 우편사업은 1998~2000년중 20억불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악화를 경험
 - 이는 e-mail 등 우편 대체수단의 발달로 우편물량은 감소하고 민간관의 경쟁은 심화된 반면, 확장되는 우편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우편처리비용 상승, 인건비 등에 따른 경직적 비용구조 및 퇴직연금 부담증가 등에 주로 기인
 - USPS는 2002년 체제전환계획서(Transformation Plan)에서 미국우정의 경영형태로는 정부소유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되 시장에서 보다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업적 정부기업(Commercial Government Enterprise)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시
 - 2003년 USPS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민영화보다는 기존과 같이 공적기관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나. 최근 현황

- 2002년 이후에도 USPS의 사업수지 악화부담이 해소되지 않자, 미 정부는 2006년 우편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였으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전자우편 등으로 지속적인 우편물량 감소가 발생하고, FedEx가 Kinko's를 인

수하는 등 제1종 우편서비스 외의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이나 특급우편(express mail)의 경쟁은 더욱 심화

- 이에 USPS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가 위협 받고, 우편요금의 급격한 인상 위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우편법이 제정
- 2006년 우편법은 USPS의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여 우편과 관련 없는 서비스의 제공·개발 권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지양하되 일부 우편업무에서는 민간과의 경쟁을 허용
- 우편서비스라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이에 벗어나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를 지양함으로써 민간 경쟁회사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우체국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우편사업의 독점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지배적 상품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허용

제6장 결론: 우리나라 우체국 예금 제도 개선 방안

1. 공정경쟁 여부

- 우체국예금은 국영금융기관으로써 시중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예금보호한도액 (5,000만원)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예금액 전액을 보장받고 있으며, 법인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예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면제를 받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고 BIS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부분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우체국예금은 국영금융기관으로써 혜택을 받는 반면, 금융의 핵심기능인 대출, 신용카드, 신탁 등 여신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면제된 각종 세금과 예금보험료 수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일반회계전출금을 납부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 등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의 업무제한, 비용납부 등 제약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또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검사(감독)는 받지 않으나, 대출 등 여신기능이 없어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사를 받고 국회로부터 정기, 임시국회, 국정감사 수감 등 민영금융기관이 감독받는 수준이상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영금융기관으로써 혜택과 규제(업무제한 등)를 산출하였으나, 산출방식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명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었지만 우체국예금이 일방적으로 혜택이 많다거나 또는 규제가 더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금융기관과 우체국예금이 불공정한 수준에서 사업운영을 영위한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유보함
- 다만, 우체국예금이 예금시장에서 MS를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등 통화정책 당국의 통화량 관리 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체국예금 측면에서 볼 때,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금융시장이 저금리 장기화 또는 고착화될 경우 대출 등 여신기능이 없어 낮은 NIM이 지속되어 사업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체국예금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개선보다는 현재와 같이 우체국예금이 금융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서민금융의 확대 등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이 바람직

2. 우체국예금의 제도개선 방향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이용 확산, ATM/CD기 보급 등으로 과거 금융소외지역 조차도 금융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우체국예금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간 업무제휴, 서민금융의 확대 등을 통한 공공의 정부기관으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화당국의 효율적인 통화량 관리 차원에서 우체국예금의 MS를 일정수준으로 제약하면서 우체국예금의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통화량의 효율적 운영과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 기반마련 필요
 - 예시) 우체국예금의 MS를 10% 이내 관리토록 하되, 신용카드 업무 진출 등 업무제한 범위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등
-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체국예금이 불공정 경쟁이라는 요소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은 미약하나, 금융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간 양해각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부록1>

일본의 우체국예금 운영 현황

- 일본은 1875년 우편저금제도 실시이후 생명보험, 연금 및 예금자 대출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우편저금의 비대화, 적자시현 등의 문제가 대두
 - 개인금융자산 잔액 중 우편저금의 비중은 2001년 9월말 현재 17.2%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우편저금의 비대화는 제공되는 저축상품의 상품성이 높고 시장상황을 무시할 정도의 고금리 설정이 계속된 데 기인하며, 국가의 원리금 전액 지급보장 및 우체국이 각종 세금, 지준 및 예금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우편저금은 리스크관리, 원가개념의 부족으로 시중금리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98년 이후부터 대규모 적자를 시현

<표 6-11> 우편저금특별회계의 손익

(단위 : 억엔)

구 분		1998	1999	2000
당기손익		△5,987	△18,472	△12,909
수입	사업 수입	91,207	78,970	69,065
	운용 수입	20,755	21,003	19,840
지출	우편저금 지급이자	86,717	86,920	71,167
	차입금 지급이자	20,021	20,378	19,131
	경비지출 등	11,211	11,147	11,516

참고 문헌

[국내·외 문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박재석·문성철·남현주·이홍재·최창호 (2007), 『우체국예금사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연구』, KISDI.

정진하·박재석·안명옥·이석현 (2012),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우체국금융서비스 강화 방안』, KISDI

박재석·이용수·김효정·남현주 (2006), 『우체국금융의 공정경쟁 추진방안 연구』, KISDI.

박재석·윤석환·이석범·김효정·안명옥·홍효진·이수연·김명균·김창수·조임곤 『우체국금융의 체제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KISDI.

박재석 외(2007), 『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 KISDI

박재석 외(200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발전방안 연구용역』, KISDI

우정사업본부(2013), 『주요12개국가 우정사업 현황』

이민환(2003),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박재석, 이용수(2007), 『우편·금융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금운용 방안』, KISDI

박재석 외(2010), 『2010년도 국내·외 우정동향 및 주요 경영정보 조사 분석』, KISDI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호주 우정 2013 Annual Report

선진우정포럼(2013), 『2013년 선진우정포럼 이슈토론회』

우정사업본부(2012), "2012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우정사업본부(2001), 『해외우정동향』

안명옥(2013), 『일본 우정 비전 2021』, KISDI

John Anderson(2013), 『Why Canada Needs Postal Banking』,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MICHAEL LIND(2008), 『Mailing Our Way to Solvency』

The Economist(2012), 『Argentina's state-owned firms So far, not so good』

박재석 외(2011), 『영국의 우편 서비스 법률(2011) 제정과 우편사업 개혁 방향』,

KISDI

박재석, 문성철, 유승훈(2011),『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KISDI

박중권/박재석/이석범/김효정/박경원(2001),『사회간접자본으로서 우체국 창구망의 공동이용 전략』,KISDI

국회예산처(2013), “2013년 중기 경제 전망”

Mark J.Scher, Naoyuki Yoshino(2004), 『Small Savings Mobilization and Asian Economic Development – the Role of Postal Financial Services-』, Keio University and United Nations

박재석, 이용수(2007)『우정사업 시너지 효과 추정 및 시사점』

박재석(2013) 『우체국금융의 역사』, KISDI

[참고 웹사이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U.S. Postal Servic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Website
(<http://www.uspsoig.gov/blog/banking-postal-service>)

Post&Pace website I(<http://postandparcel.info/>)

US POSTAL SERVICE(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9.07)